

발 간 등 록 번 호

53-6270000-000345-10

희망의 도시 일류대구

2013년도 계약심사 사례집



대구광역시
DAEGU METROPOLITAN CITY

목 차

I. 계약심사 운영개요 및 실적	1
○ 운영개요	3
○ 심사실적	5
II. 분야별 계약심사 사례	7
○ 공사분야	9
▪ 토목부문	14
▪ 건축부문	70
▪ 기계설비부문	79
▪ 전기부문	89
▪ 정보통신부문	99
○ 용역분야	103
▪ 기술용역	113
▪ 일반용역	126
○ 물품·제조 분야	131
○ 구·군 우수사례	146
III. 부 록	163
○ 대구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165
○ 예정가격 작성요령	177
○ 계약심사 운영요령	221

I

Chapter

계약심사 운영개요 및 실적

1. 운영개요

가. 계약심사제 개념

발주부서에서 산출한 각종 공사·용역·물품 내역에 대해 원가심사 부서에서 거래 실태가격조사, 현지 확인, 창의적 공법 도입 등을 통해 적정 원가를 산출하여 불필요한 예산의 절감과 발주부서의 설계능력 및 공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 특히, 계약심사 결과는 회계부서의 예정가격 작성을 지원하고 있음

나. 계약심사제 운영 근거

- 1) 지방재정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144조
-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3)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업무 처리지침』
- 4) 대구광역시 『계약심사업무처리규칙』

다. 계약심사 대상기관 및 대상사업

대 상 기 관	심사내용	대 상 사 업
《시·사업소 등》 •시 본청, 사업소 •시 의회 사무처 •지방공기업 •출연·출자기관(50%이상)	• 원가심사	•공사 : 추정금액 5억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2억원) 이상 •용역 : 추정금액 1억원 이상 •물품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구·군》 •국·시비 보조사업 •국·시비 재배정 사업 •자체예산중 요청사업	• 설계변경심사	•계약금액 20억원 이상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라. 계약심사 제외 대상 사업

-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조달발주사업
-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제 75조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이하생략)

☞ 설계변경중 심사대상인 경우: { 계약금액(20억원이상)×10% } ≤ { 설계변경후 증가액-계약금액조정액(물가변동, 공사기간, 운반거리 등 변경)-설계변경액(기본계획, 공법변경) }

3)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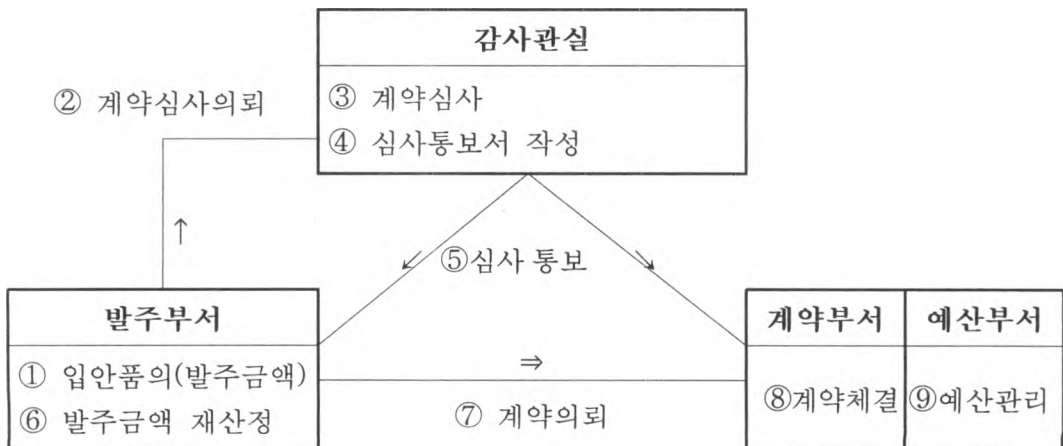
- 지방계약법시행령제25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 의한 수의계약
- 시행령제43조의 협상계약
- 시행령제81조의 개산계약
- 시행령제95조의 일괄입찰
- 기타 예정가격 작성 곤란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중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안전행정부예규 제34호 2013.11.20)

4) 재해 및 재난복구사업으로서 긴급을 요하는 사업

- 시행령 제82조의 재해복구 공사의 개산계약

마. 업무흐름도



2. 심사실적

□ 분야별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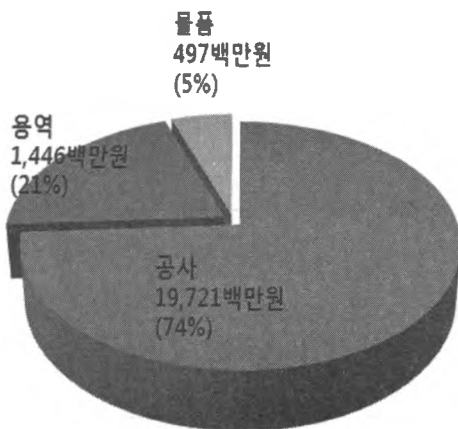
구 분	심사건수	심사 요청액	심사 조정액	절 감 액	절 감 률	비고
계	635	444,762	423,098	21,664	4.90%	
공 사	238	329,406	309,685	19,721	6.00%	
용 역	144	91,551	90,105	1,446	1.60%	
물 품	253	23,805	23,308	497	2.10%	

□ 기관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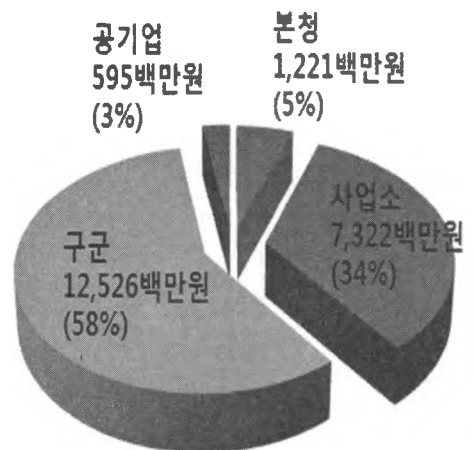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구 분		심사건수	심사 요청액	심사 조정액	절 감 액	절 감 률	비고
계		635	444,762	423,098	21,664	4.90%	
시	소계	278	199,756	191,213	8,543	4.28%	
	본청	97	47,680	46,459	1,221	2.56%	
	사업소	181	152,076	144,754	7,322	4.81%	
구·군		235	196,464	183,938	12,526	6.38%	
공기업등		122	48,542	47,947	595	1.23%	

[분야별 절감]



[기관별 절감]



□ 연도별

○ 2010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심사건수	심사 요청액	심사 조정액	절 감 액	절 감 률	비고
계	556건	462,685	431,448	31,237	6.75%	
공 사	219건	312,614	288,396	24,218	7.75%	
용 역	163건	136,831	130,280	6,551	4.79%	
물 품	174건	13,240	12,772	468	3.53%	

○ 2011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심사건수	심사 요청액	심사 조정액	절 감 액	절 감 률	비고
계	598건	419,374	385,873	33,501	7.99%	
공 사	267건	318,555	289,723	28,832	9.05%	
용 역	153건	88,907	84,750	4,157	4.68%	
물 품	178건	11,912	11,400	512	4.30%	

○ 2012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심사건수	심사 요청액	심사 조정액	절 감 액	절 감 률	비고
계	508건	283,768	266,280	17,488	6.16%	
공 사	190건	183,848	167,975	15,873	8.63%	
용 역	123건	73,041	72,076	965	1.32%	
물 품	195건	26,879	26,229	650	2.42%	

○ 201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심사건수	심사 요청액	심사 조정액	절 감 액	절 감 률	비고
계	635건	444,762	423,098	21,664	4.90%	
공 사	238건	329,406	309,685	19,721	6.00%	
용 역	144건	91,551	90,105	1,446	1.60%	
물 품	253건	23,805	23,308	497	2.10%	

Ⅱ

Chapter

분야별 계약심사 사례

1. 공사
2. 용역
3. 물품·제조
4. 구·군 우수사례

공사분야

1. 토목부문
2. 건축부문
3. 기계설비부문
4. 전기부문
5. 정보통신부문

공사분야 계약심사

가. 공사의 분류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4호에 따라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공사 등으로 분류

나. 공사의 개념

1) 건설공사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2) 전기공사

전기공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 전력사용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의 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

3) 정보통신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 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말하고, 정보통신설비는 유선, 무선, 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자·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제어·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器具)·선로(線路)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4) 소방시설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증설·개설·이전 및 정비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

5) 기타공사

문화재 수리공사,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종합건설공사,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전문건설공사 등

다. 관련법령

- 1)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 2)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 3)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 4)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
- 5) 전기공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 6)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 7)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 8)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 9)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0)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등
- 1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 1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 소음·진동 규제법
- 14) 지하수법
- 15) 하수도법, 시행령, 시행규칙
- 16)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1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1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19) 각종 예규, 고시, 지침 등
 -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국토교통부)
 -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국토교통부)
 - 설계감리 대가기준(국토교통부)
 - 측량대가의 기준(국토지리정보원)
 - 건축기계설비 설계기준(국토교통부)
 - 건축기계설비 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 화재안전기준(소방방재청)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및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대가기준(국토교통부)
 - 지방자치단체의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안전행정부)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
- 20) 실거래가격적용 관련자료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공표한 실적공사비
 - 조달청장이 공표한 가격정보

21) 설계관련 공통대가

- 자체 토목공사 원가계산 작성요령이 있는 경우 관련자료
- 도로 및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설계지침 (건설행정부서)
- 상수도공사 일위대가(상수도관련 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공사발간 설계지침
- 시·군 건설공사 설계기준
- 견적에 의한 실거래가격
- 전문기관에서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 물가정보, 물가자료, 유통물가, 거래가격 등

22) 노임단가적용 기준

- 건설업 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 측량 노임단가(대한측량협회)
- 엔지니어링노임단가(한국엔지니어링협회)
- 감리노임단가(한국건설감리협회)

23) 제경비율 산출근거

- 조달청장이 공표한 제비율

24) 관련 법령에 의한 제비율

- 산재보험료를 등 고시
- 4대보험료를 적용기준 등

25) 품셈 등 적산 기준

- 표준품셈(토목, 건축, 기계, 전기, 정보통신 등)
- 건설신기술품셈(한국건설신기술협회)
- 조경공사 적산기준(조경사회, 대한건설협회 등), 공공기관 적산, 견적기준

라. 계약심사 의뢰시 구비서류

1) 전기공사(예시)

- 계약심사 요청서, 원가계산서
- 설계 설명서, 시방서
- 설계내역서(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노무비산출근거 포함)
- 비목별 기초계산서, 기계경비 산출서
- 기타 참고자료(방침서 또는 계획서, 견적서, 기술심사 등 보조자료)
- 설계프로그램에 의한 설계도서(엑셀 내역파일, Auto Cad 도면)

마. 주요 검토사항

- 1) 실적공사비에 의한 원가계산의 경우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분 산출 여부

- 2) 4대 보험료 및 각종 경비 요율이 당해 고시요율로 적용되었는 지 여부
- 3) 중복공종 포함 및 부가세 중복 산정 여부
- 4) 내역서 수량 일치 여부, 노임할증 과다 여부, 단가적용 오류
- 5) 공사 진행상 불필요한 공종 포함 여부
- 4) 실제 작업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품셈 적용으로 과다계상 여부
- 5) 설계도서(시방서, 도면, 내역서, 일위대가, 단가조사서)간 일치 여부
- 6) 노임단가, 기계경비, 조달청 가격정보, 고재처리 등에 대한 적정단가 적용 여부
- 7) 제조노임, 수입자재 수입물품원가계산 적용여부

1. 토목부문

○○ 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2차)

☐ 사업개요

- 위 치 : ○구 ○○동 산○○번지 일원
- 개 요 : 재해위험지구 정비 1식

☐ 심사결과

(단위: 천원)

구 분	요청금액	심사금액	증 감 액	증감률
토목부문	1,694,841	1,103,695	△591,146	△34.88%

☐ 심사내용

[중기기초단가적용]

- 환 율 : 1,102.2원/ \$
- 휘발유 : 1,759원/ ℓ ⇒ 1,712원/ ℓ
- 경 유 : 1,574원/ ℓ ⇒ 1,532원/ ℓ
- 중 유 : 1,250원/ ℓ ⇒ 906원/ ℓ

<○○사 구간 및 2구간>

- ① 상단부 수로, 낙석방지책 및 중간부분의 산마루측구, 메쉬웬스의 필요성, 구조적 안정성, 시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치 구간 조정
 - ○○사 구간
 - 벤치플롭관(300×200mm) 79m ⇒ 27m
 - 도수로(500×450mm) 37m ⇒ 20m
 - 낙석방지책(특수구간) 설치 52m 제외

- 2구간

- 낙석방지책(특수구간) 개체 210m 제외
- 낙석방지책(일반구간) 설치 구간 조정 110m $\Rightarrow$ 204m

② ○○사 뒤편 계단식옹벽은 시공성 및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
지용 철근만 설치(철근가공조립 2.219톤 제외)

<가옥철거 구간>

③ 가옥 철거 후 부지의 활용도 및 보행동선 등을 고려하여 바닥재 재질 조정

- 생태형 잔디블럭 포장 1,531m²
 $\Rightarrow$ 생태형 잔디블럭 포장 654m² + 소형 고압블럭 포장 877m²

④ 폐기물 운반 및 처리는 관련법령에 따라 분리발주대상이므로 별도 산정함

※ ①, ②, ③, ④ 조정에 따른 토공, 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부대공 및
사급자재대 항목 조정

○ 토공 조정

- 철근콘크리트(수량 34m³)깨기 공정에 철근고재 계상 : 1.7톤
산출 예) $1\text{m}^3 \times 0.008 \times 7,850\text{kg/m}^3 \times 80\% = 50.24\text{kg/m}^3 \approx 50\text{kg/m}^3$
☞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 P73』 철근고재 발생품은 부피기준 0.8%로
계산한다(80% 고재처리)
- 낙석방지책 철거 210m 제외
- 아스팔트포장 깨기 작업량(Q값) 조정 : 4.6m³/hr $\Rightarrow$ 5.43m³/hr
- 무근콘크리트, 콘크리트포장 및 아스팔트포장 깨기 시 체적환산계수(f값)조정
- $f = 1/1.5 = 0.66 \Rightarrow 1/1.4 = 0.71$
- 흙깎기 1,713m³ $\Rightarrow$ 1,472m³, 사토운반(발파암) 2,817m³ $\Rightarrow$ 2,486m³

○ 배수공 조정

- 도수로(500×450mm) 37m $\Rightarrow$ 20m
- 벤치플륨관(300×200mm) 79m $\Rightarrow$ 27m
- 이중벽PE관부설 m당 작업인원 조정
 - 이중벽PE관부설(D300mm)
배관공 0.03인 $\Rightarrow$ 0.0243인, 보통인부 0.027인 $\Rightarrow$ 0.0243인
 - 이중벽PE관부설(D400mm)
배관공 0.042인 $\Rightarrow$ 0.0342인, 보통인부 0.03인 $\Rightarrow$ 0.0342인

- 이중벽PE관부설(D500mm)

배관공 0.045인 ⇒ 0.0342인

보통인부 0.035인 ⇒ 0.0167인 + 트럭크레인5톤 0.05hr

- 이중벽PE관부설(D600mm)

배관공 0.063인 ⇒ 0.041인, 보통인부 0.046인 ⇒ 0.0225인

트럭크레인10톤 0.055hr ⇒ 트럭크레인5톤 0.06hr

☞ 『2011년 원가분석 자문회의』 결과 참조

○ 구조물공 조정

- 계단식 옹벽 설치방법 조정

- 기초고정핀 설치

구멍뚫기 착암공0.693인(φ 50mm적용) ⇒ 착암공 0.6485인(φ 32mm적용)

- 벽체고정핀 설치

구멍뚫기 착암공0.693인(φ 50mm적용) ⇒ 착암공 0.6485인(φ 32mm적용)

- 지지용 철근만 설치 : 철근가공조립 2.219톤 제외

○ 포장공 조정

- 콘크리트포장 시 양생 품 제외 : 양생에 필요한 재료비만 별도 계상

☞ 건설공사 표준품셈 토목부문 12-3-2 1. 콘크리트 표층 인력시공 참조

- 생태형 잔디블럭 포장 1,531m²

⇒ 생태형 잔디블럭 포장 654m² + 소형 고압블럭 포장 877m²

- 석공 0.1인 + 보통인부 0.2인 ⇒ 석공 0.08인 + 보통인부 0.12인

- 도로경계석 기초깊이(10cm ⇒ 5cm) 재 산정으로 인한 레미콘 및 합판거푸집 수량 조정

☞ 『2013년 상반기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 도면 참조

○ 부대공 조정

- 낙석방지시설 수량 조정

- ○○사 구간 낙석방지책(특수구간) 설치 52m 제외

- 2구간 낙석방지책(특수구간) 개체 210m + 낙석방지책(일반구간) 설치 110m

⇒ 낙석방지책(일반구간) 설치 204m

- 중기운반 조정

- 자주식 운반가능 장비는 운반비 제외

- 운반거리 조정 : 시청 ⇒ 건설공사장에서 가장 가까운 시. 도. 구. 군청

☞ 건설공사 표준품셈 토목부문 10-1 3. 운반 및 수송 참조

• PE관 운반 제외 : 현장하차도 기준임

• 잔디블럭 운반비 ⇒ 잔디블럭 하차비(납품장소 차상도 기준임)

○ 사급자재대 조정

• 혼합골재(D40mm) : 492m³ ⇒ 323m³

• 소형 고압블럭(U형8T,회색) 737m² 추가반영

• 소형 고압블럭(U형8T,적색) 184m² 추가반영

[관급자재대 수량 및 단가 조정]

○ 생태녹화 잔디블럭(1,000*1,000*150mm) 1,608m² ⇒ 687m²

○ 도로경계석(150*150*1,000mm) : 11,990원/개 ⇒ 9,500원/개

○ 보·차도 경계석(200*250*1,000mm) : 23,800원/개 ⇒ 20,200원/개

○ 아스콘(#78) : 76,260원/개(공장 상차도) ⇒ 79,340원/개(납품장소 하차도)

[원가계산서 재작성 등]

○ 직접공사비 조정에 따른 제경비 재산출 등

○ 산출대가에 따른 손해배상공제보험, 부가가치세 등 조정

□ 적용기준

○ 작성기준 : 작성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안전행정부예규 제2호 2013. 3. 26.)

○ 재료비, 노무비 및 산출경비 산정기준

• 노 무 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시중노임단가 2013년 상반기 단가 적용

• 재 료 비 : 조달청 가격정보 및 시중거래조사가격

• 중기경비 : 2013년도 건설공사 표준품셈

○○ 공원 야외무대 조성공사

☐ 사업개요

- 위 치 : ○구 ○○동 ○○번지 일원
- 개 요 : 야외무대(막구조), 바닥정비 및 편의시설 1식

☐ 심사결과

(단위: 천원)

구 분	요청금액	심사금액	증 감 액	증감률
토목부문	583,000	463,695	△119,305	△20.46%

☐ 심사내용

[중기기초단가적용]

- 환 율 : 1,112.5원/\$ ⇒ 1,109.4원/\$
- 휘발유 : 1,773원/ℓ ⇒ 1,772원/ℓ
- 경 유 : 1,586원/ℓ ⇒ 1,585원/ℓ, · 중 유 : 1,250원/ℓ ⇒ 877원/ℓ

[현장여건에 맞는 수량 및 단가산출]

※ 노무비 추가반영 : 2013년 상반기 노임단가로 적용된 노무비를 2013년 하반기 노임단가 적용

○ 야외무대 조정

- 무대구조용 각관 및 기초, 장식벽 등을 구조검토 후 각관 간격 및 기초 수량 조정
- 녹막이페인트(2회) 419㎡ ⇒ 362㎡, 구조용 각관(100*100mm) 560m ⇒ 423m, 구조용 각관(50*50mm) 1,041m ⇒ 1,026m

- 데크(포장) 하부(야외무대) 구조용 각관 설치 단가 조정
 - 잡철물 제작 및 설치 ⇒ 부대철골 가공설치
 - ☞ 건설공사 표준품셈 건축부문 7-4 부대철골 가공설치 참조
- 스탠드 조정
 - 공연계획(관람인원) 재조사후 관람규모 조정(년5회 800명 ⇒ 년3회 500명)
 - 잔디스탠드 수량 조정 : 8단 617m ⇒ 5단 351m
 - 현장여건에 맞게 잔디식재 방법 및 규모조정
 - 평떼 232m² ⇒ 줄떼 256m²
 - 데크(포장) 하부(잔디스탠드, 무대스탠드) 구조용 각관 설치 단가 조정
 - 잡철물 제작 및 설치 ⇒ 부대철골 가공설치
 - ☞ 건설공사 표준품셈 건축부문 7-4 부대철골 가공설치 참조
- 포장공 조정
 - 경사로 및 계단부 하부구조 철근콘크리트(15cm)를 와이어메쉬 콘크리트(10cm)로 변경 조정
 - 경계석 기초 깊이(10cm⇒5cm) 재 산정으로 인한 레미콘 및 합판거푸집 수량 조정
 - ☞ 『2013년 하반기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 도면 참조
- 시설물공 조정
 - 현장여건상 불필요한 무대스탠드 트렌치 구간 조정
 - 107m ⇒ 77m
 - 데크(포장)하부(얹음벽) 구조용 각관 설치 단가 조정
 - 잡철물 제작 및 설치 ⇒ 부대철골 가공설치
 - ☞ 건설공사 표준품셈 건축부문 7-4 부대철골 가공설치 참조
- 식재공 조정
 - 현장여건에 맞게 잔디식재 방법 조정
 - 평떼 1,495m² ⇒ 평떼 1,204m² + 줄떼 291m²
- 철거공 조정
 - 보도블럭 철거 수량 조정 705m² ⇒ 660m²

○ 부대공 조정

- 중기운반 거리 조정 : 시청 ⇒ 북구청(가장 가까운 시, 군, 구청 기준)
- ☞ 건설공사 표준품셈 토목부문 10-1 3. 운반 및 수송 참조

[관급자재대 수량 및 단가 조정]

○ 레미콘 수량 조정

- 레미콘(25-21-120mm) $232\text{m}^3 \Rightarrow 134\text{m}^3$
- 레미콘(25-18-80mm) $30\text{m}^3 \Rightarrow 17\text{m}^3$

○ 철근 수량 조정

- 이형철근(SD300, D13mm) 9.598톤 $\Rightarrow$ 5.503톤

○ 데크재(90x21t) $649\text{m}^2 \Rightarrow 537\text{m}^2$

○ 측구뚜껑(300×1,000×44mm) 107m $\Rightarrow$ 77m

[원가계산서 재작성 등]

- 직접공사비 조정에 따른 제경비 재산출 등
- 당초 폐기물처리비가 별도 발주 대상(102톤)이었으나, 수량 조정(95톤)되어 내역서상 경비로 조정함

□ 적용기준

- 작성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안전행정부예규 제21호 2013. 6. 19.)
- 재료비, 노무비 및 산출경비 산정기준
 - 노 무 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시중노임단가 2013년 하반기 단가 적용
 - 재 료 비 : 조달청 가격정보 및 시중거래조사가격
 - 중기경비 : 2013년도 건설공사 표준품셈

2013년 ○○산 숲길 정비공사

☐ 사업개요

- 위 치 : ○○군 ○○면 ○○산 일원
- 개 요 : 목재데크계단 설치 등 숲길 정비 1식

☐ 심사결과

(단위: 천원)

구 분	요청금액	심사금액	증 감 액	증감률
토목부문	360,000	301,404	△58,596	△16.28%

☐ 심사내용

[중기기초단가적용]

- 환 율 : 1,112.4원/\$ ⇒ 1,144.6원/\$
- 휘발유 : 1,699원/ℓ ⇒ 1,712원/ℓ

[현장여건에 맞는 수량 및 단가산출]

- 구조물공 및 시설물공 조정
 - 목재계단(1),(2),(3) 및 전망데크 하부 아연도 각판 설치 단가 조정
 - 잡철물 제작 및 설치 ⇒ 부대철골 가공설치
 - ☞ 건설공사 표준품셈 건축부문 7-4 부대철골 가공설치 참조
 - 목재계단에 사용하는 자재 단가 및 품명 조정
 - 이페(14,000천원/m², 물가정보지) ⇒ 꾸메아(8,000천원/m², 조달청제품)
- ※ 발주부서 수정사항 반영

- 전망데크 난간설치 시 작업인원 조정(m^2 당 설치 $\Rightarrow m^2$ 당 설치)
 m^2 당 작업인원(건축목공 6.31인 + 보통인부 1.31인)
 $\Rightarrow m^2$ 당 작업인원(건축목공0.075인 + 보통인부0.007인)
 ☞ 건설공사 표준품셈 건축부문 11-3 1. 마루틀 설치 참조
- 등산로 구간별로 산재된 평의자를 등산객들이 군집(단체)하여 쉴 수 있도록
 설치위치 및 수량 조정 : 44조 $\Rightarrow$ 29조

○ 운반공 조정

- 목재계단 및 전망데크 자재 변경으로 인한 운반무게 조정
 - 이페($1.667\text{톤}/m^3$) $\Rightarrow$ 꾸메아($1.090\text{톤}/m^3$)
- 평의자 운반 수량 조정 : 44조 $\Rightarrow$ 29조

[관급자재대 수량 조정]

○ 전망대($6,500 \times 6,500 \times 6,300\text{mm}$) 1개소 제외

- ☞ 전망대를 설치할 경우 최정산 정상부 헬기장의 헬기 이착륙 시 제한사항
 발생으로 불가하다는 「국군 제6755부대」의 공문 참조 적용

※ 국군 제6755부대 공문에 의거 남아 있을지 모를 불발탄이나 지뢰에 대하여
 「2013년 최정산 숲길정비공사」 시행 전에 제거요청을 2작전사 예하 공병부에
 요청을 하기 바랍니다.

□ 적용기준

- 작성기준 : 작성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안전행정부예규 제2호 2013. 3. 26.)
- 재료비, 노무비 및 산출경비 산정기준
 - 노 무 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시중노임단가 2013년 상반기 단가 적용
 - 재 료 비 : 조달청 가격정보 및 시중거래조사가격
 - 중기경비 : 2013년도 건설공사 표준품셈

○○○성 상징거리 조성(○·○○로,○○동) 공사

☐ 사업개요

- 위 치 : ○구 ○○로, ○○로, ○○동 일원
- 개 요 : ○○○성 상징거리 조성사업 1식

☐ 심사결과

(단위: 천원)

구 분	요청금액	심사금액	증 감 액	증감률
토목부문	2,876,011	2,417,881	△458,130	△ 15.93%

☐ 심사내용

[중기기초단가적용]

- 환 율 : 1,102.2원/ \$
- 휘발유 : 1,712원/ ℓ
- 경 유 : 1,532원/ ℓ

[현장여건에 맞는 수량 및 단가산출]

- ① 교통통제가 필요한 포장 절삭 및 덧씌우기, 소운반 공정에 한하여 지세별 할증율(주택가) 15% 적용
- ② 서성로 중앙조형물 하부 채움콘크리트 강도 조정 : 21N/mm² ⇒ 18N/mm²
- ③ 현장여건상 본 공사는 도로포장 등 공정이 단순하여 내역서에 포함된 시공상 세도 작성비 제외
- ④ 화강판석 포장시 화강석 블록을 모래포설 위에 설치하는 것으로 표준품셈 및 계약심사 원가분석 자문회의 결과를 참조하여 적정 대가 산출

- ⑤ 서성로 중앙차선에 양방향 도로표지병 설치는 중앙 조형물 설치로 인해 설치 효과가 없어 한방향 도로표지병으로 조정
- ⑥ 교통소통 대책수립은 분리발주대상이므로 별도 산정함
- ⑦ 폐기물처리비, 하수관CCTV조사 및 전기분야인 LED조명등 구입은 관련법령에 따라 분리발주대상이므로 별도 산정함
-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조정에 따른 토공, 배수공, 포장공, 부대공 및 조정 공 항목 조정

<○○로구간>

○ 토공 조정

- 아스팔트포장 깨기 작업량(Q값) 조정 : $3.3\text{m}^3/\text{hr} \Rightarrow 3.89\text{m}^3/\text{hr}$
- 아스팔트포장 및 콘크리트포장 깨기 토량환산율(f값) 조정
- $f = 1/1.5=0.66 \Rightarrow 1/1.4=0.71$

○ 배수공 조정

- 맨홀뚜껑틀 설치품 무게비로 재 산정
- 맨홀뚜껑설치($500 \times 640 \times 70\text{mm}$) : 자재비의 5% $\Rightarrow 0.051\text{인}(0.69\text{인}/\text{톤} \times 0.075\text{kg})$
- 맨홀뚜껑설치($\phi 648\text{mm}$) : 자재비의 5% $\Rightarrow 0.089\text{인}(0.69\text{인}/\text{톤} \times 0.130\text{kg})$
☞ 건설공사 표준품셈 토목부문 6-2-1 철근 현장가공 및 조립 준용

○ 포장공 조정

- 화강석포장(t10cm(고홍석), 건식) m^2 당 작업인원 조정
- 석공 0.1인 + 보통인부 0.2인 $\Rightarrow$ 석공 0.08인 + 보통인부 0.12인
- 장대석포장(t10cm(화북석), 건식) m^2 당 작업인원 조정
- 석공 0.4인 + 보통인부 0.2인
 $\Rightarrow$ 석공 0.064인 + 보통인부 0.096인 + 트럭탑재형크레인(5톤) 0.32hr
- 노면요철포장(t10cm(사고석), 건식) m^2 당 작업인원 조정
- 석공 0.1인 + 보통인부 0.2인 $\Rightarrow$ 석공 0.08인 + 보통인부 0.12인

○ 부대공 조정

- 가설물 및 임대료 조정
- 부지임대료 효율조정 : $10/100 \Rightarrow 50/1000$

※ 대구광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8조 1항 참조

<○○로구간>

○ 토공 조정

- 아스팔트포장 깨기 작업량(Q값) 조정 : $3.3\text{m}^3/\text{hr} \Rightarrow 3.89\text{m}^3/\text{hr}$
- 아스팔트포장 깨기 토량환산율(f값) 조정
- $f = 1/1.5=0.66 \Rightarrow 1/1.4=0.71$

○ 배수공 조정

- 흙관부설 및 접합방식 조정 : 몰탈 접합 $\Rightarrow$ 고무링접합
☞ 건설공사 표준품셈 토목부문 19-1 배수(우수)관 참조

○ 포장공 조정

- 화강판석 불임(t5cm(보도), 습식) m^2 당 작업인원 조정
- 석공 0.4인 + 보통인부 0.2인 $\Rightarrow$ 석공 0.1인 + 보통인부 0.2인
☞ 「2010년도 원가분석 자문회의」 결과 적용

○ 부대공 조정

- 중앙조형물설치로 인하여 현장여건에 맞게 도로표지병 규격 조정
- 도로표지병(양면) $\Rightarrow$ 도로표지병(단면)

○ 조경공 조정

- LED등기구 설치(다운라이트) 552등 제외(전기공사 별도발주 대상임)

<○○동 트레일구간>

○ 토공 조정

- 아스팔트포장 깨기 작업량(Q값) 조정 : $3.3\text{m}^3/\text{hr} \Rightarrow 3.89\text{m}^3/\text{hr}$
- 아스팔트포장 및 콘크리트포장 깨기 토량환산율(f값) 조정
- $f = 1/1.5=0.66 \Rightarrow 1/1.4=0.71$

○ 배수공 조정

- 이중벽PE관부설 및 접합 본당 작업인원 조정
- 배관공 0.22인 + 보통인부 0.32인 $\Rightarrow$ 배관공 0.205인 + 보통인부 0.205인
☞ 「2011년도 원가분석 자문회의」 결과 적용

[관급자재대 수량 조정]

- 레미콘(25-21-80mm) 1,647m³
⇒ 레미콘(25-21-80mm) 1,606m³ + 레미콘(25-18-80mm) 41m³
- 점토블럭(t6cm) : 303,010매 ⇒ 301,910매
☞ 건설공사 표준품셈 토목부문 1-9 재료의 할증률 참조
- LED조명(L300,5W) : 552개 제외(전기공사 별도발주 대상임)

[원가계산서 재작성 등]

- 직접공사비 조정에 따른 제경비 재산출 등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조정(〈재료비(관급포함)+직접노무비〉의 합계액기준)
 - (재료비+직접노무비+관급자재/1.1)*1.81%+3,294,000원
 - ⇒ {(재료비+직접노무비)*1.81%+3,294,000원}*1.2

□ 적용기준

- 작성기준 : 작성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안전행정부예규 제2호 2013. 3. 26.)
- 재료비, 노무비 및 산출경비 산정기준
 - 노 무 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시중노임단가 2013년 상반기 단가 적용
 - 재 료 비 : 조달청 가격정보 및 시중거래조사가격
 - 중기경비 : 2013년도 건설공사 표준품셈

○○로·○○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구 ○○로○가 ○○번지 일원

○ 개 요 : 에스컬레이터 2개소 설치, 지하상가 남·여 화장실 설치

☐ 심사결과

(단위: 천원)

구 분	요청금액	심사금액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2,876,011	2,417,881	△458,130	△ 15.93%
토목부문	1,688,703	1,439,930	△268,773	△ 14.73%
건축부문	794,964	695,705	△99,259	△ 12.49%
기계부문	496,333	383,565	△112,768	△22.72%

☐ 심사내용

[중기기초단가적용]

- 환 율 : 1,071.1원/ \$
- 휘발유 : 1,729원/ ℓ
- 경 유 : 1,580원/ ℓ

《토목부문》

[현장여건에 맞는 수량 및 단가산출]

○ 토공 조정

- 발주부서 및 뮤지컬광장설치부서와 협의결과 신설 남·여 화장실 피트에서 기존 정화조로 연결하도록 하여 기존정화조를 재활용하는 것으로 조정

- 터파기(5m이상) 369m³ ⇒ 107m³, 잔토처리(암) 173m³ ⇒ 81m³,
 암천공(φ 8 " 1,140m + φ 4 " 1,138m) + 암파쇄(브레이크) 173m³
 ⇒ 암파쇄(무진동 유압 암반절개) 81m³ + 파쇄암 인양 81m³
- 토공작업 터파기(5m미만)시 현장여건에 맞게 백호규격조정 : 0.4m³ ⇒ 0.7m³
- 철근콘크리트(수량 131m³)깨기 공정에 철근고재 계상 : 6.55톤
 - 산출 예) 1m³ × 0.008 × 7,850kg/m³ × 80% = 50.24kg/m³ ≒ 50kg/m³
 ☞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 P73』 철근고재 발생품은 부피기준 0.8%로
 계산한다(80% 고재처리)

○ 가시설공 조정

- 현장여건에 맞게 말뚝박기 천공 시 작업량(Q값) 및 수량 조정
 - 자갈, 전석 1,065m(3m/hr) ⇒ 1,096m(4m/hr)
 - 풍화암 3m/hr ⇒ 4m/hr
 - 연암 511m(2m/hr) ⇒ 290m(3m/hr)
 - 케이싱설치. 철거 1,065m ⇒ 1,096m
- LW그라우팅 수량 조정
 - 토사층 천공(φ 100mm) 1,073m ⇒ 1,398m
- 폐쇄예정인 9번 출구는 마감벽 설치 후 되메움하여 천공장비가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순서를 변경하여 H빔 보강계획 삭제
 - 동바리제작 및 연결 45본 ⇒ 30본, PLATE설치 및 철거 45개소 ⇒ 8개소
 콘크리트천공(φ 22mm,150mm) 196개소 ⇒ 136개소
 콘크리트천공(φ 22mm,200mm) 180개소 ⇒ 120개소
 앵커볼트설치 및 해체(φ 20mm,150mm) 196개 ⇒ 136개
 앵커볼트설치 및 해체(φ 20mm,200mm) 180개 ⇒ 120개

○ 구조물공 조정

- 기존 정화조 재활용으로 인한 구조물 수량 조정
 - 레미콘타설(철근) 564m³ ⇒ 483m³, 유로폼 1,885m² ⇒ 892m²,
 강관동바리 691m³ ⇒ 497m³, 철근가공조립 74.069톤 ⇒ 60.805톤
 - 시트방수 단가 및 수량 조정 : 1,256m²(6천원/m²) ⇒ 1,210m²(9천원/m²)
 ☞ 시트지 단가가 97년도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어 2013년 단가로 조정

○ 배수공 조정

- 흡관접합 및 부설 단가 조정 : 배관공(수도) ⇒ 배관공

○ 포장공 조정

- 화강판석 포장 m²당 작업인원 조정
 - 석공 0.4인 + 보통인부 0.2인 ⇒ 석공 0.1인 + 보통인부 0.2인
- ☞ 2010년도 원가분석 자문회의 결과 적용

○ 사급자재대 조정

- 관급자재에 적용된 시멘트, 철근, 아스콘, 흡관, 점토블럭, 화강석경계석을 업무효율을 위하여 사급자재대로 전환

《건축부문》

[현장여건에 맞는 수량 및 단가산출]

- 석공사 금액조정
 - 화강석 돌붙임(바닥, 벽) 물량증가
- 타일공사 금액조정
 - 타일 폴리싱 붙임공법 변경(몰탈 ⇒ 본드접착)
- 방수공사 금액조정
 - 시멘트액체방수 물량감소
- 미장공사 금액조정
 - 몰탈바르기 내벽(16mm) 물량감소
- 도장공사 금액조정
 - 비닐페인트칠(천정) 물량감소
- 기타공사 금액조정
 - 에스컬레이터 (2대) 기계설비부문으로 변경
 - 기존 정화조 재활용으로 인한 단독정화조 설치(남, 여) 삭제
- 철거공사 금액조정
 - 구조물 철거 기계경비 조정으로 감액

《기계설비부문》

[현장여건에 맞는 수량 및 단가산출]

- 품셈기준 및 현장 여건을 고려한 내역반영
 - 화장실 환기 DUCT 및 환기구는 마찰손실을 줄여 효과적인 환기가 되도록 DUCT를 최단거리로 재배치 수정
 - 잡 재료비 및 공구손료는 내역에서 제외하고 해당항목만 일위대가에 반영
- 수량 및 공량산출 등 오류 수정
 - 전기히트펌프(E.H.P)이설에 대한 고재 누락분 보완 및 배관 일위대가 기준 수정 : 개소 당 → m당
 - 철거공사 고재 누락분 보완 등
- 자재단가 조정 등
 - 소변기 외 12종 자재단가 조정 등

[관급자재대 수량 및 단가조정]

- 관급자재에 적용된 시멘트, 철근, 아스콘, 흙관, 점토블럭, 화강석경계석을 업무효율을 위하여 사급자재대로 전환

[원가계산서 재작성 등]

- 직접공사비 조정에 따른 제경비 재산출 등
- 예산사정으로 하향 적용된 이윤 적정 반영 : 10.6% ⇒ 15%
 - ☞ 건설본부 건축과-544(2013.02.20.)호 추가사항 반영 요청 공문 참조
- 당초 건축부문에 반영된 에스컬레이터 설치 2개소를 건축부문에서 기계부문으로 내역조정 및 완성품 납품조건이므로 원가계산 제경비 계산에서 제외

□ 적용기준

- 작성기준 : 작성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안전행정부예규 제437호 2012. 12. 24.)
- 재료비, 노무비 및 산출경비 산정기준
 - 노 무 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시중노임단가 2013년 상반기 단가 적용
 - 재 료 비 : 조달청 가격정보 및 시중거래조사가격
 - 중기경비 : 2013년도 건설공사 표준품셈

2013년도 ○○공원 숲길정비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구 ○○동 산○○번지 일원
- 개 요 : 숲길정비 1식

□ 심사결과

(단위: 천원)

구 분	요청금액	심사금액	증 감 액	증감률
토목부문	793,820	543,827	△249,993	△31.49%

□ 심사내용

[중기기초단가적용]

- 환 율 : 1,102.2원/\$, · 경 율 : 1,574원/ℓ ⇒ 1,532원/ℓ
- 중 율 : 1,250원/ℓ ⇒ 906원/ℓ

[현장여건에 맞는 수량 및 단가산출]

① 현장 여건을 감안한 구조물 설치계획 조정

- 데크계단(B=1.2m) : L=110m(7개소) ⇒ L=105m(7개소) - 감 5m
- 데크로드(B=1.2m) : L=52m(4개소) ⇒ L=31m(3개소) - 감 21m
- 축대설치(H 1000~2000) L=15m(2개소) ⇒ L=27m(3개소) - 증 12m

② 노면 정비구간중 절,성토 높이가 낮은 구간 목책 삭제

- 목책 설치(원형목 - 미송 Ø150*1000) L = 100m ⇒ L = 0 - 감 100m

③ 경제성등을 감안하여 사각목재 계단 사용 목재 종류 변경

- 사각목재 계단(240*100*2000) 103단
- 멀바우(250,000원/개) ⇒ 미송방부목(42,500원/개) : 감 207,500원/개

- 사각목재 계단 난간 기둥재(100*100*1370) 103개
 - 멀바우(73,000원/개) ⇒ 미송방부목(14,000원/개) : 감 59,000원/개
 - 사각목재 계단 난간 기둥재(90*450*1620) 103개
 - 멀바우(38,000원/개) ⇒ 미송방부목(6,400원/개) : 감 31,600원/개
 - ④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등산로 폐쇄용 로프웬스 연장 조정
 - 로프웬스(W2000, 13개소) L=260m ⇒ 로프웬스(W1500) L=145.5m(시종점 포함)
 - ⑤ 시설물에 사용되는 목재 “멀바우”에 대하여 경제성을 감안하여 “미송방부목”으로 변경 ⇒ 데크계단 및 데크로드는 제외
 - ⑥ 가격정보 및 실례가격 재 조사를 통한 자재가격 재 조정
 - 방향표지판(1130*1800) N=10개소 : 970,604원/개 ⇒ 870,604원/개
 - 석정안내표지판(450*70*1500) N=2개소 : 1,232,493원/개 ⇒ 882,493원/개
 - 안내표지판(1200*610*1200) N=3개소 : 2,182,882원/개 ⇒ 1,732,882원/개
 - 응급구조안내판(150*50*800) N=59개소 : 720,604원/개 ⇒ 570,604원/개
 - 종합안내판(3000*1840*3000) N=1개소 : 9,940,635원/개 ⇒ 8,217,128원/개
 - 종합안내판(3000*1840*3000,독립기초) N=2개소 : 10,208,352원/개 ⇒ 8,484,845원/개
 - 종합안내표지(2000*1225*2000) N=9개소 : 4,582,882원/개 ⇒ 4,082,882원/개
 - 파고라(4500*2500) N=1개소 : 12,675,517원/개 ⇒ 7,972,517원/개
 - 파고라(4500*4500) N=1개소 : 14,050,517원/개 ⇒ 8,675,517원/개
 - ⑦ 데크 포장 및 계단 주자재(각판, 강판등)에 대한 적용 품 조정
 - 잡철물 제작 및 설치(4,030,885원/ton) ⇒ 부대철골 가공설치(557,505원/ton)
 - ⑧ 데크제품 오일스테인 칠 횟수 조정
 - 오일스테인 칠(크랙셀 3회) ⇒ 오일스테인 칠(크랙셀 2회)
 - ⑨ 노면정비 시 반영되어 있는 인력 터파기를 인력 절취로 변경
 - 인력터파기(보통인부 : 0.2인/㎡) ⇒ 토사절취(보통인부 : 0.16인/㎡)
- : 건설표준품셈 제 3 - 1(토사절취)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조정에 따른 시설물공, 소운반공 변경

[원가계산서 재작성 등]

- 직접공사비 조정에 따른 제경비 재산출 등

□ 적용기준

- 작성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안전행정부 예규 제2호 2013. 3. 26.)
- 재료비, 노무비 및 산출경비 산정기준
 - 노 무 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시중노임단가 2013년 상반기 단가 적용
 - 재 료 비 : 조달청 가격정보 및 시중거래조사가격
 - 중기경비 : 2013년도 건설공사 표준품셈

대구○○○단지 녹색보행가로 조성공사

☐ 사업개요

- 위 치 : ○구 ○○동 ○○○ 좌,우편 도로
- 개 요 : 녹색보행가로 조성 B=20~25m, L=680m

☐ 심사결과

(단위: 천원)

구 분	요청금액	심사금액	증 감 액	증감률
토목부문	1,513,840	1,040,020	△473,820	△31.30%

☐ 심사내용

[중기기초단가적용]

- 환 율 : 1,071원/\$ ⇒ 1,138.3원/\$
- 휘발유 : 1,808원/ℓ ⇒ 1,784원/ℓ
- 경 유 : 1,630원/ℓ ⇒ 1,580원/ℓ
- 중 유 : 900원/ℓ ⇒ 860원/ℓ

[현장여건에 맞는 수량 및 단가산출]

- ① 당초 철거토록 계획된 보도내 화강판석 포장의 상태를 감안하여 일부 양호한 부분에 대하여는 존치 및 정비토록 변경
- ② 보·차도 경계석 전 구간을 철거 후 재 설치토록 계획되어 있었으나, 활용이 가능한 구간은 존치
- ③ 보도포장 구간중 잔디블럭으로 시공되는 구간에 대하여 자재 특성을 감안하여 화강판석 포장으로 변경
- ④ 포장 덧씌우기를 위한 아스팔트 포장 절삭구간 중 L형 측구와의 단차가 적은

구간에 대하여는 절삭공정 삭제

- ⑤ 기존 아스팔트 포장 철거 후 칼라아스콘으로 포장토록 계획되어 있었으나, 기존 포장의 상태가 양호한 점 등을 감안하여 포장철거 없이 덧씌우기로 변경
- ⑥ 내경조절형 수목보호판 설치구간 중 가로수뿌리 등으로 설치가 곤란한곳은 경계석을 이용한 수목경계석 설치로 변경
- ⑦ 기존 보·차도 경계석 철거 후 재료분리 경계석을 재 설치토록 계획되어 있었으나, 직선구간 등 보·차도 경계석 활용이 가능한 구간은 존치
- ⑧ 도로경계석 설치구간 중 기존 주택 경계등 불필요한 장소에 대하여는 삭제
- ⑨ 데크포장 설치에 관한 적용 품 조정
 - 잡철물 제작 설치 ⇒ 부대철골 가공설치(건설표준품셈 7-4-적용)
 - 목재가공 및 설치 ⇒ 마루널깎기(건설공사표준품셈 11-3-2적용)
- ⑩ 적용 품 및 단가 조정
 - 기존 화강판석 세척 후 탈색방지를 위한 코팅(2회)비용 삭제
 - 포장깨기 중 폐기물 들어내기 품 제외 - (폐기물 상차품 별도 계상)
 - 콘크리트 포장절단품 중 일일 시공량 조정(1차로 350m/일⇒2차로 600m/일)
 - 중기 운반 중 자주식 장비에 대하여 운반비 삭제
 - 보도블럭 포장 품 조정(건설표준품셈 12-3-3 : 소형 고압블럭 t=6~8cm적용)
- ⑪ 오기 및 누락 수량 조정
 - 데크포장 자재비 중복 계상에 따른 조정
 - 흙관 부설을 위한 터파기 및 되메우기 물량 반영
 - 자재중 현장 설치조건으로 구입하는 파고라, 평의자, 등의자에 대한 설치비 삭제

※ ①,②,③,④,⑤,⑥,⑦,⑧,⑨,⑩,⑪ 조정에 따른 수량 조정

○ 토공

- 아스팔트 포장 깨기 : $888\text{m}^3 \Rightarrow 17\text{m}^3$
- 무근콘크리트 깨기 : $230\text{m}^3 \Rightarrow 248\text{m}^3$
- 보도블럭철거 : $5,468\text{m}^2 \Rightarrow 2,499\text{m}^2$
- 폐기물 처리(상차) : $1,446\text{m}^3 \Rightarrow 405\text{m}^3$

○ 배수공

- 흙관부설 및 접합(D400mm) : L = 21m ⇒ L = 27m
- 우수받이 설치(0.4*0.3) : N = 11개소 ⇒ N = 65개소
- L형 측구 설치 및 보수 : L = 1,515m ⇒ L = 1,316m
- 맨홀뚜껑 설치(800*800) : N = 106개소 ⇒ N = 72개소
- 오기 및 누락 수량 반영
 - 차도부 맨홀 설치(D648mm) : 30개소
 - 맨홀인상(800*800) : 6개소
 - 관부설을 위한 토공량 반영 : 터파기 36m³, 되메우기 32m³

○ 포장공

- 절삭 후 덧씌우기 15,339m² ⇒ 절삭후 덧씌우기 2,492m², 덧씌우기 12,881m²
- 칼라아스콘 포장 1,627m² ⇒ 덧씌우기 1,569m²
- 보도블럭 포장 공법 및 자재 변경
 - 네오스톤블럭 포장 : 5,587m² ⇒ 2,156m²
 - 잔디블럭 포장 184m² ⇒ 화강판석 포장 926m²
 - 마천석 포장 115m² ⇒ 삭제
 - 데크포장(150 × t30mm) : 477m² ⇒ 309m²
 - 시각 장애인 블록(30×30×6cm) : 314m² ⇒ 216m²
 - 기존 화강판석 세척비용 반영 : 1,810m²
- 보·차도 경계석 설치 : 1,515m ⇒ 1,043m
- 도로 경계석 설치 : 1,148m ⇒ 322m
- 재료분리 경계석 : 582m ⇒ 239m

○ 부대공

- 차선 도색 수량 조정 : 1,782m² ⇒ 1,530m²
- 시멘트 운반 수량 및 중기 운반중 자주식 장비에 대한 운반비 삭제
- 수목 보호판 규격 및 수량 조정 : 140조 ⇒ 109조
 - 수목보호판(1200×1200) 131조 ⇒ 81조
 - 수목보호판(1500×1500) 9조 ⇒ 0조
 - 수목보호판(1670×1670) 0조 ⇒ 7조

- 수목보호판(1200× 950) 0조 ⇒ 21조

○ 조경공

- 파고라, 동의자, 평의자 구입조건(현장설치도)을 감안한 설치비 삭제
- 사유지내 소나무 이식 비용 삭제(굴취 : 23주, 정식 : 23주)
- 통석의자 설치(석재 부착식) 23m ⇒ 58m
- 통석의자 설치(거창석) 116m ⇒ 134m

○ 일반자재 수량 조정

[관급자재대 수량 조정]

○ 레미콘

- 레미콘(25-21-08) : 113m³ ⇒ 188m³
- 레미콘(25-18-08) : 130m³ ⇒ 143m³

○ 아스콘(표층용) : 1,815ton ⇒ 1,819ton

○ 보도블럭(300×300×60) : 5,752m² ⇒ 2,221m²

○ 천연목재(1800×150×30) : 525m² ⇒ 340m²

○ 경계석

- 보·차도경계 석(200×250×1000) : 938개 ⇒ 651개
- 보·차도경계 석(200×250×1000,곡선) : 98개 ⇒ 57개
- 보·차도경계 석(200×250~100×1000) : 58개 ⇒ 42개
- 보·차도경계 석(200×100×1000) : 92개 ⇒ 86개
- 보·차도경계 석(200×100×1000,곡선) : 376개 ⇒ 240개
- 도로경계석(150×150×1000) : 1,183개 ⇒ 332개
- 재료분리경계석(100×100×1000) : 599개 ⇒ 247개

○ 점자블럭

- 점형블럭(300×300×60) : 2,165개 ⇒ 1,484개
- 선형블럭(300×300×60) : 1,434개 ⇒ 989개

○ 수목보호판

- 수목보호판(1200×1200×18) : 131개 ⇒ 81개
- 수목보호판(1500×1500×18) : 9개 ⇒ 21개

○ 일상감사 의견 반영에 따른 자재 변경

- 수목보호판 받침틀 : 109개
- 볼라드(130×1050) : 146개
- 맨홀뚜껑(차도부, 주철재 Ø648) : 30조
- 화강판석(포천석 버너, 30mm) : 953m²

[원가계산서 재작성 등]

- 직접공사비 조정에 따른 제경비 재산출 등
- 2013년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기준 변경에 따른 계수 조정
 -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 10.6% ⇒ 직접노무비 × 10.5%

□ 적용기준

- 작성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안전행정부예규 제437호 2012. 12. 24.)
- 재료비, 노무비 및 산출경비 산정기준
 - 노 무 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시중노임단가 2013년 상반기 단가 적용
 - 재 료 비 : 조달청 가격정보 및 시중거래조사가격
 - 중기경비 : 2013년도 건설공사 표준품셈

○○○ 소하천 정비공사

☐ 사업개요

- 위 치 : ○○군 ○○면 ○○리 일원
- 개 요 : 하천정비 L=1,900m, 교량개체 1개소, 교량보수 2개소

☐ 심사결과

(단위: 천원)

구 분	요청금액	심사금액	증 감 액	증감률
토목부문	1,866,720	1,395,379	△471,341	△25.25%

☐ 심사내용

- 환 율 : 1,071.1원/ \$
- 휘발유 : 1,729원/ ℓ
- 경 유 : 1,580원/ ℓ

[현장여건에 맞는 수량 및 단가산출]

- ① 유수에 방해되는 시설물 및 구조물 설치 개수 조정
 - 계단 개수 조정 12개소 ⇒ 6개소
 - 하상의 장대석구간을 자연석으로 조정: 장대석쌓기 292m ⇒ 자연석쌓기172m
 - 하천의 횡단형상을 보전하기 위해 구조물 축소 반영
 - 목책방책 731.8m ⇒ 594.2m, 자연석쌓기 446.8m ⇒ 303.1m,
 - 저수호안블럭 937.1m ⇒ 994.2m
 - 하상의 유수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교목식재 삭제 및 시설물 개수 조정
 - 하천 또는 습지에 잘 자라는 지피, 초화류 수종으로 조정

- ② 하상 바닥보호공을 콘크리트에서 자연친화적인 사석으로 조정
 - ③ 하천 좌우측 제방도로에는 그늘이 짙어 양지식물은 생육에 지장을 받으므로 음지식물로 수종 조정
 - ④ 교량 고유의 색상 유지를 위하여 도색 제외
- ※ ①, ②, ③, ④ 조정에 따른 축제공, 구조물공, 교량공, 조경공, 부대공 및 사급 자재대 항목 조정

○ 축제공 조정

- 토공량 조정에 따른 사토운반량 조정 $933\text{m}^3 \Rightarrow 1,073\text{m}^3$
- 아스콘깨기 작업량(Q값) 조정 : $4.6\text{m}^3/\text{hr} \Rightarrow 5.43\text{m}^3/\text{hr}$
- 콘크리트포장의 와이어메쉬깔기 및 양생 시 작업인원 제외
- ☞ 건설공사 표준품셈 토목부문 13-3-2 콘크리트 표층 참조

○ 구조물공 조정

- 바닥보호공 설치 168개소
 $\Rightarrow$ 사석부설 189m^3 + 사석 고르기 378m^3 + 레미콘타설 75m^3
- 웅벽천공(코어) $\Rightarrow$ 인력 깨기
- ☞ 건설공사 표준품셈 기계설비부문 제Ⅱ편 제1장 1-8 구멍뚫기 참조

○ 교량공 조정

- 교량난간 설치 단가 오류 조정 : $36\text{천원}/\text{m} \Rightarrow 18\text{천원}/\text{m}$
- 교량명판 및 설명판 견적단가 오류 조정
 - 교량명판 350천원 + 설명판 $350\text{천원} \Rightarrow$ 교량명판 및 설명판 350천원
- 교량도색 225.2m^2 삭제

○ 조경공 조정

- 토공 조정
 - 터파기 $645\text{m}^3 \Rightarrow 253\text{m}^3$, 되메우기 $188\text{m}^3 \Rightarrow 60\text{m}^3$, 잔토처리 $443\text{m}^3 \Rightarrow 188\text{m}^3$,
- 포장공 조정
 - 녹지경계석 $238\text{m} \Rightarrow 81\text{m}$, 재료분리경계석 $33\text{m} \Rightarrow 23\text{m}$,
 블록포장 $943\text{m}^2 \Rightarrow 460\text{m}^2$, 황토콘 $237\text{m}^2 \Rightarrow 192\text{m}^2$
- 시설물공 조정

- 계단 개수 12개소 $\Rightarrow$ 8개소, 데크 4개소 $\Rightarrow$ 2개소, 평의자 11개 $\Rightarrow$ 8개,
징검다리 24개소 $\Rightarrow$ 8개소,
- 목교설치 시 현장여건에 맞게 조정 : 잡철물 제작 및 설치 $\Rightarrow$ 잡철물 설치
- 목책방책설치 시 목재가공 및 설치 단가 조정 : 문화재품셈
 $\Rightarrow$ 건설공사 표준품셈으로 조정

☞ 건설공사 표준품셈 건축부문 11-3 1. 마루틀설치 참조

- 저수호안블럭 설치 시 경관계단블럭 설치단가(m^2) 조정 :
특별인부 0.017인, 보통인부 0.007인, 크레인(10톤) 0.048hr 적용

☞ 건설공사 표준품셈 토목부문 13-4 호안블록 붙이기 참조

- 식재공 조정
- 낙우송 8주, 수양버들 22주, 왕벚나무 13주, 청단풍 12주, 홍단풍 3주 식재
불두화 1,230주 $\Rightarrow$ 0주, 조팝나무 5,402주 $\Rightarrow$ 5,028주
마삭줄 7,616본 $\Rightarrow$ 4,355본, 줄사철 7,582본 $\Rightarrow$ 1,717본,
갯버들 1,840본 $\Rightarrow$ 11,470본, 금계국 2,600본 $\Rightarrow$ 3,500본,
물억새 9,367본 $\Rightarrow$ 25,341본, 부처꽃 8,424본 $\Rightarrow$ 0본,
벌개미취 7,387본 $\Rightarrow$ 0본, 원추리 3,110본 $\Rightarrow$ 0본, 줄 5,508본 $\Rightarrow$ 0본,
부들 0본 $\Rightarrow$ 9,708본, 창포 5,310본 $\Rightarrow$ 7,110본
잔디식재 조정 : 평떼 $\Rightarrow$ 줄떼

○ 부대공 조정

- 직접노무비 조정에 따른 가설건물 면적 조정
- 가설사무소 $100m^2 \Rightarrow 75m^2$
- 가설창고 $60m^2 \Rightarrow 50m^2$
- 부지임대면적 조정 $480m^2 \Rightarrow 250m^2$
- 부지임대료 요율조정($10/100 \Rightarrow 50/1000$)
※ 대구광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8조 1항 참조
- 가도설치를 위한 흙관부설시 단가 조정 : 배관공(수도) $\Rightarrow$ 배관공

○ 사급자재대 조정

- 사석(30kg이상/개) $208m^3$ 추가반영
- 혼합골재($\phi 40mm$) $564m^3 \Rightarrow 471m^3$
- 도로경계석($150*150*1,000mm$) : 259개 $\Rightarrow$ 177개

[관급자재대 수량 및 단가조정]

- 이형철근(SD300,13mm) 4.001톤 $\Rightarrow$ 2.134톤
- 콘크리트블록 조정
 - 세굴방지블록 168개 삭제
 - 경관계단블록 $618\text{m}^2 \Rightarrow 1,173\text{m}^2$
 - 징검다리블록 27개 $\Rightarrow$ 8개
- 고강도콘크리트블록 $980\text{m}^2 \Rightarrow 478\text{m}^2$
- 합성목재데크 $130\text{m}^2 \Rightarrow 74\text{m}^2$

[원가계산서 재작성 등]

- 직접공사비 조정에 따른 제경비 재산출 등

☐ 적용기준

- 작성기준 : 작성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안전행정부예규 제437호 2012. 12. 24.)
- 재료비, 노무비 및 산출경비 산정기준
 - 노 무 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시중노임단가 2013년 상반기 단가 적용
 - 재 료 비 : 조달청 가격정보 및 시중거래조사가격
 - 중기경비 : 2013년도 건설공사 표준품셈

○○국도~○○지구간 도로건설공사(2단계 2~3구간)

☐ 사업개요

○ 위 치 : ○구 ○○동~○○동 일원

○ 개 요 : 도로건설 : B=35m, L=560.0m

☐ 심사결과

(단위: 천원)

구 분	요청금액	심사금액	증 감 액	증감률
토목부문	3,382,568	2,796,860	△585,708	△17.32%

☐ 심사내용

[중기기초단가적용]

- 환 율 : 1,071.1원/ \$
- 휘발유 : 1,668원/ℓ ⇒ 1,729원/ℓ
- 경 유 : 1,469원/ℓ ⇒ 1,580원/ℓ

[현장여건에 맞는 수량 및 단가산출]

- ① 공사구간우측의 절토높이가 낮은 구간은 역L형옹벽에서 현장여건에 맞게 L형옹벽 + 측구형옹벽 으로 조정
- ② 가설현장 사무실설치 부지면적 조정
- ③ 식수대의 조경토를 생육에 필요한 최소량 반영
- ④ 공사구간우측의 암 절취를 현장실사 후 토사층(20cm)+암 절취로 반영
- ⑤ 느티나무 식재 시 거수목은 활착 및 성장이 늦어 규격 조정(H=4.5m, R=20cm ⇒ H=4.0m, R=15cm) 및 수목식재 품을 2013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단가로 조정

- ⑥ 토량의 이중계산 방지를 위하여 하수도 터파기 수량은 횡단면도에서 산출
- ⑦ 공사좌측 성토구간에 설치예정인 디자인웬스는 비탈면설계기준 적용에 따른 구간 조정($L=504m \Rightarrow 371m$)
- ⑧ 본 현장은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국토해양부)상 대상현장(도로를 이용하는 토사반출 운반량이 $10,000m^3$)이 아닌 순성토구간 현장이므로 현장여건상 삭제
-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조정에 따른 토공, 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부대공, 조정공 및 사급자재대 항목 조정

○ 토공 조정

- 토공량 조정
 - 흙깎기(토사) $3,859m^3 \Rightarrow 4,095m^3$, 흙깎기(리핑암) $996m^3 \Rightarrow 601m^3$,
 흙깎기(발파암) $258m^3 \Rightarrow 96m^3$, 터파기(토사) $840m^3 \Rightarrow 1,462m^3$
 터파기(리핑암) $458m^3 \Rightarrow 211m^3$, 터파기(발파암) $258m^3 \Rightarrow 100m^3$
 순성토운반(토사) $19,335m^3 \Rightarrow 21,418m^3$
 - 무근콘크리트 깨기 및 콘크리트포장 깨기 토량환산율(f 값) 조정
 $f = 1/1.5=0.66 \Rightarrow 1/1.4=0.71$
 - 아스콘 깨기 작업량(Q 값) 조정 : $4.6m^3/hr \Rightarrow 5.43m^3/hr$
 - 비탈면 보호공 수량 조정
 - 법면 보호공(줄페) $2,673m^2 \Rightarrow 2,490m^2$, 절토면 고르기 $810m^2 \Rightarrow 613m^2$,
 녹생토 암절개면 보호공 수량 및 단가 조정 $902m^2 \Rightarrow 673m^2$
 - ☞ 건설공사 표준품셈 토목부문 4-7 비탈면 녹화 참조
 - 기존가옥철거 단가 조정
 - 강관비계설치 조정 : 쌍줄비계매기 $\Rightarrow$ 외줄비계매기
 - ☞ 건설공사 표준품셈 토목부문 2-6-1 강관비계 참조

○ 우수공 조정

- 웅벽구조 변경에 따른 토공량 조정
 - 터파기(토사) $3,821m^3 \Rightarrow 921m^3$, 되메우기 $2,502m^3 \Rightarrow 575m^3$
- 흙관접합 및 부설 단가 조정 : 배관공(수도) $\Rightarrow$ 배관공
- 조립식맨홀설치작업 사다리설치 시 자재비만 적용

○ 구조물공 조정

- 역L형옹벽(H=2.5m)에서 L형옹벽(H=1.0~4.0m)으로 구조변경에 따른 수량조정
 - 레미콘타설(철근) 424m³ ⇒ 128m³, 레미콘타설(무근) 50m³ ⇒ 39m³
유로폼 966m² ⇒ 554m², 철근가공조립 31.92톤 ⇒ 11.803톤
강관비계 588m² ⇒ 345m²
- 역L형옹벽(H=2.0m)에서 측구형옹벽(H=1.7m)으로 구조변경에 따른 수량조정
 - 레미콘타설(철근) 326m³+레미콘타설(무근) 45m³ ⇒ 레미콘타설(무근) 535m³
유로폼 810m²+합판거푸집(6회) 45m² ⇒ 합판거푸집(4회) 1,505m²

○ 포장공 조정

- 중분대 및 식수대 부식토 부설 1,673m³ 삭제
- 아스콘기층(중간층 6cm) 포설량조정 3,600m²/日 ⇒ 4,000m²/日 (t<10cm이하)
☞ 건설공사 표준품셈 토목부문 12-2-3 2.아스팔트 기층 참조

○ 부대공 조정

- 토사반출량 확인을 위한 측중기설치 삭제
- 공사용 가설건물 규모 조정
 - 조립식가설사무소 면적 조정 180m² ⇒ 100m²
 - 조립식가설숙소 80m² 삭제 : 지역제한입찰 대상금액임
 - 부지임대면적 조정 640m² ⇒ 320m²
 - 부지임대료 단가조정 : 362천원/m² ⇒ 181천원/m²
☞ 부지임대료 요율(10/100⇒50/1000)
※ 대구광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8조 1항 참조
- 2012년도 단가로 적용된 품질시험비를 2013년도 단가로 조정

○ 조경공 조정

- 느티나무규격 조정 : 1,080천원/주(H=4.5m,R=20cm)⇒524천원/주(H=4.0m,R=15cm)

[관급자재대 수량 및 단가조정]

○ 레미콘 수량 조정

- 레미콘(25-24-120mm) 905m³ ⇒ 148m³
- 레미콘(25-21-80mm) 117m³ ⇒ 6618m³

- 레미콘(25-18-80mm) 923m³ ⇒ 885m³
- 이형철근(SD300 D13m) 수량 조정 63.61톤 ⇒ 1.3톤
- 아스콘(표층용,WC-2) 단가 조정 79,340원/톤 ⇒ 76,260원/톤
- 점토벽돌 단가 조정
 - 점토바닥벽돌(230*114*60mm,핑크) 730원/매 ⇒ 970원/매
 - 점토바닥벽돌(230*114*60mm, 그레이) 730원/매 ⇒ 1,100원/매
- 디자인웍스 설치구간 조정 : 504m ⇒ 371m

[원가계산서 재작성 등]

- 직접공사비 조정에 따른 제경비 재산출 등
-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의하여 산출된 항목과 중복된 환경보전비 삭제

□ 적용기준

- 작성기준 : 작성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안전행정부예규 제437호 2012. 12. 24.)
- 재료비, 노무비 및 산출경비 산정기준
 - 노 무 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시중노임단가 2013년 상반기 단가 적용
 - 재 료 비 : 조달청 가격정보 및 시중거래조사가격
 - 중기경비 : 2013년도 건설공사 표준품셈

○○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구 ○○천(○○교~○○강 합류점)
- 개 요 : 하천정비 L=2.2km

☐ 심사결과

(단위: 천원)

구 분	요청금액	심사금액	증 감 액	증감률
토목부문	7,277,000	6,376,490	△900,510	△12.37%

☐ 심사내용

[중기기초단가적용]

- 휘발유 : 1,824원/ℓ ⇒ 1,772원/ℓ
- 경 유 : 1,675원/ℓ ⇒ 1,585원/ℓ
- 중 유 : 1,250원/ℓ ⇒ 863원/ℓ

[현장여건에 맞는 수량 및 단가산출]

※ 노무비 추가반영 : 2013년 상반기 노임단가로 적용된 노무비를
2013년 하반기 노임단가 적용

○ 축제공 조정

- 제방의 사토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하천둔치 높이 조정을 통한 토공량 조정
(발주부서 자체 수정사항)
- 흙쌓기 23,364m³ ⇒ 24,495m³, 흙깎기 13,247m³ ⇒ 10,772m³,
사토운반 4,194m³ ⇒ 19m³, 구조물혈기 61m³ ⇒ 78m³

○ 호안공 조정

- 일상감사 현장조사 시 발견된 파라펫옹벽 하단부 견치블럭 및 석축의 유실 부분 307㎡ 단면 보강 적용(발주부서 자체 수정사항)
- 가물막이 시 시공성, 경제성 및 안정성을 감안하여 설치방법 조정
 - P.P마대(45×70cm) 쌓기 ⇒ 톤마대(100×100cm) 쌓기
 - ☞ 건설공사 표준품셈 토목부문 5-3 흙막이 및 물막이 참조

○ 구조물공 조정

- 공사용 가설웬스(방음벽) 설치공종 변경
 - 가설웬스(방음벽) 1,425m ⇒ E.G.I웬스(이동식) 1,425m
- 잠수교 및 파라펫옹벽(J형) 철근가공조립 공정 변경
 - 현장가공조립 ⇒ 공장가공조립

○ 시설물공 조정

- 목교의 교대 및 구조부의 시설물 형식 및 구조 재검토 결과 반영
 - 목교B 1@23m ⇒ 1@21m(수량조정 감2m)
 - 목교C(교각 1기 설치) 1@36m ⇒ 2@18m
 - 형상규격 조정 900×300×16×28mm ⇒ 588×300×12×30mm
- 데크포장하부(목교A, 목교B, 목교C, 교각마감, 목재계단, 관찰데크A, 관찰데크B, ○○교 진입데크) 아연도 각판 설치 단가 조정
 - 잡철물 제작 및 설치 ⇒ 부대철골 가공설치
 - ☞ 건설공사 표준품셈 건축부문 7-4 부대철골 가공설치 참조

○ 포장공 조정

- 하천둔치(우안) 산책로에 콘크리트포장 후 상부에 탄성재포장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포장 재료의 기능성, 내구성, 보행자의 안전성 등을 감안하여 흙콘크리트 포장으로 변경
 - 탄성포장 4,195.1㎡ + 흙콘크리트 포장 3,751.4㎡
 - ⇒ 흙콘크리트 포장 7,946.5㎡(4,195㎡ + 3,751.4㎡)
- 자연석 판석 포장 시 ㎡당 작업인원 조정
 - 석공 0.4인 + 보통인부 0.2인 ⇒ 석공 0.1인 + 보통인부 0.2인
 - ☞ 「2010년 원가분석 자문회의」 결과 참조

○ 조경공 조정

- 하상의 수목 및 시설물은 유수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시설물만 설치
 - 평의자 40개소 $\Rightarrow$ 30개소, 자연석의자 22개소 $\Rightarrow$ 19개소
 - 왕버들 46주 $\Rightarrow$ 26주
- 하천 좌안(고수호안, 둔치 등)중 도시계획도로 예정부지에 중복되는 조경 식재 수량 조정
 - 갯버들 225주 $\Rightarrow$ 185주, 산철쭉 43,600주 $\Rightarrow$ 25,300주
 - 조팝나무 14,400주 $\Rightarrow$ 13,200주, 황매화 15,100주 $\Rightarrow$ 11,500주
 - 갈대 8,100주 $\Rightarrow$ 7,000주, 금불초 10,300주 $\Rightarrow$ 6,300주
 - 띠 9,600주 $\Rightarrow$ 8,800주, 부들 1,300주 $\Rightarrow$ 0주
 - 붉은수크령 4,400주 $\Rightarrow$ 4,000주, 털부처꽃 12,900주 $\Rightarrow$ 11,800주

○ 부대공 조정

- 공사용 가설건물 규모 조정(직접노무비 9~30억원 기준)
 - 조립식가설숙소 100m² 삭제 : 지역제한입찰 대상금액임
 - 부지임대면적 조정 1,320m² $\Rightarrow$ 680m²((가설사무소+가설창고+시험실) $\times$ 2)
 - 부지임대료 단가조정 : 30,200원/m² $\Rightarrow$ 15,100원/m²
 - ☞ 부지임대료 효율(10/100 $\Rightarrow$ 50/1000)
 - ※ 대구광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8조 1항 참조

○ 사급자재대 조정

- 유류단가, 각재, 보통철선 등 주요자재대 거래실례가격 적용
- 부직포(500g) : 2,100원/m² $\Rightarrow$ 1,200원/m²
- 자연석(300mm) : 35,000원/m³ $\Rightarrow$ 36,000원/m³(내역서 적용 오기 수정)

[관급자재대 수량 및 단가 조정]

○ 레미콘 수량 조정

- 레미콘(25-27-150mm) 0m³ $\Rightarrow$ 15m³
- 레미콘(25-21-120mm) 1,320m³ $\Rightarrow$ 1,501m³
- 레미콘(25-21-80mm) 157m³ $\Rightarrow$ 20m³
- 레미콘(25-18-80mm) 3,199m³ $\Rightarrow$ 2,459m³

○ 철근 수량 조정

- 이형철근(SD400, HD13mm) 46.982톤 $\Rightarrow$ 48.311톤
- 이형철근(SD300, D16~32mm) 11.888톤 $\Rightarrow$ 6.848톤
- 이형철근(SD300, D13mm) 0.578톤 $\Rightarrow$ 4.461톤

○ 평의자(1500x350x400mm) 40개소 $\Rightarrow$ 30개소

○ 탄성포장(t1.5cm, 60,700원/㎡) 4,279㎡ + 흙콘크리트(t15cm, 36,000원/㎡) 3,826㎡

$\Rightarrow$ 흙콘크리트(t15cm, 36,000원/㎡) 7,947㎡(현장설치도 기준)

○ 합성목재 수량 조정

- 데크(25t×150mm) 764㎡ $\Rightarrow$ 758㎡
- 난간(W1,500×H1,200mm) 274m $\Rightarrow$ 251㎡

[원가계산서 재작성 등]

- 직접공사비 조정에 따른 제경비 재산출 등
- 환경보전비 항목 삭제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6 환경관리비 산출기준」 제1호의 다목에 규정된 시설(42개)이 일부라도 반영된 경우에는 요율로 계상하지 않음

□ 적용기준

- 작성기준 : 작성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안전행정부예규 제2호 2013. 3. 26.)
- 재료비, 노무비 및 산출경비 산정기준
 - 노 무 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시중노임단가 2013년 하반기 단가 적용
 - 재 료 비 : 조달청 가격정보 및 시중거래조사가격
 - 중기경비 : 2013년도 건설공사 표준품셈

○○정수장 생물감시장치 설치공사

☐ 사업개요

- 위 치 : ○○군 ○○정수사업소내
- 개 요 : 계류 및 연못차수공외 1개소

☐ 심사결과

(단위: 천원)

구 분	요청금액	심사금액	증 감 액	증감률
토목부문	230,000	170,060	△59,940	△26.06%

☐ 심사내용

[중기기초단가적용]

- 환 율 : 1,138.3원/\$ ⇒ 1,102.2원/\$
- 휘발유 : 1,784원/ℓ ⇒ 1,712원/ℓ
- 경 유 : 1,580원/ℓ ⇒ 1,532원/ℓ

[현장여건에 맞는 수량 및 단가산출]

- ① 연못 및 계류설치시 누수방지를 위한 차수공법 변경 : 벤토+매트 ⇒ 콘크리트
 - ② 연못둘레 디딤돌 두께조정(7⇒5cm) 및 연못 가장자리 콘크리트상단 조정(화강석 두겹석 ⇒ 자연호박돌 붙임)
 - ③ 연못 및 마운딩(봉우리) 횡단면도 작성에 따른 토적량 재조정 및 잔디,초화류 등 식생을 위하여 정원흙(20cm) 부설
- ※ ①, ②, ③ 조정에 따른 토공, 식재공, 시설물공, 포장공, 계류 및 연못공, 자연석공, 관공 및 사급자재대 항목 조정

○ 토공 조정

- 터파기 $978\text{m}^3 \Rightarrow 168\text{m}^3$, 되메우기 $375\text{m}^3 \Rightarrow 115\text{m}^3$,
잔토처리 $569\text{m}^3 \Rightarrow 61\text{m}^3$, 객토 $256\text{m}^3 \Rightarrow$ 정원 흙쌓기 736m^3

○ 식재공 조정

- 일위대가에 기재된 수목자재비를 사급자재대로 기재
- 잔디면적 조정 $497\text{m}^2 \Rightarrow 473\text{m}^2$

○ 시설물공 조정

- 일위대가에 기재된 시설자재비를 사급자재대로 기재

○ 포장공 조정

- 일위대가에 기재된 시설자재비를 사급자재대로 기재
- 디딤석 두께 조정 : 자연석판석포장(t5cm) 70.99m^2 + 디딤석(t7cm) 158개
 $\Rightarrow$ 자연석판석포장(t5cm) 117.91m^2

○ 계류 및 연못공 조정

- 연못 조성 중 차수공-벤토+매트 및 수조설치 1식을 콘크리트공법 및 모체 침투성방수(연못노출면 21cm 반영)로 표준품셈 적용 조정
 - 벤토나이트매트 547.97m^2 + SB혼합토 $547.97\text{m}^2 \Rightarrow$ 레미콘타설 115.32m^3
 - 화강석두겹석 $122.65\text{m}^3 \Rightarrow$ 자갈붙임 22.18m^3
- 계류설치 중 차수공-벤토+매트 1식을 콘크리트공법으로 표준품셈 적용 조정
 - 벤토나이트매트 66.24m^2 + SB혼합토 $66.24\text{m}^2 \Rightarrow$ 레미콘타설 30.06m^3

○ 자연석공 조정

- 조경석 쌓기 및 놓기(계류, 2목~4목)를 현장여건에 맞게 작업단가 조정
 - 정원석 쌓기 및 놓기 $\Rightarrow$ 조경유용석 쌓기 및 놓기
- ☞ 건설공사 표준품셈 토목부문 4-6-1 조경석 쌓기 및 놓기 참조

○ 관공 조정

- 일위대가에 기재된 시설자재비를 사급자재대로 기재

○ 사급자재대 조정

- 일위대가에 기재된 시설 및 수목자재비를 내역서에 반영

[원가계산서 재작성 등]

○ 직접공사비 조정에 따른 제경비 재산출 등

- 간접노무비 10.2% $\Rightarrow$ 9.9%
- 기타경비 5.8% $\Rightarrow$ 6.1%

※ 조달청 2013년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2013. 4. 1.) 적용

□ 적용기준

○ 작성기준 : 작성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안전행정부예규 제2호 2013. 3. 26.)

○ 재료비, 노무비 및 산출경비 산정기준

- 노 무 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시중노임단가 2013년 상반기 단가 적용
- 재 료 비 : 조달청 가격정보 및 시중거래조사가격
- 중기경비 : 2013년도 건설공사 표준품셈

○○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 사업개요

- 위 치 : ○○강 합류지점~○○동
- 개 요 : 하천정비 L=4.7km

☐ 심사결과

(단위: 천원)

구 분	요청금액	심사금액	증 감 액	증감률
토목부문	13,570,812	12,883,243	△687,569	△5.07%

☐ 심사내용

[중기기초단가적용]

- 환 율 : 1,109.6원/ℓ ⇒ 1,075.9원/ℓ
- 휘발유 : 1,767원/ℓ ⇒ 1,718원/ℓ
- 경 유 : 1,583원/ℓ ⇒ 1,536원/ℓ

[현장여건에 맞는 수량 및 단가산출]

〈당초 설계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013년 하반기 실적공사비를 적용하여 설계내역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적공사비에 대해 조달청에서 노무비, 재료비, 경비로 분류하여 발표한 공사비 적용 및 원가계산 실시〉

○ 철거공 조정

- 난간철거 후 누락 산정된 고재처리 반영
- 고철(중량A 742kg, 알미늄 20,100kg)
- 석면해체 406m³ 제외(현장설치비 항목으로 별도 산정)

○ 축제공 조정

- 준설토 개량 6,091m³ 제외(현장설치비 항목으로 별도 산정)

○ 호안공 조정

- 터파기시 기계작업과 인력비율 조정 : 기계90% + 인력10% ⇒ 기계100%

○ 구조물공 조정

- 매몰되는 구조물의 배면측의 거푸집 사용 횟수 조정

- 방촌2.3교 : 매몰한 마감 943m² + 거친 마감 17m²

⇒ 매몰한 마감 806m² + 거친 마감 171m²

- 교량가각부 : 매몰한 마감 369m² + 거친 마감 6m²

⇒ 매몰한 마감 296m² + 거친 마감 80m²

- 역L형옹벽 : 매몰한 마감 93m² + 거친 마감 2m²

⇒ 매몰한 마감 42m² + 거친 마감 54m²

- 캔틸레버옹벽 : 매몰한 마감 6,400m² + 거친 마감 83m²

⇒ 매몰한 마감 4,655m² + 거친 마감 1,829m²

- 비계면적 계산 시 본체 구조물의 상부 50cm는 제외

- 교량가각부의 강관비계 : 155m² ⇒ 140m²

- 캔틸레버옹벽의 강관비계 : 1,704m² ⇒ 1,538m²

- 가 시설 계측 1식(현장설치비 항목으로 별도 산정)

- 띠장 설치 및 철거, 버팀보 설치 및 철거, 사보강재 설치 및 철거의 강판 구멍뚫기 시 日당 작업인원 조정

- 강판 구멍뚫기(T=10~16mm) : 100개/日 ⇒ 500개/日

☞ 「2012년 원가분석 자문회의」 결과 참조

- 버팀보제작(250*250mm) 수량산출 착오 계상된 부분 조정 : 21본 ⇒ 6본

- 연속구조물인 캔틸레버부 철근(258.088톤)가공방법 조정

- 현장가공 ⇒ 공장가공 + 하차비 반영

- 홍수방호벽설치 철근가공조립 수량산출 착오 계상된 부분 조정 : 57.03톤
⇒ 54.03톤

- 홍수방호벽+화단 설치 시 차량통행을 위한 소요 폭(7.5m) 미확보 구간에는 여유고 확보를 위한 홍수방호벽만 설치하는 것으로 조정

- 화단블럭(본체)쌓기 $352\text{m}^2 \Rightarrow 261\text{m}^2$, 화단블럭(캡)쌓기 : $881\text{m} \Rightarrow 653\text{m}$

○ 오수공 조정

- 띠장 설치 및 철거, 버팀보 설치 및 철거, 사보강재 설치 및 철거의 강판 구멍뚫기 시 日당 작업인원 조정
- 강판 구멍뚫기($T=10\sim 16\text{mm}$) : 100개/日 $\Rightarrow$ 500개/日

☞ 「2012년 원가분석 자문회의」 결과 참조

- 이중벽PE관 접합 및 부설 m당 작업인원 조정
- 이중벽PE관($D200\text{mm}$) : 배관공 0.025인 + 보통인부 0.0267인
 $\Rightarrow$ 배관공 0.0163인 + 보통인부 0.0163인
- 이중벽PE관($D300\text{mm}$) : 배관공 0.0317인 + 보통인부 0.0317인
 $\Rightarrow$ 배관공 0.0243인 + 보통인부 0.0243인

☞ 「2011년 원가분석 자문회의」 결과 참조

- 하수관내 CCTV조사 271m 및 수밀시험 12개소는 관계법령에 의해 분리 발주 대상임
- 악취차단막설치 5개소 제외(현장설치비 항목으로 별도 산정)

○ 하도 내 시설물공 조정

- 터파기시 작업방법 조정 : 수중토사 $\Rightarrow$ 용수토사

○ 부대공 조정

- 공사용 가설건물 규모 조정(직접노무비 9~30억원 기준)

- 가설사무소 : $550\text{m}^2 \Rightarrow 230\text{m}^2$
- 가설창고 : $120\text{m}^2 \Rightarrow 80\text{m}^2$
- 숙소 : $230\text{m}^2 \Rightarrow 100\text{m}^2$

☞ 건설공사 표준품셈 2-1 1. 현장사무소 등의 규모 참조

(현장사무소의 규모 산정시 총 공사금액 기준이 아닌 직접노무비 기준임)

- 중기운반 거리 조정 : 시청 $\Rightarrow$ 구청

☞ 건설공사 표준품셈 토목부문 10-1 3. 운반 및 수송 참조

○ 사급자재대 수량 및 단가 조정

- 부직포($300\text{g}/\text{m}^2$) : $1,150\text{원}/\text{m}^2 \Rightarrow 840\text{원}/\text{m}^2$

〈사급자재 $\Rightarrow$ 관급자재〉 항목 조정

- 이중벽PE관(D200mm) 285m 및 이중벽PE관(D300mm) 37m
- 환봉지지연결구(D200mm) 38조 및 환봉지지연결구(D300mm) 4조
- 조경 식재공 조정
- 일위대가에 반영된 수목할증률 10%를 내역서에 기재
- 조경포장공 조정
 - 산책로(경화토) 및 자전거도로(흙콘크리트)의 포장 재질 및 면적 조정
 - 경화토 7,130m² + 흙콘크리트 591.5m² ⇒ 흙콘크리트 7,625m²
 - 경계부마감(거푸집) 5,409.4m ⇒ 5,722m, 경계석 338m 제외
- 조경 시설물공 조정
 - 고수부지 및 저수로의 관찰데크는 홍수시 전도나 파손위험이 있고,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제외
 - 환경조형물(사과모형) 5개소 제외(현장설치비 항목으로 별도 산정)

[관급자재대 수량 및 단가 조정]

- 화단블럭(본체) 364m² ⇒ 269m², 화단블럭(캡) 2,387개 ⇒ 1,769개
- 안전난간(H=0.7m) 1,312m(현장설치비 항목으로 별도 산정)
- 레미콘 수량 조정
 - 레미콘(25-18-150mm) 60m³ 제외
 - 레미콘(25-18-120mm) 33m³ ⇒ 12m³
- 〈사급자재⇒관급자재〉 항목 조정
- 이중벽PE관 사급자재(부가세 미포함)에서 관급자재(부가세 포함)로의 전환
 - 이중벽PE관(D200mm) 46본 : 156,500원/본 ⇒ 108,430원/본
 - 이중벽PE관(D300mm) 7본 : 254,720원/본 ⇒ 179,670원/본
- ※ 당초 사급자재대에 적용된 자재는 타 지역의 물가정보지에 등재된 제품으로 반영되어 있었으나 경제성, 내구성 및 시공성 등을 감안하여 대구, 경북 지역 업체 중에서 조달우수 제품으로 조정
- 경화토 7,130m² + 흙콘크리트 592m² ⇒ 흙콘크리트 7,625m²
- 화강석경계석(120*150*1,000mm) 348m 제외
- 목재판재(멀바우) 660m² ⇒ 288m²

[현장설치비 수량 및 단가 조정]

- 내역서상 제경비가 포함된 견적단가를 현장설치비로 별도 분리 산정함
 - 석면해체 406m²
 - 준설토 개량 6,091m³
 - 가시설 계측 1식
 - 악취차단막 5개소
 - 환경조형물(사과모형) 5개소
 - 안전난간(H=0.7m) 1,312m

[원가계산서 재작성 등]

- 직접공사비 조정에 따른 제경비 재산출 등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조정(〈재료비(관급포함)+직접노무비〉의 합계액기준)
 - {(재료비+직접노무비+수급자설치 관급자재대/1.1)×1.88%}와
 - {(재료비+직접노무비)×1.88%}×1.2를 비교후 작은 금액 적용
- ※ 〈재료비(관급포함)+직접노무비〉의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임.

☐ 적용기준

- 작성기준 : 작성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안전행정부예규 제2호 2013. 3. 26.)
- 재료비, 노무비 및 산출경비 산정기준
 - 노 무 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시중노임단가 2013년 하반기 단가 적용
 - 재 료 비 : 조달청 가격정보 및 시중거래조사가격
 - 중기경비 : 2013년도 건설공사 표준품셈

○○지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 사업개요

- 위 치 : ○○군 ○○읍 일원
- 개 요 : 오수관로(D200~300mm) L=10.97km, 압송관로 D150mm L=3.15km
중계펌프장(Q=850m³/일), 배수설비 260가구

□ 심사결과

(단위: 천원)

구 분	요청금액	심사금액	증 감 액	증감률
토목부문	5,869,040	5,145,100	△723,940	△12.33%

□ 심사내용

[중기기초단가 조정]

- 환 율: 1,092.9원/\$ ⇒ 1,138.0원/\$
- 휘발유: 1,746.0원/ℓ ⇒ 1,784원/ℓ
- 경 유: 1,587.0원/ℓ ⇒ 1,580원/ℓ
- 중 유: 900원/ℓ ⇒ 860원/ℓ

[현장여건에 맞는 수량 및 단가 산출]

《토목부문》

① 수리계산을 통한 오수 관경 조정

- 계획 오수량, 최소유속 등에 대한 수리계산에 따른 관경 재검토로 본선 및 지선 관로 관경 조정
⇒ 본선관로(L = 6297m) : D300mm → D200mm,
지선관로(L = 4332m) : D200mm → D150mm

② 관로 노선변경 및 맨홀 승고와 간격 조정

- 오수관로 일부가 하천구간에 설치될 계획이나, 4대강 정비사업으로 인한 낙동강 수위상승으로 인해 맨홀 상단부가 하천 수위보다 아래에 위치하게 됨으로써 하천수 유입 등 향후 유지관리상의 문제점이 있어 도로 쪽으로 선형변경 및 부득이한 하천부 시공구간에 대하여는 맨홀 상단부를 하천수위에서 0.5m 높임.

⇒ 오수관로 노선변경(하천 → 도로) $L = 1,009\text{m}$

하천부 시공 및 맨홀 승고 $L = 241\text{m}$, 3개소

- 하수도 시설기준에 따른 맨홀 간격 및 개소수 조정

⇒ 오수맨홀 설치 : $N = 276\text{개소} \rightarrow N = 266\text{개소}$

③ 오수관로 추진공법 적용구간 조정

- 오수관로 매설을 위하여 추진공법으로 설계되어 있는 구간에 대하여, 시공성, 안정성, 경제성, 공사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일부구간 개착공법(Open-cut)으로 변경

⇒ 추진공(D300mm) 170m → 개착(Open-cut) 142m, 추진공 28m

④ 관보호용 모래기초 시공방법 조정

- 하수도 시설기준에 따라 관상단 0.2m까지 모래를 부설하되 되메우기량이 많은 가시설 구간에 대하여 부설단면을 조정하여 모래 되메우기량을 최소화

⇒ 모래 부설 : $6,632\text{m}^3 \rightarrow 5,762\text{m}^3$

⑤ 가시설공 엄지말뚝 근입깊이 조정

- 가시설(버팀보식)공의 엄지말뚝 근입 깊이에 대한 구조계산으로 연암근입장 조정

⇒ 연암근입장 $h = 1.5\text{m} \rightarrow h = 1.0\text{m}$

⑥ 현장 여건을 감안한 계측 종목 및 회수 조정

- 오수펌프장 흙막이 가시설에 대한 변위 관측을 위해 계측기를 설치토록 계획되어 있으나 주변에 가옥이 없고 지반에 연암층이 형성되어 있는 등의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일부 계측기 제외 및 측정횟수 등 조정

⇒ 설치계측기 : 4종 → 2종

설치계측기 제외 : 지표침하계 및 지하수위계

⑦ 현장여건을 고려한 단가 조정

- 폐기물깨기 공종에서 들어내기 공정에 대한 단가 삭제
⇒ 콘크리트포장깨기, 아스팔트포장깨기, 무근 콘크리트깨기, 철근콘크리트깨기등

⑧ 품질시험 종류 및 단가 조정

-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품질 시험 종류 조정
⇒ 콘크리트 슬럼프 시험 삭제 및 부가세 제외 후 계상
- 대구광역시 『2013년 건설공사 품질시험 종류 및 수수료』 기준에 따라 품질 시험비 단가 조정(대구광역시 고시 제2013-10호)

《기계부문》

⑨ 품셈기준 및 현장 여건을 고려한 내역반영 등

- 협잡물파쇄기, 수중펌프: 사급 → 관급으로 반영
- 배관설치 적용품셈 수정: 플랜트설비공사 품 → 기계설비공사 품
- 배관지지대 적용자재 변경(SS41 → STS304) 및 도색공정 삭제

⑩ 수량 및 공량산출 등 오류 수정

- 밸브설치 일위대가 오류 수정
 - 100A : 플랜트배관공 0.24인 + 특별인부 0.12인
→ 배관공 0.214인 + 보통인부 0.105인
 - 25A : 플랜트배관공 0.066인 + 특별인부 0.033인 → 배관공 0.05인
 - 65A : 플랜트배관공 0.133인 + 특별인부 0.066인 → 배관공 0.108인
 - 200A : 플랜트배관공 0.407인 + 특별인부 0.203인
→ 배관공 0.471인 + 보통인부 0.188인
- 배관설치 수량 오류 수정
 - 25A : 9.35m → 8.5m
 - 65A : 1.65m → 1.5m
 - 100A : 20.9m → 19m
 - 200A : 1.1m → 1.0m

[원가계산서 재작성]

① 2013년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기준에 따른 계수 조정

② 직접공사비 조정에 따른 제경비 재작성등

□ 적용기준

- 작성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안전행정부예규 제437호 2012. 12. 24.)
- 재료비, 노무비 및 산출경비 산정기준
 - 노 무 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시중노임단가 2013년 상반기 단가 적용
 - 재 료 비 : 조달청 가격정보 및 시중거래조사가격
 - 중기경비 : 2013년도 건설공사 표준품셈

○○○○생각대로 조성사업(2단계)

□ 사업개요

○ 위 치 : ○○대로 ○○길 일원

○ 개 요 : 생각대로 조성 : B = 6~15m, L = 1,240m, 플랜터 설치 80EA

□ 심사결과

(단위: 천원)

구 분	요청금액	심사금액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2,289,692	1,862,263	△427,429	△18.67%
토목부문	2,234,535	1,781,917	△452,618	△20.26%
조경부문	55,157	80,346	25,189	45.67%

□ 심사내용

[중기기초단가적용]

- 환 율 : 1,071원/\$ ⇒ 1,138.3원/\$
- 휘발유 : 1,808원/ℓ ⇒ 1,784원/ℓ
- 경 유 : 1,630원/ℓ ⇒ 1,580원/ℓ
- 중 유 : 900원/ℓ ⇒ 860원/ℓ

[현장여건에 맞는 수량 및 단가산출]

① 토 공

- 포장깨기중 폐기물 들어내기 품 제외 - (폐기물상차 품 별도계상)
- 현장 여건을 감안한 적용 장비 규격 및 효율
 - 백호(0.4m³) ⇒ 백호(0.7m³)
 - 구조물 헐기(30cm 미만) 3.3m³/hr ⇒ 5.9m³/hr

② 배 수 공

- L형 측구 설치품중 합판거푸집 적용 기준 변경
- 합판거푸집(4회) ⇒ 합판거푸집(6회)

③ 포 장 공

- 화강판석 포장 품에 대한 조정
- 석재판 붙임(건설공사표준품셈 9-1)
⇒ 석재판 포장(원가분석 자문회의 의견 반영) 할증 : 15% 적용
- 콘크리트 포장 절단 일 시공량 조정
- 1차로 350m/일 ⇒ 2차로 600m/일
- 레미콘 타설(무근 - 진동기 제외) 물량 중 콘크리트포장 물량은 별도 계상
- 레미콘타설(무근 진동기) 1,153.7m³
⇒ 레미콘타설(무근 진동기) 227.7m³ + 콘크리트포장(인력) 926m³

④ 부 대 공

- 품질시험비 부가가치세 중복계상에 따른 단가 조정

⑤ 사급자재대

⑥ 조정공사

- 보도내 차량 진입방지 및 주정차 예방을 위한 플랜트 추가 설치
: 플랜트(1540*700*580)설치 : 80개 ⇒ 120개

[관급자재대 수량 조정]

- 플랜트(화분 1540×700×580) : 80개 ⇒ 120개 ⇒ 86개

[원가계산서 재작성 등]

- 직접공사비 조정에 따른 제경비 재산출 등
- 2013년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기준 변경에 따른 계수 조정
·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 9.6% ⇒ 직접노무비 × 10.0%

□ 기타사항

- 공사 시공 전에 인도 및 차도의 포장두께가 적정한지 포장 구조설계법에 의한 포장 전체의 두께를 재검토하여 과다 시공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 또한 화강판석 포장의 문제점 및 포장파손의 원인 [시공방법, 포장두께, 자재 품질(판석, 몰탈, 콘크리트 내구성)] 등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공사 준공 후 화강판석 포장이 파손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준

- 작성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안전행정부 예규 제2호 2013. 3. 26.)
- 재료비, 노무비 및 산출경비 산정기준
 - 노 무 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시중노임단가 2013년 상반기 단가 적용
 - 재 료 비 : 조달청 가격정보 및 시중거래조사가격
 - 중기경비 : 2013년도 건설공사 표준품셈

2013년 ○○보전공사

☐ 사업개요

- 위 치 : ○○군 ○○면 ○○리 산○○번지 외 1개소
- 개 요 : ○○ ○○지구 : 골막이 1개소, 기슭막이 L=68m
 ○○ ○○지구 : 보막이 1개소, 기슭막이 L=549m

☐ 심사결과

(단위: 천원)

구 분	요청금액	심사금액	증 감 액	증감률
토목부문	351,193	285,504	△65,689	△18.70%

☐ 심사내용

[중기기초단가적용]

- 환 율 : 1,071.1원/\$ ⇒ 1,105원/\$
- 휘발유 : 1,729원/ℓ ⇒ 1,784원/ℓ
- 경 유 : 1,580원/ℓ · 중 유 : 1,580원/ℓ

[현장여건에 맞는 수량 및 단가산출]

〈공통사항〉

- ① 돌쌓기 구조도(기초, 뒷채움 등)를 표준품셈 및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국토해양부)에 따라 기초레미콘량 및 뒷채움 자갈량 조정

〈○○○○지구〉

- ② No.21 설치예정인 보막이위치를 사면이 암반으로 되어 있어 No.22지점으로 이동하고 보막이측벽형성부분은 공제함
- ③ 현장에서 발생하는 야면석 발생을 재조사후 현장채집 5% 반영

- ④ 기슭막이 시설위치 중 기초바닥이 암반으로 된 곳은 기초 없이 시공 반영
 • No.11~No.12(우안) 20m, No.16~No.18(우안)40m, No.18+10~No.19(우안) 10m
- ⑤ 기슭막이 뒷채움 막자갈은 현장채집 10% 반영
- ⑥ 바닥막이설치 시 기초바닥이 암반으로 되어있어 계상의 안정이 가능한 구간은 설치 제외
 • No.12 1개소, No.16 1개소, No.17 1개소
- ※ ①, ②, ③, ④, ⑤, ⑥ 조정에 따른 토공, 기슭막이공, 기타공, 운반공 및 자재대 항목 조정

<○○ ○○지구>

○ 기슭막이공 조정

- 돌쌓기 구조 조정에 따른 기초레미콘크기 및 뒷채움자갈량 조정
 - 레미콘타설 $15.5\text{m}^3 \Rightarrow 12.4\text{m}^3$, 합판거푸집 $62\text{m}^2 \Rightarrow 40.92\text{m}^2$
 - 막자갈 뒷채움 $14.88\text{m}^3 \Rightarrow 22.32\text{m}^3$

<○○ ○○지구>

○ 토공 조정

- 돌쌓기 구조 조정에 따른 토공량 조정
 - 토사절취 $1,336\text{m}^3 \Rightarrow 1,214\text{m}^3$, 암절취 $333\text{m}^3 \Rightarrow 266\text{m}^3$
 - 구조물 되메우기 $317\text{m}^3 \Rightarrow 211\text{m}^3$, 잔토처리(현장내) $226\text{m}^3 \Rightarrow 160\text{m}^3$

○ 기슭막이공 조정

- 기슭막이의 위치이동으로 인한 규모 조정($H=1.5\text{m}$, $L=66\text{m} \Rightarrow 93\text{m}$)
 - 레미콘타설 $16.5\text{m}^3 \Rightarrow 18.6\text{m}^3$, 합판거푸집 $66\text{m}^2 \Rightarrow 61.38\text{m}^2$
 - 야면석 켄쌓기 $103.62\text{m}^3 \Rightarrow 146.01\text{m}^3$, 막자갈 뒷채움 $27.72\text{m}^3 \Rightarrow 41.85\text{m}^3$
- 현장여건상 불필요한 기슭막이구간 수량 조정
 - 기슭막이($H=2.1\text{m}$, $L=483\text{m}$, 기초有)
 - $\Rightarrow$ 기슭막이($H=2.1\text{m}$, $L=332\text{m}$, 기초有)+기슭막이($H=2.1\text{m}$, $L=70\text{m}$, 기초無)
 - 레미콘타설 $248.95\text{m}^3 \Rightarrow 66.4\text{m}^3$, 야면석 켄쌓기 $1,099.37\text{m}^3 \Rightarrow 880.38\text{m}^3$
 - 고임돌채집 $120.47\text{m}^3 \Rightarrow 96.48\text{m}^3$, 야면석 현장채집 44.02m^3 반영
- 바닥막이1($H=1.0\text{m}$, $B=7\text{m}$)의 수량 조정(5개소 $\Rightarrow$ 4개소)
 - 레미콘타설 $128.2\text{m}^3 \Rightarrow 102.56\text{m}^3$, 합판거푸집 $92.5\text{m}^2 \Rightarrow 74\text{m}^2$

○ 기타공 조정

- 때붙임 면적 조정 $1,753\text{m}^2 \Rightarrow 1,618\text{m}^2$

○ 운반공 조정

- 시멘트운반 1,856대 $\Rightarrow$ 1,667대
- 야면석운반 1,357톤 $\Rightarrow$ 1,151톤

○ 자재대 조정

- 시멘트 수량 조정 1,856대 $\Rightarrow$ 1,667대
- 야면석 수량 조정 1,357톤 $\Rightarrow$ 1,151톤
- 모래 수량 조정 $126\text{m}^3 \Rightarrow 113\text{m}^3$
- 막자갈 수량 조정 $537\text{m}^3 \Rightarrow 308\text{m}^3$
- 잔디 수량 조정 $818\text{m}^2 \Rightarrow 770\text{m}^2$

[관급자재대 수량 조정]

- 레미콘(25-16-80mm) $368\text{m}^3 \Rightarrow 270\text{m}^3$

[원가계산서 재작성 등]

- 직접공사비 조정에 따른 제경비 재산출 등
- 공사비 재산출로 인하여 추정금액이 3억원 미만이므로 퇴직공제부금비 제외

☐ 적용기준

- 작성기준 : 작성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안전행정부예규 제437호 2012. 12. 24.)
- 재료비, 노무비 및 산출경비 산정기준
 - 노 무 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시중노임단가 2013년 상반기 단가 적용
 - 재 료 비 : 조달청 가격정보 및 시중거래조사가격
 - 중기경비 : 2013년도 건설공사 표준품셈

2. 건축부문

○○동 ○○문화회관 및 ○○문학관 조성공사

☐ 사업개요

- 위 치 : 대구 ○○구 ○○동 내
- 개 요 : 보수 및 보강공사 각 1식

☐ 심사결과

(단위: 천원)

구 분	요청금액	심사금액	증 감 액	증감률
건축부문	544,631	489,405	△55,226	△ 10.14%

☐ 심사내용

- 슬라브 보강공사
 - 탄소섬유 시트 붙이기 견적단가 조정
- 슬라브 철골보강 공사
 - HILTI HVU-HAS,철골제작 설치비,H-빔 보강공사등 노무비 변경적용 (2013년 상반기단가)
- 기둥보강 공사
 - PL-9 철판 보강공사 노무비 변경(2013년 상반기단가)
- 보 보강공사
 - 탄소섬유시트, 탄소섬유 보강판 붙이기 견적단가 조정
- 내진벽체 설치공사
 - 철근배근, 유로폼, 콘크리트 타설, 신구콘크리트 접착제등 노무비 변경적용 (2013년 상반기단가)
- 보 천공부위 보강공사
 - 탄소섬유시트 붙이기 견적단가 조정

□ 적용기준

- 작성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안전행정부예규 제2호 2013.03.26)
- 산정기준
 - 노 무 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2013년도 시중노임단가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
 - 재 료 비 : 조달청 가격정보 및 시중거래조사가격

○○○회관 보수 · 보강공사

☐ 사업개요

- 위 치 : ○○구 ○○동 ○○○○번지
- 개 요 : 보수 및 보강공사 각1식

☐ 심사결과

(단위: 천원)

구 분	요청금액	심사금액	증 감 액	증감률
건축부문	1,149,000	1,092,418	△56,582	△4.92%

☐ 심사내용

- 가설공사
 - 강관비계다리/슬로프식(3개월)삭제 및 건축물 현장정리, 먹메김등
존치기간 및 설치면적 재조정
- 토공사 및 지정공사/ 철근콘크리트 공사
 - 모래갈기 수량, 레미콘, 철근등 가공 및 수량감소
- 석공사
 - 화강석 붙임 습식물갈기, 통석수량 산출 감소
- 타일공사
 - 타일줄눈 보수, 수영장 바닥 타일청소, 외부 벽타일 청소공정 삭제
 - 타일 붙이기 공법 변경 압착 ⇒ 떠붙임으로 변경
- 관급공사
 - AL 창호 사급 ⇒ 관급 변경으로 변경

□ 적용기준

- 작성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안전행정부예규 제2호 2013.03.26)
- 산정기준
 - 노 무 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2013년도 시중노임단가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
 - 재 료 비 : 조달청 가격정보 및 시중거래조사가격

○○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

☐ 사업개요

- 위 치 : ○○군 ○○동 ○○○○번지 외 ○필지
- 개 요 : 신축공사 1식

☐ 심사결과

(단위: 천원)

구 분	요청금액	심사금액	증 감 액	증감률
건축부문	7,532,956	7,254,281	△278,675	△3.70%

☐ 심사내용

- 가설공사
 - 내부수평 비계 ⇒ 조립식 말비계로 변경
 - 현장정리비 단가조정
- 토공사
 - 파일 타격공법인 오거천공 ⇒ 유압식 직타 공법으로 변경
 - 장비운반비 및 소운반비 감소
- 철근콘크리트 공사
 - 이형철근 재료비 적용단가 변경
 - 거푸집/거친마감(0-7m 이하)적용단가 변경
- 철골공사
 - 내화페인트 ⇒ 내화피복재로 변경

- 타일공사
 - 타일 떠붙이기 공법 노무비 단가조정
- 목공사
 - 목재, 무대 마루틀 설치 및 무대계단 설치와 고무안전 리브등 단가 조정
- 금속공사
 - 지붕패널 설치공사 및 AL 복합패널공사 적용단가 조정
- 도급자-관급
 - 플로링 보드, AL창호, 신발장, 라커룸 조정

□ 적용기준

- 작성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안전행정부예규 제437호 2012.12.24)
- 산정기준
 - 노 무 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2013년도 시중노임단가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
 - 재 료 비 : 조달청 가격정보 및 시중거래조사가격

○○○호선 경관개선공사

☐ 사업개요

- 위 치 : ○○구 ○○동 ○○○○번지 외 ○필지
- 개 요 : 신축공사 1식

☐ 심사결과

(단위: 천원)

구 분	요청금액	심사금액	증 감 액	증감률
건축부문	279,466	213,840	△65,626	△23.48%

☐ 심사내용

- 지붕공사
 - 슬레이트 위 도장공사 ⇒ 칼라강판 지붕잇기(727㎡) 변경
- 금속공사
 - 차폐시설(AL) ⇒ 합성목재 루버 재료로 변경
- 도장공사
 - 기존바닥 청소 및 바탕만들기 수량(540㎡)감소
- 기타공사
 - 인조잔디 깔기 마감을 우레탄 마감으로 변경

☐ 적용기준

- 작성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안전행정부예규 제437호 2012.12.24)
- 산정기준
 - 노 무 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2013년도 시중노임단가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
 - 재 료 비 : 조달청 가격정보 및 시중거래조사가격

○○생활문화가로 확장공사 지장물 철거공사

☐ 사업개요

- 위 치 : ○구 ○○동 ○○○○번지 외 ○필지
- 개 요 : 지장물 철거공사 및 기타공사 1식

☐ 심사결과

(단위: 천원)

구 분	요청금액	심사금액	증 감 액	증감률
건축부문	231,484	197,505	△33,979	△ 14.68%

☐ 심사내용

- 환경보전비
 - 환경오염 방지시설 소요비용 2중계상 으로 조정
- 하도급 지급수수료 및 건설기계 대여 지급보증수수료
 - 공사원가 계산서 작성준칙에 따라 내역누락 반영
- 부대공사
 - 강관비계 설치면적($5,350\text{m}^2 \Rightarrow 4,012\text{m}^2$)감소로 수량조정

☐ 적용기준

- 작성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안전행정부예규 제437호 2012.12.24)
- 산정기준
 - 노 무 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2013년도 시중노임단가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
 - 재 료 비 : 조달청 가격정보 및 시중거래조사가격

3. 기계설비 부문

○○시장 소방설비 공사

☐ 사업개요

- 위 치 : ○○구 ○○시장 내
- 개 요 : 소방설비공사 1식

☐ 심사결과

(단위: 천원)

구 분	요청금액	심사금액	증 감 액	증감률
소방부문	397,828	307,142	△90,686	△22.80%

☐ 심사내용

- 노무공량은 2013년도 개정된 품셈을 기준으로 내역에 반영
- 노무공량 오류 수정 등
 -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배관공 0.084인 + 보통인부 0.063인 → 배관공 0.19인
 - 천장점검구 설치(60개)는 일위대가와 중복공량 삭감 : 덕트공 30인 → 0인
- 텍스 철거 후 재설치 공사 수량 및 공량적용 오류수정
 - 텍스 철거·설치 수량 : 2,636㎡ → 1,183㎡
 - 건축목공0.08인+ 보통인부0.08인→ 건축목공0.015인+보통인부0.03인

☐ 적용기준

- 작성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안전행정부예규 제2호 2013.03.26)
- 산정기준
 - 노 무 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2013년도 시중노임단가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
 - 재 료 비 : 조달청 가격정보 및 시중거래조사가격

○○구 노인복지관 건립 기계설비 공사

☐ 사업개요

- 위 치 : ○○구 ○○동 ○○○○번지
- 개 요 : 기계설비공사 1식

☐ 심사결과

(단위: 천원)

구 분	요청금액	심사금액	증 감 액	증감률
기계부문	369,481	312,331	△57,150	△15.47%

☐ 심사내용

- 유지관리 편의성 등을 고려한 지역 업체의 생산제품 반영 등
 - 전열교환기는 지역 업체 생산제품을 반영하고, 엘리베이터는 중소기업 (조달우수)제품을 사급에서 관급으로 반영
- 품셈기준 및 현장 여건을 고려한 내역반영 등
 - 주방기구설치는 금회공사에서 제외하고 추후 건축 완료 후 별도발주
 - 스테인리스 덕트설치 일위대가 적용자재 변경
 - 환풍 재질변경: SS41 → STS304
 - 녹막이페인트칠 삭감: 0.3m² → 0m²
- 일위대가, 수량 및 공량산출 등 오류 수정
 - 옥외배관공사 수량 오류 수정
 - 터파기 : 28.8m³ → 14.4m³
 - 되 메우기 : 24m³ → 9.6m³

- 배기 팬(천장형) 공량오류 수정: 기계설비공: 0.4인 → 0.13인
- 소제용 수채 공량오류 수정: 위생공 1.81인→ 0.29인, 보통인부 0.37인→ 0.05인
- 화장경 설치 공량오류 수정: 위생공: 0.518인 → 0.305인

□ 적용기준

- 작성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안전행정부예규 제2호 2013.03.26)
- 산정기준
 - 노 무 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2013년도 시중노임단가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
 - 재 료 비 : 조달청 가격정보 및 시중거래조사가격

○○○시장 현대화사업 기계설비 공사

□ 사업개요

- 위 치 : ○○구 ○○동 ○○○○번지 외 ○필지
- 개 요 : 기계설비공사 1식

□ 심사결과

(단위: 천원)

구 분	요청금액	심사금액	증 감 액	증감률
기계부문	269,839	230,123	△39,716	△14.72%

□ 심사내용

- 유지관리 편의성 등을 고려한 지역 업체의 생산제품 반영
: 엘리베이터(사급 → 관급)
- 품셈기준 및 현장 여건을 고려한 장비설치 등
 - 지하주차장은 관련법 규정에 급·배기fan이 불필요하나 주차장내 최소 환기를 위해 배기fan만 설치하고, 급기fan은 내역에서 제외하여 자연급기로 반영
 - 상가, 화장실 등 옥내용 급수계량기함은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벽체매입형으로 반영
 - 노임공량 및 노임단가는 2013년도 개정품셈 및 상반기 노임단가를 반영
- 수량 및 공량산출 등 오류 수정
 - 가스배관공사 용접개소 수정
 - D80 강관 : 62개소 → 46개소
 - D50 강관 : 26개소 → 25개소

- D20 강관 : 114개소 → 112개소
- 작업부산물 : 스텐 54.4kg → 166kg, 고철 24kg → 134kg

□ 적용기준

- 작성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안전행정부예규 제437호 2012.12.24)
- 산정기준
 - 노 무 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2013년도 시중노임단가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
 - 재 료 비 : 조달청 가격정보 및 시중거래조사가격

○○구 ○○권 도서관 기계설비 공사

☐ 사업개요

○ 위 치 : ○○구 ○○동 ○○○○번지

○ 개 요 : 기계설비공사 1식

☐ 심사결과

(단위: 천원)

구 분	요청금액	심사금액	증 감 액	증감률
기계부문	577,362	516,405	△60,957	△10.56%

☐ 심사내용

- 품셈기준 및 현장 여건을 고려한 내역반영 등
 - 열람실 기류순환 팬 6대 삭감하여 기계환기 방식에서 자연환기 방식으로 변경
 - 기류순환으로 냉난방효율 개선을 위해 천장형 실내기 7대를 삭감하고, 스탠드형 6대 추가
 - 배기 덕트는 아연도철판+현장보온을 알루미늄복합덕트로 재질을 변경하고 이물질 방지를 위해 토출구에 동망 추가 및 에어벤트 배관에 동망 추가
 - 펌프가대와 E/V실 배수펌프는 삭감하고, 커버는 스틸그레이팅으로 변경하여 건축에 반영
 - 화장실 세면대는 인조대리석을 마블재질로 변경
 - 자연환기가 가능한 1층 열람실(2대)과 4층 사무실(1대)의 전열교환기는 수량 조정(3대 삭감)

- 강관슬리브는 현장제작품을 기성품으로 변경
- 수량 및 공량산출 오류수정 등
 - 옥외위생배관: 터파기 $90.6\text{m}^3 \rightarrow 45.3\text{m}^3$, 되메우기 $60.4\text{m}^3 \rightarrow 23.56\text{m}^3$
- 원가계산 제비율 조정[2013.11.26.일 공고]
 - 간접노무비: 직·노의 8.4% $\rightarrow$ 8.0%
 - 고용보험료: 노무비의 0.79% $\rightarrow$ 노무비의 0.87%

□ 적용기준

- 작성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안전행정부예규 제34호 2013.11.20)
- 산정기준
 - 노 무 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2013년도 시중노임단가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
 - 재 료 비 : 조달청 가격정보 및 시중거래조사가격

○○○체육센터 건립공사(기계설비)

☐ 사업개요

○ 위 치 : ○○구 ○○동 ○○○○번지

○ 개 요 : 기계설비공사 1식

☐ 심사결과

(단위: 천원)

구 분	요청금액	심사금액	증 감 액	증감률
기계부문	3,253,415	2,925,578	△327,837	△10.08%

☐ 심사내용

- 유지관리 편의성과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고려한 내역반영 등
 - 수영장 수처리설비는 다충복합여과기를 조달우수 제품으로 등록된 가압필터 여과기로 반영하고, 사급을 관급으로 변경
 - 엘리베이터는 지역 업체 생산제품을 반영하고 사급을 관급으로 변경
 - 우수처리시설은 섬유사여과기 방식에서 국내개발기술로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유지관리 비용이 적게 드는 원심식 여과방식으로 변경
 - 오수처리시설은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타 공법과 경제성, 시공성 등을 비교·검토하여 기존방식을 변경하였고, 방류수질에 대한 성능보증 등을 고려하여 별도발주 권장
 - 자동제어공사는 조달우수제품 및 G.S 인증제품으로 반영
- 품셈기준 및 현장 여건을 고려한 내역반영 등
 - RDF시설이 본 건물 준공 이후임을 감안하여 RDF 공급열원 인입배관공사

내역은 본 공사에서 제외

- 스테인리스 덕트는 주재료에 맞게 환봉 재질 변경
 - 환봉 재질 변경: SS41 → STS304, · 녹막이페인트 칠: 삭제
- 일위대가, 수량 및 공량산출 등 오류 수정
 - 인라인 팬 공량수정: 송풍기 공량 → 벽걸이 배기 팬 공량 적용
 - 신축이음(40A)공량수정: 배관공0.811인+보통인부0.164인 → 배0.459인+보0.244인
 - 신축이음(65A)공량수정: 배관공1.055인+보통인부0.164인 → 배0.857인+보0.385인
 - 모래부설 일위대가 수정: 공구손료 3% → 0%

□ 적용기준

- 작성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안전행정부예규 제21호 2013.06.19)
- 산정기준
 - 노 무 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2013년도 시중노임단가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
 - 재 료 비 : 조달청 가격정보 및 시중거래조사가격

4. 전기부문

○○○시장 현대화사업 전기공사

□ 사업개요

- 위 치 : ○○군 ○○동 ○○번지
- 개 요 : 건물 신축 전기공사 1식

□ 심사결과

(단위: 천원)

구 분	요청금액	심사금액	증 감 액	증감률
전기부문	395,289	370,053	△25,236	△6.38%

□ 심사내용

-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내역 조정
 - 상가 전등설비 등기구(방습밀폐형 => 개방형) 형태 변경
 - ☞ 시장 상가의 유지관리, 효율성, 경제성을 검토 후 등기구 형태 변경
 - 막 구조물 천정 전선관 배관(PVC, 플렉시블) 재질 변경
 - ☞ 천정 구조물에 전선관 배관 시 시공 및 유지관리 편리성 검토
 - 수배전반 설치 시 소운반품 삭제
 - ☞ 전기설비 표준품셈에 배전반 설치 시 소운반품 포함됨
 - 접지첨가제(접지저항 저감제) 10KG : 3포 => 1포 조정
- 설계내역에 맞는 공량산출 조정
 - 접지용 비닐절연전선(F-GV) 16mm² : 내선전공 0.105인 => 0.009인[전품 3-38]
 - 강제전선관(아연도 104 mm 노출) :내선전공 0.71인 => 배전전공 0.052인
보통인부 0.104인 [전품 4-29]

□ 적용기준

- 작성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안전행정부예규 제437호 2012.12.24)
- 재료비, 노무비 및 산출경비 산정기준
 - 노 무 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시중노임단가
 - 재 료 비: 조달청 가격정보 및 시중거래조사가격
 - 적용품셈: 2013년도 전기공사 표준품셈

○○○단지 녹색○○가로 조성 전기공사

□ 사업개요

- 위 치 : ○○ ○○○○단지내 일원
- 개 요 : 가로등 설치(LED) ○본, 기타 등기구 설치 ○개, 제어기 ○면 설치

□ 심사결과

(단위: 천원)

구 분	요청금액	심사금액	증 감 액	증감률
전기부문	252,810	224,265	△28,545	△11.29%

□ 심사내용

- 현장여건에 맞는 물량 및 자재사양 조정
 - 화강석 재사용구간 가로등 배관, 배선 재사용으로 물량 감소
 - 가로등점멸기(양방향 8회로=> 양방향 6회로) => 관급구매로 변경
 ☞ 5,800천원(양방향 8회로) => 4,640천원(양방향 6회로)
- 설계내역에 맞는 일위대가 조정
 - 가로등, 열주등 앵카볼트 설치 : 내선전공 0.23인 => 0.12인 [전품 5-29-2]
 - 가로등 다기능접속함 설치 : 내선전공 0.133인 => 0.12인[전품 5-3]
 - 문주등(LED 12W) 설치 : 내선전공 0.47인 => 0.385인(0.35*110%)[전품5-26]
 - 라인매입등(6W), 원형지중등(3W) : 내선전공 0.155인 적용[전품 5-25-2]
- 시공 자재단가 금액조정
 - 가로등주 표찰(STS 밴드식) : 20,000원 => 10,000원
 - 고재단가(KG당) : 동(4,650원 => 6,500원), 철(340원 => 410원)

□ 적용기준

- 작성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안전행정부예규 제2호, 2013. 3. 26.)
- 재료비, 노무비 및 산출경비 산정기준
 - 노 무 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시중노임단가
 - 재 료 비: 조달청 가격정보 및 시중거래조사가격
 - 적용품셈: 2013년도 전기공사 표준품셈

○○로.○○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가로등 설치공사

□ 사업개요

- 위 치 : ○○구 ○○동 ○○로 및 ○○관로 일원
- 개 요 : 전기설비 1식(가로등 설치, 열주등, 기타)

□ 심사결과

(단위: 천원)

구 분	요청금액	심사금액	증 감 액	증감률
전기부문	346,014	313,463	△32,551	△9.41%

□ 심사내용

- 현장여건에 맞는 자재 물량 및 시공방법 조정
 - 가로등 배치 중복구간 평균 노면 휘도에 맞게 수량 조정
 - 횡단보도 LED 발광장치 제어함 가로등주에 부착(지주대 삭제)
 - 가로등 기초부 경계석 부분과 충분히 이격(1M이상) 설치
- 설계내역에 맞는 일위대가 조정
 - 가로등 다기능 접속함(ELB 내장) : 내선전공 0.133인 => 0.12인[전5-3]
 - LED 테마열주, 감속유도장치 설치 : 설치장소도로 공량 삭제

□ 적용기준

- 작성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안전행정부예규 제2호, 2013. 3. 26.)
- 재료비, 노무비 및 산출경비 산정기준
 - 노 무 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시중노임단가
 - 재 료 비: 조달청 가격정보 및 시중거래조사가격
 - 적용품셈: 2013년도 전기공사 표준품셈

○○천 지방하천정비(○○공원내) 전기공사

☐ 사업개요

- 위 치 : ○○구 ○○동 ○○공원내 일원
- 개 요 : 전력인입 및 간선공사, 동력제어설비, 경관조명설비 1식

☐ 심사결과

(단위: 천원)

구 분	요청금액	심사금액	증 감 액	증감률
전기부문	888,510	613,560	△274,950	△30.95%

☐ 심사내용

- 현장여건에 맞는 자재 및 물량조정
 - 계류 용수 공급용 송수관로에 설치하는 제수밸브(드레인)용 전동밸브는 실효성이 적고 경제성 및 유지관리 등을 감안하여 수동밸브 설치로 변경함에 따라 동력제어설비(전원공급용 간선, 배관 등 삭제) 설계내역 수정
 - 보행로 데크에 설치하는 태양광 LED 블라드등을 태양광 LED 반디등으로 변경
 - ☞ 보행자의 손에 접촉하기 쉬워 전지의 파손 및 유지관리 애로 보완
 - 보행로 데크 진출입로 부근에 보행로 조명확보를 위한 공원등 추가 설치(2분)
 - ☞ 공원등 2분 추가(STS 2M CDM 70W)
 - 노후된 선수숙소 건물 지붕에 설치하는 LED바는 경관조명 부적합 및 건물 노후로 역효과 우려되므로 설치 제외
 - 조명제어함 및 POWER POST함은 제조물품으로 분류하여 관급 구매로 변경

○ 설계내역에 맞는 일위대가 조정

- 네트워크 카메라(스피드 돔) 설치(카메라 설치) : 통신관련산업기사 0.5인,
통신설비공 0.3인 => 특별인부 0.32인, 통신설비공 0.2인[통품 5-3-2]

□ 적용기준

- 작성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안전행정부예규 제2호, 2013. 3. 26.)
- 재료비, 노무비 및 산출경비 산정기준
 - 노 무 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시중노임단가
 - 재 료 비: 조달청 가격정보 및 시중거래조사가격
 - 적용품셈: 2013년도 전기공사 표준품셈

○○○단지외 2개 단지 대기전력차단장치 전기공사

□ 사업개요

- 위 치 : ○○단지외 2개 단지(○○, ○○ 비둘기, ○○단지)
- 개 요 : 대기전력차단장치 6,546세대 설치

□ 심사결과

(단위: 천원)

구 분	요청금액	심사금액	증 감 액	증감률
전기부문	463,276	424,226	△39,050	△8.43%

□ 심사내용

- 현장여건에 맞는 자재 및 물량조정
 - 대기전력차단장치 설치후 사용 편의를 위한 멀티콘센트 지급은 전열기구의 과부하 등으로 인한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는바, 차후 별도 구매하여 관리소에 보관하고 꼭 필요한 세대에 한하여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지급하도록 조치하고 본 설계내역서의 물량은 삭제함.
- 설계내역에 맞는 일위대가 조정
 - 대기전력차단장치 설치(250V 10A), 콘센트 철거(2구 250V 15A)
 - 단순 반복적인 비교적 쉬운 공정률 90% 적용[전품 5-23]
- 공사원가 제비율 조정
 -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의 9.5% => 직접노무비의 8.9%
 - 안전관리비 : (재료비+노무비)의 2.48% => (재료비+노무비)의 1.24%

□ 적용기준

- 작성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안전행정부예규 제2호, 2013. 3. 26.)
- 재료비, 노무비 및 산출경비 산정기준
 - 노 무 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시중노임단가
 - 재 료 비: 조달청 가격정보 및 시중거래조사가격
 - 적용품셈: 2013년도 전기공사 표준품셈

5. 정보통신 부문

○○ ○○○폴리스 연결도로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 사업개요

- 위 치 : ○○ ○○○폴리스 연결(○○IC~○○○폴리스)도로
- 개 요 : 교통신호제어기 설치 4개소

□ 심사결과

(단위: 천원)

구 분	요청금액	심사금액	증 감 액	증감률
정보통신부문	251,757	232,672	△19,085	△7.58%

□ 심사내용

- 자재 물량 및 단가조정
 - 서지흡수기(낙뢰보호용) 추가 4개
 - 고철(철) kg당 : 290원 => 430원
- 설계내역에 맞는 공량산출 조정
 - 제2호표 교통신호기 철거(설치노무비의 50%) : 시험비(H/W, S/W) 삭제 적용
 - 제8 ~ 10호표 전선관 설치(PE36mm, PE54mm, PE100mm) : 전품 4-29 적용
 - 제25~27표, 제44호표 : 폐기물 처리, 적사 토공부문에 포함 삭제
 - 제39표 분전반 철거 : 설치품의 30% 적용 [전품 5-21]
 - 제41표 강제전선관 설치(아연도백관 28mm) : 배전전공 0.035인 => 0.027인, 보통인부 0.07인 => 0.054인 [전품 4-29]

□ 적용기준

- 작성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안전행정부예규 제404호 2012.03.22)
- 재료비, 노무비 및 산출경비 산정기준
 - 노 무 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시중노임단가
 - 재 료 비: 조달청 가격정보 및 시중거래조사가격
 - 적용품셈: 2013도 전기, 신호설비 표준품셈 적용

○○도시○○ 이동○○시설[4차] 건설공사[통신분야]

□ 사업개요

- 위 치 : 도시○○ ○○○ 1,2호선 구간(○○개역)
- 개 요 : E/S 44대, E/L 4대, 캐노피 43개소 설치에 따른 통신설비공사

□ 심사결과

(단위: 천원)

구 분	요청금액	심사금액	증 감 액	증감률
정보통신부문	1,109,980	1,013,490	△96,490	△8.69%

□ 심사내용

- 통신관련 장비 자재단가 조정
 - CCTV LENS(5~50mm) 개당 : 120,000원 => 62,700원
 - CCTV CAMERA(돛형) 개당 : 325,000원 => 217,800원
 - CCTV CAMERA(반달돛형) 개당 : 540,000원 => 236,500원
 - CCTV CAMERA(고정형) 개당 : 480,000원 => 330,000원
 - 하우징(실외형) 개당 : 240,000원 => 115,500원
 - Video Distribution Amp(1IN 3OUT/10CH) : 450,000원 => 165,000원
 - DVR(16CH HDD-1TB) : 2,600,000원 => 2,255,000원
 - 영상분할기(2/4분할) : 370,000원 => 154,000원
 - LED MONITOR(19인치) : 580,000원 => 401,500원
 - 핸드홀 수공1호(950*450*700) : 120,000원 => 111,363원
- 설계내역에 맞는 일위대가 조정
 - 통신관련 장비, 핸드홀(수공), 음성유도기 설치 및 부산물 철거
 - ☞ 2013년 전기설비 표준품셈 1-22(공구손료) 미적용 삭제
 - 복합통신 및 CATV 안테나 이설(기초신설 0.6*0.6*1.2h)
 - 앙카볼트 설치품 조정 : 통신내선공 0.92인 => 0.23인

- 핸드홀(수공1호) 철거 : 철거품의 미장공 삭제
- 접지봉 신설(¢18*2400*3EA) : 통신외선공 0.55인 => 0.45인(접속포함)

□ 적용기준

- 작성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안전행정부예규 제404호 2012.03.22)
- 재료비, 노무비 및 산출경비 산정기준
 - 노 무 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시중노임단가
 - 재 료 비: 조달청 가격정보 및 시중거래조사가격
 - 적용품셈: 2013년도 전기설비, 정보통신설비공사 표준품셈

용역 분야

1. 기술용역
2. 일반용역

용역분야 계약심사

가. 용역의 분류

- 1) 「지방계약법」상의 용역이라 함은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임차·수리 등을 제외한 주로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 2) 일반적으로 학술연구용역, 건설기술용역, 그 외 일반용역으로 분류

나. 용역의 분류

1) 학술연구용역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고,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4장 제4절에 근거하여 원가계산서 작성

2) 건설기술용역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설계·감리·사업관리·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 및 엔지니어링 활동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고, 건설공사 감리대가 기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측량대가의 기준 등을 근거로 하여 원가계산서 작성

3) 일반용역

학술연구용역과 건설기술용역을 제외한 모든 용역을 말하고,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4장 제5절에 근거하여 원가계산서 작성

다. 관련법령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2)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안전행정부 예규)
- 3) 조달청 표준용역 기준(www.pps.go.kr)
- 4) 건설공사 표준품셈(국토교통부)
- 5) 각종 고시 공고 등 원가산정 공표자료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비(한국건설폐기물 수집운반협회)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 측량대가의 기준(국토지리정보원 고시)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조달청)
-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기준
- 기타 한국건축물유지관리협회, 한국위생관리협회 등

6) 시중노임단가

- 공사부분(대한건설협회 공표자료)
- 제조부분(중소기업중앙회 공표자료)

7) 기타 원가분석에 필요한 자료 등

라. 계약심사의뢰시 구비서류

1) 일반 및 학술연구용역

- 계약심사요청서(사무자동화 서식)
- 원가계산서, 과업이행요청서
- 설계내역서(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포함)
- 인쇄물산출기초조사서(인쇄물이 있는 경우)
- 비목별 기초계산서(학술연구용역에 한함)
- 사유서(일반경쟁입찰이 아닌 수의·제한·지명경쟁입찰 등의 계약방법으로 발주하는 경우)
- 기타 참고자료(방침서 또는 계획서, 견적서, 수의계약사유서 등 심사보조자료)

2) 건설기술용역

- 계약심사요청서(사무자동화 서식)
- 원가계산서, 과업이행요청서
- 설계내역서(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포함)
- 인쇄물산출기초조사서(인쇄물이 있는 경우)
- 기타 참고자료(방침서 또는 계획서, 견적서, 수의계약사유서 등 심사보조자료)

마. 주요 검토사항

1) 거래실례가격을 우선 적용

-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www.pps.go.kr ⇒ 가격정보)
-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전문가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대한건설협회, 한국물가협회, 한국응용통계연구소, 한국물가정보센터, 한국공정가격협회)
-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로부터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거래장표 등 객관적 증빙자료)

2) 거래실례가격을 적용할 수 없을 경우 각 비목 또는 품목별로 원가계산

바. 원가산출 방법 및 기준

학술연구용역

구 분		내 용	산 출 기 준	관 련 근 거
① 인 건 비	책 임 연 구 원	지휘, 감독, 결론도출자(대학부교수 수준)	- 인원*기준단가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 충당금 반영 가능) - 기준단가 : 별첨 참조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4장 제4절
	연 구 원	책임연구보조자 (대학조교수 수준)		
	연 구 보 조 원	통계처리, 번역수행자(대학조교 수준)		
	보 조 원	타자, 계산, 원고정리 수행자		
	소 계			
② 경 비	여 비	국내외 여비(공무원여비규정, 관계 공무원 여비 제외)	인원*단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4장제4절
	유 인 물 비	각종 보고서 작성비(지대포함)	수량*단가	조달청 인쇄기준 요금
	전 산 처 리 비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 등 사용료 및 부대비용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4장제4 절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실험실습에 필요한 비용	"	"
	회 의 비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등 소요 경비(수당 등)	인원*단가	수당은 예산편성기준 참조
	임 차 료	특수실험실습기구, 회의장임차료 등	수량*단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4장 제4 절
	교 통 통 신 비	시내교통비, 전산전화료, 우편료	인원*단가	"
	감 가 상 각 비	실험실습기구,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		법인세법에 의한 계산
	조 사 비 용	현황조사 비용(인건비, 경비 등)		필요한 경우에만 계산
	소 계			
③ 순 원 가			①+②	
④ 일 반 관 리 비		기업의 유지관리활동비로서 순원가에 속하지 않은 영업비용	③의 5% 이내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4장 제4절
⑤ 일반관리비 합산원가			(③+④)	
⑥ 이 윤		영업이익 (광주발전연구원 등 비영리단체 제외)	⑤의 10% 이내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작성요령 제4장제4절
⑦ 이 윤 합 산 원 가			(⑤+⑥)	
⑧ 부 가 가 치 세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면세는 제외	⑦의 10%	
총 용 역 비			(⑦+⑧)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안전행정부 예규)에 의함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용역

구 분		내 용	산 출 기 준	관 련 근 거
① 재 료 비	유류대	경유, 휘발유 등 연료유	수량*단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4장 제5절
	잡품 등	주연료비의 정해진 요율	주연료의 %	"
	소 계			
② 노 무 비	운전기사	운반차량 운전자	인원*단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4장 제5절
	보통인부	상차등 필요시 인부	인원*단가	"
	중기운전자	백호등 중기 운전자	인원*단가	"
	소 계			
③ 경 비	기계경비	기계손료, 감가상각비 등	산출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4장 제5절
	폐기물 처리비	종류별, 성상별 구분 적용	수량*단가	"
	기타 소요경비	기계경비에 포함되지 않은 경비	산출가	"
	소 계			
④순 원 가			(①+②+③)	
⑤일 반 관 리 비		기업의 유지관리 활동비로서 순원가에 속하지 않은 영업비용 (판매비, 광고비, 이자 등 제외)	④의 5%이내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4장 제5절
⑥일반관리비 합산원가			(④+⑤)	
⑦이 윤		영업이익(비영리법인 제외)	(⑥-①)의 10%이내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4장 제5절
⑧이윤합산 원가			(⑥+⑦)	
⑨부가가치세		면세업자는 제외 (부가가치세법 제12조1항)	⑧의 10%	
총 용 역 비			(⑧+⑨)	

※ 필요 항목만 계상

시설물 유지관리(청소, 경비 등) 용역

구 분		내 용	산 출 기 준	관 련 근 거
①재료비	각종 재료	용역수행에 필요한 재료에 한함	- 수량×단가	
	소 계			
②인건비	기본급	직접종사자의 노동력 대가	- 노임단가×월 평균근무일수	근로기준법43조 근로기준법시행령제6조
	제수당	연장근로수당	연장근로와 야간근무(하오 10시~상오6시) 또는 휴일근로자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근로기준법제56조 근로기준법시행령제6조
		휴일근로수당	- 통상임금÷월통상임금산정기준 시간수×연장근로시간×1.5	- 통상임금÷월통상임금산정기준 시간수×휴일근로시간×1.5
		야간근로수당	- 통상임금÷월통상임금산정기준 시간수×야간근로시간×1.5	- 통상임금÷월통상임금산정기준 시간수×야간근로시간×1.5
	연차수당	1년간 8할 이상 개근한자 : 15일/년	- 통상임금÷월통상임금산정기준 시간수×8시간×15일÷12월	근로기준법제60조 근로기준법시행령제6조
	상 여 금		- 통상임금 X400% 이내	지방자치단체원가계산 및 예정가격작성요령4장5절
	퇴직충당금	계속근로연수 1년 :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년	- (기본급+제수당+상여금)년30일분	근로기준법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소 계			
③경비	국민연금		- (기본급+제수당+상여금)× 공시요율	국민연금법 제88조
	건강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법제62조
	산재보험료		- (기본급+제수당+상여금+식대) × 공시요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조
	고용보험료		"	고용보험법제6조
	임금채권보장보험		"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복리후생비	피복비	제복, 작업복 등 구입비	계약목적물 달성을 위해 필요한 항목에 한함
		안전화	안전화 구입비	
		식비지원금	중식비 지원	
		교통비	교통비	
	사업소세	종업원급여총액의0.5/100	- 인건비 × 0.5%	지방세법
	장애인고용부담금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 (상시근로자-적용제외근로자)의 2%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8조
	감가상각비	기계장비의 감가상각비	- (장비금액-잔존액)×내용연수 상각율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소 계			
④순 원 가			(①+②+③)	
⑤일 반 관 리 비		기업의 유지관리 활동비	④의 5%이내	지방자치단체원가계산 및 예정가격작성요령제4장5절
⑥일반관리비 합산원가			(④+⑤)	
⑦이 윤		영업이익(비영리법인 제외)	(⑥-①)의 10%이내	"
⑧이 윤 합 산 원 가			(⑥+⑦)	
⑨부 가 가 치 세		면세업자 제외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⑧의 10%)	부가가치세법제14조
총 용 역 비			(⑧+⑨)	

유물발굴조사 용역

구 분				내 용	산출 기준	관련 근거
순 용 역 원 가	① 노 무 비	직 접 인 건 비	조사단장	- 당해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자의 급료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료 등을 포함) - 주휴수당(근로기준법제55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	인원×단가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기준 제4조
			책임조사원			
			조사원			
			조사보조원			
		보조원				
	소 계					
	② 직 접 경 비		여비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만 인정)	인원×회수×단 가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기준 제5조
			현장운영비	조사 현장을 운영하는 데 직접 소요되는 비용 (인부임, 수송비, 사무실 설치비, 수도광열비, 연료비, 수선비, 임차비, 주재비, 기타 운영비 등)	수량×단가	"
			조사재료비	각종 소모성 발굴용품 등의 구입에 필요한 비용	"	"
			위탁비	외부전문가에게 위탁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	"	"
			회의비	자문회 등 각종 회의비용	"	"
			유물정리비	유물 정리 및 분석작업에 소요되는 비용 (인부임, 정리용품비, 보존처리 약품비, 유물 상자 및 보관대 설치비, 위탁비, 임차료, 자연 과학분석비, 기타 유물정리비 등)	"	" (반드시 계상)
			보고서 간행비	보고서의 작성 및 간행에 소요되는 비용 (인부임, 사진제작비, 인쇄비, 발송비, 전산매 체 제작비, 자료수집비)	"	" (반드시 계상)
		소 계				
	③제경비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경비 (임직원 인건비 및 간접경비 일체)	직접인건비의 120%~130%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기준 제6조
	④학술료			학술연구 및 재투자를 위한 대가로서 학술연 구비·조사요원 교육훈련비 등을 포함하는 것	직접인건비+제 경비 10~30%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기준 제7조
소 계						
⑤총 원 가				①+②+③+④		
⑥부 가 가 치 세				면세업체는 제외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⑤의 10%	
총 용 역 비				⑤+⑥		

※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문화재청고시 제2011-67호 2011. 3. 14)

정보통신 용역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비 목	내 용	산 출 기 준
직접인건비	○ “당해관련 기술자 임금단가*소요인원”으로 계상 ○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조사 공표한 사업별·등급별 임금단가 적용(별표) ○ 공표임금단가에는 급료·제수당·상여금·퇴직 적립금·산재보험금 등 포함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7조(직접인건비) -엔지니어링기술자등급기준 및 자격기준
직 접 경 비	○ 다음의 실비를 조사, 계상 - 여 비 - 특수자료비(특허, 노하우사용료) - 도서인쇄비 및 청사진비 - 측량비 - 시험조사비(토질·재료 등) - 모형제작비 - 자문비 - 위탁비 - 현장운영비(현장보조원 급료 및 운영비)	○ 실비조사 계상
제 경 비	○ 직접 인건비 및 직접경비 이외의 간접비 ○ (직접인건비)*110~120%계상	○ 사업의 난이도에 따라 계상
기 술 료	○ 개발·보유기술 사용 및 기술축적 대가 ○ 조사연구비·기술개발비·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 ○ “(직접인건비+제경비)*20~40%계상	○ 사업의 난이도에 따라 계상
제 세 액	○ 관세·특별소비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해당 세액이 발생된 경우	○ 해당 세율 적용
총 원 가	위 합계 (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기술료+제세액)	
부가가치세	(총원가)*부가가치세율(10%)	○ 부가가치세 면세인 경우는 제외
합 계	(총원가)+(부가가치세)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2-190호, 2012. 8. 8)

소프트웨어사업 구현단계 대가산정

1. 기능점수 방식에 의한 소프트웨어 개발비

절 차	주 요 내 용	산 출 물
1. 사전준비	○ 개발대상 업무와 요구사항을 명확히 정의하고, 개발 규모(기능점수) 산정방법(정통법 또는 간이법)을 결정한다.	개발대상 업무 기능 요구사항 규모산정 방법
2. 개발대상 SW 기능점수 산정	○ 요구사항에 근거하여 개발대상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식별하고, 복잡도를 고려하여 기능점수를 산정한다.	개발대상 SW 기능점수
3. 보정전 개발원가 산정	○ 산정된 기능점수에 기능점수당 단가를 곱하여 보정전 개발원가를 산정한다. - 보정전 개발원가 = 기능점수 × 기능점수당 단가 ※ 기능점수(FP) 방식에 의한 SW개발비 산정 시 기능점수 단가에 '제경비' 및 '기술료'에 상응하는 항목이 반영되어있어 별도로 산정하지 않는다.	보정전 개발원가
4. 보정후 개발원가 산정	○ 소프트웨어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보정요소별로 보정계수를 식별한다. - 보정요소 : 규모보정, 언어보정, 애플리케이션유형보정, 품질 및 특성 보정 ○ 식별된 보정계수에 따라 개발원가를 보정한다. - 개발원가 = 보정전 개발원가 × 보정계수	보정후 개발원가
5. 직접경비 및 이윤 산정	○ 해당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련된 직접경비를 산정한다. ○ 이윤은 개발원가의 25% 이내에서 산정한다.	직접경비 이윤
6.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	○ 소프트웨어 개발비를 산정한다. - SW개발비 = 개발원가 + 직접경비 + 이윤	소프트웨어 개발비

2. 투입공수 방식에 의한 소프트웨어 개발비

절 차	주 요 내 용	산 출 물
1. 사전준비	○ 소프트웨어 개발 정의에 따라 개발대상 업무와 요구사항을 명확히 정의한다.	개발대상 업무요구사항
↓		
2. 개발 공수 계산	○ 소프트웨어 개발업무별 특성을 고려하여 투입인력의 기술자등급을 결정한다. ○ 소프트웨어 개발업무별 특성을 고려하여 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을 결정한다.	등급별 투입공수
↓		
3. 직접인건비 계산	○ 개발업무를 수행할 인력의 직접인건비를 계산한다. - 직접인건비 = 투입인력의 기술자등급별 공수 × 소프트웨어기술자 노임단가	직접인건비
↓		
4. 제경비 및 기술료 계산	○ 개발업무를 수행할 인력의 제경비 및 기술료를 계산한다. - 제경비 계산 = 직접인건비 × 110~120% - 기술료 계산 = (직접인건비 + 제경비) × 20~40%	제경비 기술료
↓		
5. 직접경비 계산	○ 소프트웨어 개발에 실제로 소요되는 직접경비를 산정한다.	직접경비
↓		
6. SW개발비 산정	○ 소프트웨어 개발비를 산정한다. - SW개발비 =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 직접경비	소프트웨어 개발비

※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2013.3.18)

1. 기술용역

○○천 고향의 강 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

☐ 사업개요

- 위 치 : ○○천(○○동 삼거리~○○동 ○천합류 지점)
- 개 요 : 하천정비 : L=3.2km

☐ 심사결과

(단위: 천원)

구 분	요청금액	심사금액	증 감 액	증감률
전면책임 감리용역	1,230,680	1,106,930	△ 123,750	△ 10.06%

☐ 심사내용

- 지역특성에 따른 직접경비 조정
 - 주재비
 - 상주직접인건비의 30% ⇒ 14%
 - 현지차량 운행비
 - 휘발유: 1,887원/ℓ ⇒ 1,718원/ℓ (부가가치세 이중계상 조정)
 - 현지 사무원급료
 - 보통인부 노임 조정 : 83,975원/日 ⇒ 40,000원/日
- ※ 「지역특성을 반영한 감리용역 계약심사기준 통보(감사관-784(2012.1.13.)호」 참조
- 산출대가에 따른 손해배상보험료 및 부가가치세 조정
 - 하천공사 손해배상 공제요율 조정(항만공사 공제요율 준용)
 - 1,108,580,000원 × 0.922% ⇒
 - ┌ 500,000,000원 × 1.001%
 - └ 500,000,000원 × 0.971%
 - └ 69,171,181원 × 0.940%

□ 기타사항

- 비상주감리원이 기술지원감리원으로 변경되었으니 용어변경 후 상기 심사내용에 따라 과업지시서를 수정 후 사업시행하기 바람.

□ 적용기준

- 작성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안전행정부예규 제2호 2013. 3. 26.)
- 산정기준
 -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20호, 2013. 4. 15)
 - 설계·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385호, 2009. 6.18)
 - 노 무 비 : 2013년도 건설공사 감리원 노임단가기준 및
대구광역시 보통인부(사무보조원) 임금 적용
 - 재 료 비: 조달청 가격정보 및 시중거래조사가격

○○ ○○지역 오수관거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

□ 사업개요

- 위 치 : ○○군 ○○면 일원
- 개 요 : 실시설계용역 1식

□ 심사결과

(단위: 천원)

구 분	요청금액	심사금액	증 감 액	증감률
실시설계용역	249,480	225,280	△24,200	△9.70%

□ 심사내용

- 조사측량비 조정
 - 본 실시설계용역지역은 시가지(마을)가 기 구성되어 있는 지역이므로
수도노선 측량 중 중심선 측량은 불필요하여 제외
- 용역비 조정에 따른 손해배상보험료 및 부가가치세 조정
 - 손해배상공제료는 실시설계금액만 대상으로 산출함
 - 손해배상공제료 적용요율 : 실시설계금액+조사측량비
⇒ 실시설계금액
- ☞ 설계·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요령 제6조 제3항 적용

□ 적용기준

- 작성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안전행정부예규 제437호 2012. 12. 24.)
- 산정기준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2-190호, 2012. 8. 8)
- 인쇄기준요금(조달청, 2005.3)
- 설계·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385호, 2009. 6.18)
- 노 무 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시중노임단가 및 한국엔지니어링
협회 발표 엔지니어링사업 노임단가

○○ ○○밸리 도로개설 기술용역

□ 사업개요

- 위 치 : ○구 ○○동 일원
- 개 요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식

□ 심사결과

(단위: 천원)

구 분	요청금액	심사금액	증 감 액	증감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73,785	157,245	△16,540	△9.52%

□ 심사내용

- 지형현황측량 조정
 - 2012년 노임단가 ⇒ 2013년 노임단가 적용
 - 2급 수준측량 시 현장여건에 맞게 지형 유형에 따른 계수(K) 조정
 - 산지(1.1) ⇒ 평지(1.0)
 - ☞ 건설공사 표준품셈 21-7 2급 수준측량 참조
- 토질조사 및 시험 조정
 - 토질조사 수량 조정 : 6공 ⇒ 3공
 - ☞ 국토해양부 지반정보통합DB시스템을 활용 및 인근지역 공사 시
기 조사된 토질조사 데이터 참조
 - 보고서 집필비 삭제 : 지반조사 품에 기포함
 - ☞ 건설공사 표준품셈 20-1 보링 참조
- 용역비 재 산출에 따른 손해배상보험료 및 부가가치세 조정

□ 적용기준

- 작성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안전행정부예규 제404호 2012. 3. 22.)
- 산정기준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2-190호, 2012. 8. 8)
 - 인쇄기준요금(조달청, 2005.3)
 - 설계·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385호, 2009. 6.18)
 - 노 무 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시중노임단가 및 한국엔지니어링
협회 발표 엔지니어링사업 노임단가

○○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사업개요

- 위 치 : ○구 ○○동 일원
- 개 요 : 기반시설 설계용역 1식

□ 심사결과

(단위: 천원)

구 분	요청금액	심사금액	증 감 액	증감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800,000	769,945	△30,055	△3.76%

□ 심사내용

- 기본 및 실시설계 조정
 - 기본 및 실시설계비 조정
 - 추정공사비 실시설계요율 적용오류에 따른 요율조정(2.98% ⇒ 2.95%)
 - ☞ 추정공사비 실시설계요율 100억원 이하 3.09% ⇒ 3.01% 적용
 - 토질조사비 조정
 - 시추조사 연장 산정 조정(15m ⇒ 10m)
 - 점토층 2m + 모래층 5m + 자갈층 2m + 풍화암층 4m + 연암층 2m
 - ⇒ 점토층 2m + 모래층 2m + 자갈층 3m + 풍화암층 2m + 연암층 1m
 - 더블코아바렐, 경유 등 자재단가 조정
 - 도서인쇄비 조정
 - 도서인쇄비(보고서, 보고서부록, 각종 도서작성(설계예산서, 시방서, 수량산출서, 설계도면 등))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4조(업무범위)의 실시설계의 업무범위이므로 제외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조정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기준인력中 재정비지구내 미해당사항 요율조정

- 라. 기초현황조사中 유역 및 하천현황 : 100% $\Rightarrow$ 50%
- 라. 기초현황조사中 기상,수문 및 해상특성조사 : 100% $\Rightarrow$ 50%
- 마. 재해영향예측 및 평가中 하천재해는 해당사항이 없어 제외
- 바. 예상재해저감대책中 하천재해는 해당사항이 없어 제외

○ 용역금액조정에 따른 손해배상보험료 및 부가가치세 조정

- 손해배상보험료는 실시설계금액만 대상으로 산출함
- 손해배상보험료 적용요율 : 기본 및 실시설계비 + 측량비 + 토질조사비 + 조감도작성비 $\Rightarrow$ 실시설계금액

☞ 설계·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요령 제6조 제3항 적용

□ 적용기준

- 작성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안전행정부예규 제2호, 2013. 3. 26.)

○ 산정기준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2-190호, 2012. 8. 8)
- 인쇄기준요금(조달청, 2005.3)
- 국토개발계획 표준품셈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2007년, 표준품셈 제5호)
- 노 무 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시중노임단가 및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발표 엔지니어링사업 노임단가

○○천 재해예방사업(유지수확보) 실시설계용역

□ 사업개요

- 위 치 : ○○군 ○○읍 ○○리~○○구 ○○동 일원
- 개 요 : 유지수 확보사업(L=2.8km) 실시설계용역 1식

□ 심사결과

(단위: 천원)

구 분	요청금액	심사금액	증 감 액	증감률
실시설계용역	198,400	193,490	△4,910	△2.47%

□ 심사내용

- 실시설계비 조정
 - 추정공사비 재산정에 따른 실시설계비 조정
 - 추정공사비 7,600백만원(공사비+설계비+부대비) ⇒ 7,378백만원(공사비)
- 토질조사비 조정
 - 토질조사 자재단가 조정
 - 더블코아바렐 외 2종
 - 점토층, 모래층, 풍화암층 천공시 사용기계 조정
 - 더블코아튜브 ⇒ 싱글코아바렐
 - ☞ 건설공사 표준품셈 토목부문 20-1-2 천공비 적용
- 용역금액조정에 따른 손해배상보험료 및 부가가치세 조정
 - 손해배상보험료는 실시설계금액만 대상으로 산출함
 - 손해배상보험료 적용요율 : 조사측량비 + 실시설계비 + 토질조사
+ 직접경비 ⇒ 실시설계금액
 - ☞ 설계·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요령 제6조 제3항 적용

□ 적용기준

- 작성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안전행정부예규 제437호 2012. 12. 24.)
- 산정기준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2-190호, 2012. 8. 8)
 - 인쇄기준요금(조달청, 2005.3)
 - 설계·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385호, 2009. 6.18)
 - 노 무 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시중노임단가 및 한국엔지니어링
협회 발표 엔지니어링사업 노임단가

○○변전소~○○○○장간 154KV 지중송전선로 설치공사 감리용역

☐ 사업개요

- 위 치 : ○○변전소~○○○○장간
- 개 요 : 지중송전선로 설치, 가공송전선로 철거공사 감리용역 1식

☐ 심사결과

(단위: 천원)

구 분	요청금액	심사금액	증 감 액	증감률
송전선로설치 감리용역	761,100	676,288	△84,812	△11.14%

☐ 심사내용

- 감리용역비 산정대가 조정
 - 상주감리원 주재비 : 30% => 14%
 - ☞ 지역기술자 고용을 위한 대구지역 상주감리원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요율 14%로 조정
 - 현지차량 운행비 유류 단가 조정 : 2,069원 => 1,784원
 - ☞ 2013년 중기기초단가 참조(2013.2.22)
 - 현장 운영비 단가 조정 : 81,443원 => 40,000원(사무보조원)
 - ☞ 대구시 사무보조원 책정 노임기준
 - 퇴직금 정산방식 변경 : 노임단가 * 22일 * (16월/12월)*(1/12월)
 - ※ 지역특성을 반영한 감리용역 계약심사기준 적용
- 손해배상보험료 요율 조정
 - 산출금액 * 0.709% * 1.1(부가세 적용)

□ 적용기준

- 작성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안전행정부예규 제404호 2012.03.22)
- 산정기준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2-190호, 2012. 8. 8)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대가 기준
 - 인쇄기준요금(조달청, 2005.3)
 - 설계·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385호, 2009. 6.18)

2. 일반용역

전자교통신호체계 기술운영 및 D/B작성 용역

☐ 개 요

○ 위 치: 교통정보센터 내

- 개 요:
- 32개 주요 간선가로축(260개 교차로) 전자교통신호 연동체계 구축
 - 30개 교통 혼잡 교차로 교통현황조사 및 조정

☐ 심사결과

(단위: 천원)

구 분	요청금액	심사금액	증 감 액	증감률
총금액	395,290	364,380	△30,910	△7.82%

☐ 심사내용

○ 기술료 요율 정정 : 20.127000102% ⇒ 20% 정정

- 기술료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직접인건비+ 제경비)의 20%~40% 적용

※ 계속적인 사업으로 최소요율 적용

○ 중급숙련기술자 → 초급숙련기술자로 기술 등급 조정

- 데이터베이스 입력 보조자로 초급숙련기술자 자격으로도 과업내용 수행 가능

※ 초급숙련기술자: 1)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기능사보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2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교통량 조사인부 노임단가 조정

- 81,443원(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한 보통인부 노임단가)⇒43,000원(대구광역시 기능인부(특정기술필요 또는 노동강도가 높은 업무) 임금 적용, 예산담당관-10188(2012.12.5.))

※ 지방계약법 규칙 제7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제1항제1조 의거.

○ 데이터베이스 입력 보조자 과업 일수 오류 정정 (249인 → 248인)

□ 적용기준

- 작성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안전행정부예규 제2호, 2013. 3. 26.)
- 산정기준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2-190호, 2012. 8. 8)

가로등 현장업무지원시스템 구축 용역

☐ 개 요

- 위 치: 시설관리공단 시스템실
 - OpenAPI기반 가로등 위치 및 속성정보 DB구축
- 개 요:
 - 스마트 패드(태블릿컴퓨터)기반 가로등 현장업무 시스템 개발
 - 가로등관리지리정보시스템과의 기능 연계

☐ 심사결과

(단위: 천원)

구 분	요청금액	심사금액	증 감 액	증감률
총금액	144,707	139,151	△5,556	△3.84%

☐ 심사내용

- 기 구축되어 운영 중인 가로등관리지리정보시스템의 현장업무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업으로 기구축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는 만큼 소프트웨어 개발 중 소프트웨어 분석 부분에 업무참여별 보정계수를 0.9 → 0.7 조정함.

☐ 적용기준

- 작성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안전행정부예규 제404호 2012.03.22)
- 산정기준 : 소프트웨어 사업대가 산정 가이드

○○지역 하수관거 수밀시험 및 CCTV조사

☐ 개 요

- 위 치: 다사읍 문산, 문양, 부곡리 일원
- 개 요:
 - 수밀시험(D300mm 95개소, D200mm 147개소)
 - CCTV조사(L= 10,598m) 각 1식

☐ 심사결과

(단위: 천원)

구 분	요청금액	심사금액	증 감 액	증감률
총금액	129,930	105,080	△24,850	△19.13%

☐ 심사내용

- 일 작업량 조정
 - CCTV 조사: 기존관(L=280m/일)→ 신설관(L=420m/일)
- 장비 소요인공 조정
 - 공기압축기: 300m/m(1.41→ 1.08인) 200m/m(1.37→1.08인)
 - 물탱크: 300m/m(1.41→ 1.08인), 200m/m(1.37→1.08인)
 - ※ 시험기구에서 제외(대구시 기준 적용)
- 환율조정: 1,081.9원/\$→ 1,071.1원/\$
- 경유대가 조정: 1,587원/ℓ → 1,580원/ℓ

☐ 적용기준

- 2013년 건설품셈 참조
- 2013년 대구시 중기기초단가 참조

물품 · 제조분야

물품구매 계약심사

가. 물품의 개념

물품은 물품관리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동산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을 말함

나. 물품의 분류

- 1) 제 조 : 특수규격의 물품을 별도의 주문에 의해 제작 절차를 거치는 것
- 2) 구 매 : 이미 제조되어진 완성품을 그대로 구입하는 것
- 3) 인쇄물 : 책자, 리플릿, 전단지, 캘린더, 포스터 등 각종 인쇄물

다. 관련법령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2)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 3)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 예규)
- 4)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 5) 부가가치세법 등
- 6) 기타 자료
 - 조달청 가격정보, 시중 물가정보지, 견적가격
 - (기획재정부 허가업체 조사지:물가자료, 물가정보, 유통물가, 거래가격 등)
 - 중소기업중앙회 제조노임, 건설공사 표준품셈

라. 계약심사의뢰시 구비서류

- 1) 물품 계약심사 요청시 모든 물품 제조·구매 건은 공통적으로 규정된 서식인 계약심사 요청서(사무자동화 서식)로 작성하고, 산출기초 조사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개별 유형 건별 아래 부기한 서류를 구비하여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 2) 물품구매(완제품)
 - 계약심사 요청서(사무자동화 서식), 산출기초 조사서
 - 체적인 규격서·사양서
- 3) 제조 가공품
 - 계약심사 요청서(사무자동화 서식), 산출기초 조사서
 - 구체적인 규격서·사양서, 제조원가계산서

4) 수입물품

- 계약심사 요청서(사무자동화 서식), 산출기초 조사서
- 수입원, 수입물품 원가계산서
- 기타 시장재고·유통여부나 참고자료 제시

5) 수리

- 계약심사 요청서(사무자동화 서식), 산출기초 조사서
- 수리명세·수리단위별 내역서

6) 임차

- 계약심사 요청서(사무자동화 서식), 산출기초 조사서
- 임차대상·기간 및 장소·임차조건

마. 원가산출 기준

- 1) 거래실례가격 :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책자 또는 인터넷 등으로 통보한 가격, 전문가 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공무원이 사업자를 대상으로 직접 조사 확인한 가격(견적서 등)
- 2) 원가계산 :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성하는 원가를 계산하여 적용(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준칙)
- 3) 인 쇄 물 : 조달청 인쇄기준요금 적용
- 4) 감정가격 : 위의 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을 경우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토지, 건물, 불용품 매각 등에 이용
- 5) 수입품 구매 : 외화표시원가(CIF), 통관비, 보세창고료, 하역료, 국내운반비, 신용장개설료 포함

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 1) 일반관리비율 :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의 율을 초과하지 못함
 - 가) 음·식료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14
 - 나) 섬유·의복·가죽 제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8
 - 다) 나무·나무 제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9
 - 라) 종이·종이제품·인쇄출판물의 제조·구매 : 100분의 14

- 마) 화학·석유·석탄·고무·플라스틱 제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8
- 바) 비금속광물제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12
- 사) 제1차 금속제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6
- 아) 조립금속제품·기계·장비의 제조·구매 : 100분의 7
- 자) 수입물품의 구매 : 100분의 8
- 차) 그밖에 물품의 제조·구매 : 100분의 11
- 2) 이윤율 :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의 율을 초과하지 못함
 - 가) 제조구매 : 100분의 25
 - 나) 수입물품의 구매 : 100분의 10

사. 주요 검토사항

- 1)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등을 기준하여 계약목적물의 규격별 단위당 가격을 조사 후 최저가격으로 적용
- 2)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확인

도시활력 증진지역 CCTV 구매설치

☐ 개 요

- 위 치: 남구 관내 일원
- 개 요: 남구관내 15개소 16식 CCTV 설치 및
남부경찰서 112상황실 연동

☐ 심사결과

(단위: 천원)

구 분	요청금액	심사금액	증 감 액	증감률
총금액	276,900	250,800	△26,100	△9.43%

☐ 심사내용

- IR스피드돔카메라 6,000,000원/1대 → 5,000,000원/1대 조정(△2,000,000원 감액)
- 보안등일체형 카메라 → IR스피드돔카메라로 변경 적용
 - 보안등일체형브라켓 재료비 삭제(△36,000,000원 감액)
 - 보안등일체형브라켓 설치 노무비 삭제(△603,360원 감액)
 - 카메라 가로암 재료비 추가(6,600,000원)
 - 카메라 가로암 설치 노무비 추가(877,898원)
 - 제어함체 1대, 카메라 안내판(Arm부착용) 12대, 접지동봉 등 잡자재비 추가

☐ 적용기준

- 작성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안전행정부예규 제2호, 2013. 3. 26.)
- 산정기준
 - 재 료 비 : 조달청 가격정보 및 시중거래조사가격

○○공사 CCTV 연계시스템 증설 장비 구매

☐ 개 요

- 위 치: 교통정보센터 내
- 개 요: 도로공사 연계용 디코더, 인코더 구입

☐ 심사결과

(단위: 천원)

구 분	요청금액	심사금액	증 감 액	증감률
총금액	32,780	21,659	△ 11,121	△33.93%

☐ 심사내용

- 단가 조정(타견적서 참고)
 - 코텍 인코더 1,600,000원/1대 → 715,000원/1대
 - 코텍 디코더 1,700,000원/1대 → 900,000원/1대

☐ 적용기준

- 작성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안전행정부예규 제2호, 2013. 3. 26.)
- 산정기준
 - 재 료 비 : 조달청 가격정보 및 시중거래조사가격

○○댐 지진가속도계측시스템 구입 설치

☐ 개 요

- 위 치: 시설관리소 및 공산댐
 - 지진가속도 계측시스템 1식
- 개 요: - 지진분석 및 모니터링 시스템 1식
 - 기타 부대 설치공사

☐ 심사결과

(단위: 천원)

구 분	요청금액	심사금액	증 감 액	증감률
총금액	173,798	163,576	△10,222	△5.88%

☐ 심사내용

- 산출근거 없는 항목 삭제
 - 간접노무비, 내역서상경비, 기타경비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8절 “2-가”」의거
- 직접재료비 중 계측기 등을 재비로 넣음
 - 일반관리비,이윤 중복 계상되는 부분 삭감

☐ 적용기준

- 작성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안전행정부예규 제2호, 2013. 3. 26.)

도시철도 ○호선 차량기지 차체하부자동기취장치 구매

☐ 개 요

- 위 치: 도시철도 3호선
- 개 요: 차체하부자동기취장치 1식

☐ 심사결과

(단위: 천원)

구 분	요청금액	심사금액	증 감 액	증감률
총금액	1,579,050	1,489,730	△89,320	△5.66%

☐ 심사내용

- 공기압축기 예비품 2대에서 1대로 감조정(△22,500,000원)
- 인건비 중 설계비는 입찰시 제출서류인 기술제안서에 포함되는 사항
이므로 삭감(△22,500,000원)
- 적용 보험료 조정(△1,042,103원)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삭제
- ※ 물품제조 사후정산 대상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 적용기준

- 작성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안전행정부예규 제2호, 2013. 3. 26.)

교통정보센터 LED 차량등, 보행등 모듈 구매

☐ 개 요

- 위 치: 교통정보센터 내
- 개 요: 차량등, 보행등 구입

☐ 심사결과

(단위: 천원)

구 분	요청금액	심사금액	증 감 액	증감률
총금액	44,454	42,500	△1,954	△4.40%

☐ 심사내용

- 시험검사비 1,954,800원 삭감
 - 구매 사양서 상 시험검사비는 계약자가 전액 부담으로 명기되어 있고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설계에 반영되어 있는 시험검사비 삭감함.
- <참고> 조달청과 제3자단가 계약된 제품으로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 제6조(시험 검사 비용의 부담) 모든 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적용기준

- 작성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안전행정부예규 제2호, 2013. 3. 26.)

버스전용차로무인단속시스템 제조 구매 설치

☐ 개 요

○ 위 치: 서구 평리동 외 2군데

－ 버스전용차로 무인단속시스템 제작 설치

○ 개 요:

- － 시스템 재설치를 위한 기존장비 철거 설치 및 구조물 제작
- － 기존 시스템과의 H/W,S/W 호환 연계 ,단속운용SW 성능개선
- － 부대시설 및 암호화통신서버 및 기존 단속관리서버 장비 연계 등

☐ 심사결과

(단위: 천원)

구 분	요청금액	심사금액	증 감 액	증감률
총금액	139,400	137,330	△2,070	△1.48%

☐ 심사내용

○ 노무비 정정

- － 무인단속설비 신규 설치와 이설 설치에 하우징, 줌렌즈, 조명장치 설치 (철거) 노무비 삭감.(카메라 설치(철거) 노무비 품에 하우징, 렌즈 및 조명 장치 노무비 품이 기 포함됨)

※ 정보통신 표준품셈 7-1-2-1 해설⑩ 참고

☐ 적용기준

- 작성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안전행정부예규 제2호, 2013. 3. 26.)
- 산정기준 : 정보통신 표준품셈

○○○○단지 상징사인물 제조설치

☐ 개 요

- 위 치: 대구○○산업단지(Book Valley) 내
- 개 요: - 상징사인물 1, 안내사인물 6개

☐ 심사결과

(단위: 천원)

구 분	요청금액	심사금액	증 감 액	증감률
총금액	90,276	78,695	△11,581	△12.83%

☐ 심사내용

- 철물 제작설치→ 철물제작
 - 공장에서 제작 후 지정장소에 설치하므로 적용품셈 변경
- 기타경비 제외
 - 기타 법정경비만 반영

☐ 적용기준

- 2013년 건설품셈 참조
- 지방자치단체 예정가격작성요령 참조

○○○○주차장 변압기 구매

☐ 개 요

- 위 치: 대구○○시장
- 내 용: - 몰드변압기 2종(200KVA 1대, 300KVA 1대)

☐ 심사결과

(단위: 천원)

구 분	요청금액	심사금액	증 감 액	증감률
총금액	30,300	20,900	△9,400	△31.02%

☐ 심사내용

- 타사견적 조정
 - 200KVA : 14,000,000→ 9,400,000원
 - 200KVA : 16,300,000→ 11,500,000원
- ※ 시공에 따른 설치비 등은 추가로 견적 받은 후 추진하시고 결과를 통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찰결과: 20,112,000원에 낙찰됨

○○○ 직원근무복 제조

☐ 개 요

- 위 치: 직원근무복(남, 여)
- 내 용: 남자 춘추정복(하) 등 4종 7품목

☐ 심사결과

(단위: 천원)

구 분	요청금액	심사금액	증 감 액	증감률
근무복제조	141,422	125,220	△ 16,202	△ 11.46%

☐ 심사내용

- 상여금, 퇴직충당금 조정

- 과업기간 30일이므로 제외

※ 1. 상여금: 년 400% 범위내에서 지급(예정가격 작성요령)

2. 퇴직급여충당금: 1년 미만이므로 제외(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 계속근로기간이 1년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함)

○○○ 마을 노인요양원 기능보강

☐ 개 요

- 위 치: ○○구 ○○마을 노인요양원
- 내 용: 재활장비 등 60종 364개 품목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심사요청액	심사금액	증감액	증감률
총 금액	107,196	95,442	△11,754	△10.96%
재활치료장비	22,590	18,630	3,960	
간호및의료장비	31,845	31,213	632	
프로그램,생활보조	21,890	16,298	5,592	
조리및배식	13,310	11,773	1,537	
사무장비 등	17,561	17,528	33	

☐ 심사내용

- 단가 조정(타사견적으로 조정)
 - 재활치료장비
 - 기울임보드(국산,보급형): 550,000→ 400,000원
 - 박스와 블록테스트: 558,000→ 550,000원
 - 2열손가락검사도구: 380,000→ 110,000원
 - ROM아크훈련기: 222,000→ 220,000원
 - 8자보드: 690,000→ 660,000원
 - E-Z벨크로보드: 370,000→ 280,000원
 - 손과 손목운동기: 990,000→ 130,000원
 - NK식중합운동기: 1,260,000→ 1,200,000원
 - 실내용보치아게임: 210,000→ 180,000원
 - 상하지폐달운동기: 2,500,000→ 1,800,000원
 - 자동높이조절 작업테이블: 2,860,000→ 1,800,000원

- 간호 및 의료장비
 - Bedside Monitor(10.4 inch touch): 5,775,000→ 5,500,000원
- 프로그램,생활보조
 - 생활실울문장: 616,000→ 150,000원
- 조리 및 배식
 - 반찬배식대: 550,000→ 275,000원
 - 국그릇배분대: 250,000→ 198,000원
- 사무장비 등
 - 디지털카메라:883,000→ 850,000원

※ 제3자단가 계약물품 조달 등 당초 규격으로 발주시는 조정 후 당초
요청가격으로 재산정 후 통보바랍니다

구·군 우수사례

순종황제 남순 역사공간 조성사업

☐ 개 요

- 위 치: 대구 중구 수창동 1길 231번지
- 내 용: 토공사와 4개 공종

☐ 심사결과

(단위: 천원)

구 분	요청금액	심사금액	증 감 액	증 감 륜
총금액	370,580	368,583	△1,997	△0.54%

☐ 심사내용

- 내역서
 - 1. 폐기물처리비 : 5,150,000 → 5,229,000원
 수량집계 변경 : 490.5 → 497.6 ton
 ※ 2013년 중구 폐기물 연간단가계약시 변경단가 적용
 - 2. 폐기물운반비 : 4,460,000 → 4,527,000원
 수량집계 변경 : 490.5 → 497.6 ton
 ※ 2013년 중구 폐기물 연간단가계약시 변경단가 적용
- 일위대가
 - 1. 제16, 17호표 : 518,209원 → 363,585원
 - 가. 굴취
 조경공 : 2.2 → 1.12, 보통인부 : 0.31 → 0.19
 - 나. 식재
 조경공 : 1.23 → 1.12, 보통인부 : 0.6 → 0.19
 굴삭기(07→06) : 0.78 → 1.1, 크레인(15ton) : 0 → 0.36
 마사토 : 2,149 → 0
- 단가산출
 - 1. 무근콘크리트깨기 : 21,268원 → 18,379원
 폐기물상차비가 있으므로 무근콘크리트깨기의 들어내기 품 삭제
- 기계경비
 - 1. 경유 : 1,580원 → 1,532원
 - 2. 휘발유 : 1,784원 → 1,712원

○ 자재단가

1. 90번 : 1,000원 → 603원

2. 91번 : 1,050원 → 612원

3. 92번 : 990원 → 567원

※ 조달철 가격정보 우선이용

○ 원가계산서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추가 : 0원 → 185,771원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 율

□ 적용기준

○ 작성기준: 2013년 표준품셈, 2013년 대구시 건설공사 시공지침서,
5월 대구시 중기기초단가, 2013년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더 좋은 마을만들기 시범사업 조경공사

□ 개 요

- 위 치: 대구 ○○동 894번지 일원
- 내 용: 공동주차장조성, 마을쉼터 및 운동시설 조성, 텃밭조성, 전주 주변 화단설치

□ 심사결과

(단위: 천원)

구 분	요청금액	심사금액	증 감 액	증 감 률
총금액	172,549	165,351	△7,198	△4.17%

□ 심사내용

《 현장상황에 맞는 기술검토 적용 : 감 2,932천원 》

- 작업계수 조정
 - 27호표 느티나무 단위식재 수량 : 5주 ⇒ 1주
 - 잔디블럭포장 : 보조기층 30cm ⇒ 10cm, 할증 8% ⇒ 3%(점토블럭기준)
- 수량산출 조정
 - 포장공사(점토블럭, 잔디블럭) 토공 및 혼합골재 삭제
 - 기존 콘크리트포장 철거 장소에 포장하므로 토공 및 보조기층 불필요

《 원가계산서 재작성 등 : 감 4,266천원 》

- 퇴적공제부금비 삭제 : 추정금액 3억이상 적용
- 안전관리비 효율조정 : 2.48% ⇒ 1.24%
- 직접공사비 조정에 따른 제경비 재산출 등

□ 적용기준

- 작성기준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행정안전부예규 제437호 2012.12.24)
- 재료비, 노무비 및 산출경비 기준
 - 노 무 비 : 2013년도 대한건설협회 시중노임단가
 - 재 료 비 : 거래실례가격(조달청 가격정보 및 시중거래조사가격)
 - 중기경비 : 2013년도 건설공사 표준품셈
- 대구시 2010년도 세계육상대회 마라톤코스(○○로) 도로확장 계약심사
주요내용

○○네거리 명품가로공원 조성사업 기본설계용역

☐ 개 요

- 위 치 : 서구 북비산네거리 일원
- 규 모 : A=4,000m²
 - 휴게공간, 수공간, 기타 시설정비 등 가로경관 디자인개선

☐ 심사결과

(단위 :천원)

구 분	요청금액	심사금액	증 감 액	증 감 륜
총 금액	76,540	68,090	△8,450	△11.04%

☐ 심사내용

- 조사측량비 조정 : 중심선측량은 불필요하므로 삭제함.
- 인쇄비 조정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제14조에 따라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하는 기본설계와 관련된 보고서, 복사비 및 인쇄비는 업무범위에 포함되므로 삭제함.
- 손해배상공제료 적용요율 조정
 - 실시설계(도로) 공사비 적용 → 기본설계(관람집회시설) 용역비 적용
- 디자인비 조정 : 단순 업무하는 보조원은 2인 이내로 제한함. 4인 → 2인

□ 적용기준

- 작성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안전행정부예규 제2호, 2013.3.26)

○ 산정기준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178호, 2012. 7. 30)
- 설계·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공제) 업무요령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385호, 2009. 6.18)

- 대구시 2012년도 ○○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계약심사
주요내용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공사

□ 사업개요

- 위 치: 대구 ○구 구암로 47(○○동)
- 개 요:
 1. 토 공: 절취 1,975m³, 터파기 474m³, 되메우기 97m³, 잔토처리 2,352m³
 2. 배수공: 원형수로관(D300) 294m, 맨암거(D250) 101m, (D150) 614m
 3. 구조물공: 시설안내판1개소, 라인벨트설치 : 343m
 4. 포장공: 마사토포장(T=15cm) 7,200m², 우레탄포장(T=15mm) 1,748m²

□ 심사결과

(단위 :천원)

구 분	요청금액	심사금액	증 감 액	증 감 륜
토목부문	338,100	327,093	△11,007	△3.26%

□ 심사내용

- 토공
 - 잔토처리 운반장비 변경: 15ton/DT ⇒ 24ton/DT : 감2,117천원
- 배수공
 - 이중벽PE관 접합품 대구시 원가분석 자문결과 적용 : 감1,328천원
 - 이중벽PE관 사급자재 ⇒ 관급자재로 변경
 - 원형수로관 설치 적용품 수정 : 감775천원
- 포장공
 - 콘크리트포장(T=15cm) 포장품 변경 : 감527천원
- 자재
 - 이중벽PE관 사급자재 ⇒ 관급자재로 변경
- 원가계산서 재작성
 - 직접공사비조정 및 사급자재 전환에 따른 제경비 재산출 등 감6,260천원

□ 적용기준

- 작성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437호 2012.12.24)
- 재료비, 노무비 및 산출경비 산정기준
 - 노 무 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시중노임단가
 - 재 료 비: 조달청 가격정보 및 시중거래조사가격
 - 적용품셈: 2013년도 건설공사 표준품셈
- 대구시 2012년도 계약심사 기준마련 원가분석자문회의 결과 적용

○○○생태복원 취수부분 공사

□ 사업개요

- 위 치: ○○못~○○ 취수부(○○일원)
- 개 요: 취수 관로 개체 : D400mm→D600mm, L=1.6Km

□ 심사결과

(단위 :천원)

구 분	요청금액	심사금액	증 감 액	증 감 률
토목부분	613,727	589,380	△24,347	△3.97%

□ 심사내용

- 설계 도서(공사원가계산서, 설계내역서,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변경

1. PE복층관 접합 및 부설 품 변경(감액 625천원)

- 당초 : 배 관 공 0.21인 → 변경 : 0.146인
- 당초 : 보통인부 0.32인 → 변경 : 0.146인
- 금액조정- 당초 : 1,439,087원 → 변경 : 814,092원
- ☞ 대구광역시 원가분석 자문회의 결과 반영

2. 폐기물선별 인력 선별 품 변경(감액 27,212천원)

1) 폐기물 선별시 인력 선별품 미반영사항 조치

- 당초 81,443원 × 20% = 16,288원
- 변경 : 81,443원 × 0.39인 × 20% = 6,352원

· 금액조정

당초 : 57,433,686원 → 변경 : 30,221,604원

- ☞ 품셈기준 호박돌 섞인 토사 0.39인 적용 반영

3. 폐기물 들어내기 운반 장비 변경(BH0.2m³→ 경운기 변경, 금액 2,117천원)

- 운반장비 변경 : 백호 0.2m³ → 경운기
- 운반거리 : 1회 20m, 4회 운반 → 1회 40m, 2회 운반
- 금액조정

당초 : 6,436,364원 → 변경 : 4,319,066원

☞ 백호(0.2m³)에 의한 폐기물 들어내기(운반) 품이 없음에 따라 경운기 운반을 준용

4. 장비 변경(백호: 무한궤도 → 타이어 변경, 증액 3,871천원)

- 폐기물 토사운반: 백호 무한궤도 0.2m³(q=0.2) → 백호 타이어 0.18m³(q=0.18)
- 토사운반: 백호 무한궤도 0.2m³(q=0.2) → 백호 타이어 0.18m³(q=0.18)
- 폐기물 선별 : 백호 무한궤도 0.2m³(q=0.2) → 백호 타이어 0.18m³(q=0.18)
- 폐기물 상차 : 백호 무한궤도 0.2m³(q=0.2) → 백호 타이어 0.18m³(q=0.18)
- 금액조정: 당초 56,743,759원 → 변경 60,615,101원

☞ 현장 시공사진에 맞게 백호 무한궤도를 백호 타이어로 변경 조치

5. 계비온 옹벽 설치 높이 조정(증액 5,635천원)

- 계비온 옹벽 설치
 - 당초 : H=1.5m, L=100m → 변경 : H=1.5m, L=165m
 - 당초 : H=1.5m, L=127m → 변경 : H=1.0m, L=62m
- 금액조정

당초 : 46,149,270원 → 변경 : 51,784,233원

☞ 내역서 오기 사항 조정 및 산비탈구간의 높이에 맞게 계비온 옹벽높이 조정하여 변경 조치

6. 수량산출서 수량의 내역서 입력 오기 수정(감액 3,899천원)

- 도로구간 되매우기 및 다짐 1,514m³ → 1,472m³ · 비탈구간 잔토처리 92m³ → 57m³
- 보차도경계석 설치 100m → 93m · 조립식맨홀 22개소 → 21개소
- 가시설 버팀보제작 12본 → 4본 · 추진공 강재운반비 2회 → 4회

- 콘크리트포장(t=20cm) 2,293m² → 2,269m² · 경계석 설치 0m → 11m
- 금액조정 당초 : 34,095,208원 → 변경 : 30,196,278원
- ☞ 수량산출서 수량의 내역서 입력시 오기 사항에 대해 수정하여 변경 조치

□ 적용기준

- 작성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404호 2012.03.22)
- 재료비, 노무비 및 산출경비 산정기준
 - 노 무 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시중노임단가
 - 재 료 비: 조달청 가격정보 및 시중거래조사가격
 - 적용품셈: 2013년도 건설공사 표준품셈
- 대구시 2010년도 ○○○천 생태하천 조성공사(1공구) 계약심사(Page 63)
 - 덤프운반(유용성토)→ 사토(토사) 적재장비 조정 : 백호0.7m³ ≡≫로더1.72m³
(현장여건에 맞는 장비 부분을 준용)
- 대구광역시 원가분석 자문회의 결과 반영(2011년도)
 - PE관 부설 및 접합(소켓접합, D300mm)

○○○노후하수관거 정비공사

□ 사업개요

- 위 치: 수성구 ○○로(○○네거리~○○네거리)
 - 하수관거 정비
- 개 요:
 - 굴착교체 D400mm, L=64m
 - 비굴착보수 D400~900mm, L=2,053m

□ 심사결과

(단위 :천원)

구 분	요청금액	심사금액	증 감 액	증 감 률
토목부문	709,580	686,170	△23,410	△3.30%

□ 심사내용

○ 설계 도서(도면,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 설계내역서 등) 변경

1. 장비 변경(BH0.7m³→BH0.4m³ 변경)

- 터파기 : 64m³→71m³, · 되메우기 및다짐 : 26m³→22m³
- 모래부설 및 다짐 : 30m³→35m³, · 잔토처리 : 36m³→47m³
- ASP포장깨기 : 10m³→10m³, · 폐기물상차 : 26m³→26m³

☞ 소규모 물량으로 현장여건에 맞게 조정

3. 관거 보수공

1) 흡입준설기로 변경【버킷식(경운기)→흡입준설기(25Ton)】

- N-line : 11m³, S-line : 27m³(총38m³).

☞ 대구시 준설업체 현재 버킷식 장비 미보유

4)관보호공 추가(다중벽→관보호공:7m)

☞ 주유소를 통행하는 대형 차량으로 인해 유지관리시 관보호공 설치 필요

5)횡줄파기 2개소

☞ 주유소 앞 지장물 조사를 위한 횡줄파기 시행 필요

5. 부대공

3) 안전관리비

-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토록 시방서에 명기(해당부서 의견 반영)

(71일 11,564천원 삭제)

 안전관리비 정산업무 개선방안 통보, 대구광역시 감사관
-305(2013.01.10) 참조

8) 임시통행용철판 : 1개소 설치(주유소앞)

 차량 통행 및 보행자 안전 확보로 민원해결 및 관 보호공 품질 확보

6. 기 타 : 시험시공(비굴착)

- 굽힘강도 4회 반영
- 굽힘탄성율 4회 반영

○ CCTV 설계 미반영(분리 발주)

- 총 연장 : 1,825m 설계 반영

※ 하수도 시설기준 : 신설관(800mm이상 육안검사)

□ 적용기준

○ 작성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404호 2012.03.22)

○ 재료비, 노무비 및 산출경비 산정기준

- 노 무 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시중노임단가
- 재 료 비: 조달청 가격정보 및 시중거래조사가격
- 적용품셈: 2013년도 건설공사 표준품셈

○ 2013년 토목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2013.10.07)

○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국토부 고시 제2013-331호(2013.06.18))

○ 2011 하수도시설기준(환경부)

○ 안전관리비 정산업무 개선방안 통보【대구광역시 감사관-305(2013.01.10)】

○ 대구시 2010년도 ○○○천 생태하천 조성공사(1공구) 계약심사(Page 63)

- 덤프운반(유용성토)→ 사토(토사) 적재장비 조정 : 백호0.7m³ ≡ 로더1.72m³
(현장여건에 맞는 장비 부분을 준용)

○ 대구시 2010년도 ○○ 패밀리파크 조성공사 계약심사(Page 74)

- 현장여건에 맞는 수량 재산출(D25mm ≡ D50mm) : 236개소 ≡ 253개소
(증 17개소)

가창 ○○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 사업개요

- 위 치: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내주리 지내
- 개 요: 도로개설 (B=8.0~10.0m, L=1,411,0m)

□ 심사결과

(단위 :천원)

구 분	요청금액	심사금액	증 감 액	증 감 륜
토목부문	1,960	1,851	△109	△5.56%

□ 심사내용

- 토공단가 조정 : 감 19,847천원
 - 토공(암) 단가 : Q값 조정
 - 사 토 : 사토장 정리품 삭제
 - 철 거 : Q값 조정
- 배수공 단가 조정 : 감 20,361천원
 - PE관(소켓 및 밴드접합식)부설 및 접합 : 품셈적용기준 ⇒ 계약심사기준 검토를 위한 원가분석 자문회의 결과 기준으로 변경
- 교량공 단가 조정 : 감 2,898천원
 - 터파기(발파암) : Q값 조정
- 구조물공 단가 조정 : 증 225천원
 - 보강토옹벽블럭설치 : 보강토옹벽블럭과 옹벽블럭 단가 분리적용
그리드설치단가 삭제
- 부대공 단가조정 : 감 87,682천원
 - 사급자재 관급변경 : 가드레일, 낙석방지책, 갈매기표지판 관급적용
 - 표지판설치 : 삼각표지판, 갈매기표지판 설치단가 변경(인력100%⇒기계90%)
 - 토류판설치 : 2013년 품셈 5-3-3적용

○ 관급자재대 : 중 77,790천원

- 항목추가 : 맨홀뚜껑, 가드레일, 낙석방지책, 갈매기표지판 추가

○ CCTV조사 단가조정 : 감 490천원

- 2013년 CCTV조사 품셈적용기준

○ 원가계산서 조정

- 퇴직금공제부금비 : 추가

□ 적용기준

○ 작성기준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행정안전부예규 제332호 2010.10.26)

○ 재료비, 노무비 및 산출경비 산정기준

- 노 무 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시중노임단가
- 재 료 비 : 조달청 가격정보 및 시중거래조사가격
- 중기경비 : 2013년도 건설공사 표준품셈

○ 대구시 설계 및 계약심사기준마련 자가분석 자문회의 결과

**【감사관93(2012-01-02) 호에 의거 2012.1.2이후 모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우·오수시설 등에 적용】**

III

Chapter

부 록

1. 대구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2. 예정가격 작성요령
3. 계약심사 운영요령

대구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소관부서 : 감사관실]

[제정 2008. 11. 10 규칙 제2540호]

개정 2009. 9. 10 규칙 제2581호

개정 2011. 3. 10 규칙 제2645호

개정 2011. 12. 12 규칙 제2667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고 원가계산, 물품구매·제조의 원가산정 적정성 등을 심사·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계약심사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시 의회사무처(개정 2011. 12. 12 규칙 제2667호)

나. 삭제<2011. 12. 12 규칙 제2667호>

다. 삭제<2011. 12. 12 규칙 제2667호>

라. 자치구·군

마. 시 지방공기업

바. 시 출연·출자기관(다만, 50% 미만 출연·출자기관은 제외)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자치구·군의 대상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 및 재배정사업으로 한다.(개정 2009. 9. 10 규칙 제2581호)(개정 2011. 3. 10 규칙 제2645호)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 중 추정금액 5억원 이상의 공사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개정 2011. 3. 10 규칙 제2645호)

다.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개정 2011. 3. 10 규칙 제2645호)

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개정 2011. 3. 10 규칙 제2645호)

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개정 2011. 3. 10 규칙 제2645호)

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개정 2011. 3. 10 규칙 제2645호)

2. 계약금액 20억원 이상 공사로서 1회 설계변경 금액으로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개정 2009. 9. 10 규칙 제2581호)(개정 2011. 3. 10 규칙 제2645호)

3. 삭제<2009. 9. 10 규칙 제2581호>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의 용역(개정 2009. 9. 10 규칙 제2581호)

나. 건설기술용역 :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등 이에 준하는 건설기술용역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의 용역(개정 2009. 9. 10 규칙 제2581호)

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 중 추정금액 1억원 이

상의 용역(개정 2009. 9. 10 규칙 제2581호)

5. 물품의 제조·구매 중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의 물품의 제조·구매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9. 9. 10 규칙 제2581호)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조달발주사업
2. 삭제<2011. 3. 10 규칙 제2645호>
3. 삭제<2009. 9. 10 규칙 제2581호>
4.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신설2009. 9. 10 규칙 제2581호]
5. 그 밖에 재해 및 재난복구사업으로서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거나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보아 계약심사가 불필요하거나 연례 반복사업이고 전년도 평균 조정율이 1퍼센트 미만인 사업으로서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업(개정 2009. 9. 10 규칙 제2581호)(개정 2011. 3. 10 규칙 제2645호)

제5조(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사업과 위탁보조사업은 대금을 교부하기 전에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및 단서신설 2011. 3. 10 규칙 제2645호)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8호서식의 대상사업별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 9. 10 규칙 제2581호)

제6조(심사실시)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결과)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삭제<2011. 12. 12 규칙 제2667호>

제8조(원가분석자문회의) ① 사업비 산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대구광역시원가분석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
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3. 기타 시장이 필요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자문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감사관이 되고, 위원은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1. 12. 12 규칙 제2667호)

③ 그밖에 자문회의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

한다.

제9조 삭제<2009. 9. 10 규칙 제2581호>

제10조(사후관리 등) ① 계약심사 요청사항 및 심사결과 등은 별도의 심사대장에 등재하여 사후관리(DB관리를 포함한다)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9. 9. 10 규칙 제258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1. 3. 10 규칙 제26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1. 12. 12 규칙 제26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09.9.10 규칙 제2581호)(개정 2011.3.10 규칙 제2645호)

공사계약 심사요청서

공 사 명		발주부서	
공사위치		공사구분	종합, 전문, 기타
공사기간	(개월)	계약방법	
요청금액	· 계 : 천원 - 도 급 비 : - 관 급 비 :	금회 사용가능한 예산액	· 계: 천원 - 공사비 : - 보상비 : - 기 타 :
설 계 자	· 상 호 : · 책임기술자 :	· 대 표 자 : (전화번호 :)	
설계기간	~	설계완료일	
발 주 처	· 담 당 자 :	(전화번호 :)	
◦ 공사개요 :			
◦ 첨부서류 1. 설계도서(원가계산서, 도면, 지방서, 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등) 각 1부 2. 설계도서 전산파일(내역서 : 자동 연산조치된 엑셀 변환파일, 도면:Auto CAD)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09.9.10규칙 제2581호)(개정 2011.12.12규칙 제2667호)

용역계약 심사요청서

용역명		발주부서	
용역위치			
용역기간		계약방법	
용역금액	· 총 용역비 : 천원		
예정원가 작성자	· 담당부서 : · 작성자 : (전화번호)		
◦용역개요 :			
◦ 첨부서류			
1. 원가계산서(건설기술용역, 학술연구용역, 일반용역) 1부			
2. 설계내역서(과업이행요청서 포함) 1부			
3. 수량산출서 1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전산파일(내역서 등은 자동연산 된 엑셀변환파일)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학술연구용역의 경우 과업참여자의 이력서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1.12.12 규칙 제2667호)

물품구매계약 심사요청서

건 명		발주부서	
산출금액	원		
구 매 예정일자			
계약방법			
수의 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 상 호 : · 대표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기 타			
◦ 물품 사양 :			
◦ 첨부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원가계산서 1부 3. 과업이행요청서 또는 규격·사양서 1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전산파일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별지 제4호서식)

물품제조(수리)계약 심사요청서

건 명		발주부서	
산출금액	원		
제 조 (수 리) 예정일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 상 호 : · 대표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기 타			
◦ 수리목적 :			
◦ 첨부서류 1. 원가계산서 1부 2. 산출기초조사서(견적서 포함 및 일위대가표) 1부 3. 제조(수리) 규격 및 시방서 1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전산파일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1.12.12 규칙 제2667호)

인쇄물계약 심사요청서

발주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건 명					
산출금액	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 상 호 : (대 표 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 인쇄물내역 1. 규 격 : 절(mm × mm)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g), 내지 (g) 5. 인쇄색도 : 표지 도(단·양면), 내지 도(단·양면)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					
○ 첨부서류 1. 인쇄물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이행요청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전산파일 6.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별지 제6호서식)

인쇄물기획편집계약 심사요청서

발주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건 명					
산출금액	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 상 호 : (대 표 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 기획편집내역 1. 규 격 : 2. 용 지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기타(특수작업비용 : 도표, 일러스트 등)					
○ 첨부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사양서 또는 과업지시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전산파일 5.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별지 제7호서식) 삭제 <2009.9.10 규칙 제2581호>

(별지 제8호서식)(개정 2009.9.10 규칙 제2581호)(개정 2011.12.12 규칙 제2667호)

공사 설계변경 심사요청서

공 사 명		발주부서	
공사위치		공사구분	종합, 전문, 기타
공사기간	(개월)	계약방법	
요청금액	◦ 계약금액: 천원 - 도 급 비: - 관 급 비: ◦ 설계변경요청금액: 천원 - 도 급 비: - 관 급 비:	금회 사용가능한 예산액	계: 천원 - 공사비 : - 보상비 : - 기 타 :
시 공 자	상호 : 대표자 : 현장대리인 : (전화 :)		
감 리 자	상호 : 대표자 : 책임감리원 : (전화 :)		
발 주 자	담당자 : (전화 :)		
공사개요			
◦ 설계변경사유:			
◦ 첨부서류 1. 설계도서 각1부(원가계산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등) 2. 설계변경 이유조서, 설계변경에 따른 물량변경, 금액변경내역 3. 제1호 및 제2호의 설계도서 전산파일(내역서:엑셀파일, 도면:Auto Cad)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순 서

제1절 통 칙

제2절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제3절 적격심사에 따른 입찰의 예정가격 결정

제4절 감정가격 등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1관 통 칙

제2관 제조 원가계산

제3관 공사 원가계산

제4관 학술용역 원가계산

제5관 그밖의 용역의 원가계산

제6절 실적공사비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1관 통 칙

제2관 실적공사비 원가계산

제7절 원가계산 관련기관

제1관 원가계산용역기관

제2관 원가검토기관

제8절 보칙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1절 통 칙

1. 목적

이 요령은 법 제11조, 시행령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13조까지의 추정가격·예정가격의 작성, 원가계산·원가검토 기관의 등록 등에 적용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 가. 추정가격 :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법 제5조에 따른 국제입찰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 나. 예정가격 :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낙찰자,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입찰이나 계약 체결 전에 미리 작성 비치해 두는 가격을 말하며 개산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표준설계도 등을 기초로 하여 결정하는 개산예정가격을 포함한다.
- 다. 거래실례가격 : 시중에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을 조사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계약담당자는 제4절 “3-가”의 각 호에 따른 가격 중에서 우선순위 없이 계약목적물의 내용, 특성, 현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다.
- 라. 감정가격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나 감정평가사(「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평가업무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에 한한다)가 감정 평가한 가격을 말한다.
- 마. 전적가격 : 해당 기술력과 축적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나 제3자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가격을 말한다.

제2절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1. 추정가격의 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예산에 반영된 금액이나 해당 규격서·설계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가”부터 “라”까지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가. 단가계약의 경우는 제조·구매·수리·보수·복구·가공·매매·공급·사용 등(이하 “제조·구매·복구 등”이라 한다)의 추정단가에 예정물량을 곱한 금액

나. 개별적인 조달요구가 복수로 이루어지거나 분할되어 이루어지는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1)”과 “2)” 중 어느 하나의 금액

1) 해당 계약의 직전 회계연도나 직전 12월동안 체결된 유사한 계약의 총액을 대상으로 직후 12월 동안의 수량과 금액의 예상변동분을 고려하여 조정한 금액

2) 동일 회계연도나 직후 12월 동안에 계약할 금액의 총액

다. 물품·용역의 리스·임차·할부구매 계약과 총 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1)”과 “2)” 중 어느 하나의 금액

1) 계약기간이 정해진 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기간에 대하여 추정한 금액

2)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계약의 경우에는 1개월분의 추정지급액에 48을 곱한 금액

라. 조달하려는 대상에 선택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최대한 조달 가능한 금액

2.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 기간, 수급상황, 계약이행의 난이도, 계약조건, 그 밖의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나. 예정가격은 원칙적으로 입찰에 부칠 사항이나 수의계약의 목적이 되는 사항의 가격 총액에 대하여 결정해야 한다.

다. 희망수량입찰의 경우 예정가격은 해당 물품의 단가로 정해야 한다. 이 경우 물품의 제조·구매에 관한 입찰인 때에는 입찰에 부치고자하는 물품의 총수량을 기준으로 한 예정가격조서에 따라 해당 물품의 단가를 정해야 한다.

라. 공사계약에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고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의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이하 "장기계속공사"라 한다)의 경우와 물품의 제조·구매·복구, 용역 등의 계약에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고 설계서나 규격서 등에 따라 해당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확정된 물품의 제조·구매·복

구, 용역 등(이하 "장기물품제조 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총 공사금액이나 총제조금액 등의 범위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마. 예정가격은 계약목적물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이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제조·구매·복구 등을 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단가에 대하여 그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바.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은 시행령 제10조에 의하되, 공사에서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실적공사비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법 제3조에 따른 교육기관은 교육감)가 실적공사비 적용대상 공사기준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1) 시·도와 시·군·구는 시·도지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실적공사비를 적용해야 한다.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등 그 밖의 기관도 이를 준용한다.

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시행령 제10조 제3항에 따라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의 원가심사를 통하여 그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해야 한다.

3.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계약담당자는 다음 “가”부터 “라”까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가.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

나. 신규개발품, 특수규격품 등을 사용한 특수한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따른 가격

다.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실적공사비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가격(이하 “실적공사비에 따른 가격”이라 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유사한 거래실례가격이나 견적가격

4. 예정가격의 작성절차

가.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 아래 절차를 준용하여 작성한다.

① 추정가격 작성 → ② 설계가격 또는 조사가격 작성 → ③ 기초금액 작성 → ④ (복수예비가격 작성) → ⑤ 예정가격조서 작성 → ⑥ 예정가격 결정

나. 설계가격 또는 조사가격

기술 또는 설계 담당공무원(원가계산 용역기관 포함)등이 설계서에 따라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따른 가격 등으로 작성하거나 직접 조사하여 작성할 수 있다.

5. 예정가격 결정 시 세액합산 등

가. 예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관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을 포함해야 한다.

나. 원가계산의 비목별 원재료의 단위당 가격은 위 세액을 뺀 공급가액으로 하고, 부가가치세는 계약목적물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대상자가 부담할 비목별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해당액을 합산해야 한다.

6. 예정가격조서의 작성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이 장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예산 사정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예정가격 작성 당시의 관련법령 및 원가계산 자료를 적용하여 작성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원가계산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사유를 예정가격 조서에 명시해야 한다.

7. 예정가격의 비치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입찰이나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해당 규격서와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다음 “1)”과 “2)”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이를 갖추어 두거나 입력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의 매각 등 관련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서면에 의한 입찰이나 수의계약의 경우 : 작성된 예정가격을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나 가격협상장소 등에 갖추어 둘 것

2)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입찰이나 수의계약의 경우 : 작성된 예정가격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할 것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개산계약을 입찰할 때 표준설계도 등을 기초로 하여 개산예정가격을 작성하고 “가”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이를 갖추어 두거나 입력해야 하며 개산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8. 예정가격 작성의 예외

가. 다음의 경우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 2)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2억 원(전문 1억 원,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그 밖의 공사 8천만 원) 이하인 공사, 추정가격이 5천만 원(임차·임대는 연액 또는 총액 기준) 이하인 물품제조·구매·용역·그 밖의 계약의 경우로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다만,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해야 한다.
- 3) 시행령 제43조·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 4) 시행령 제81조·제82조에 따른 개산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 5) 시행령 제9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의 경우(이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나. 거래실례가격이 없어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로 국제입찰 적용대상인 물품과 용역 계약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되면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지역별·시기별로 가격차가 심한 경우
- 2) 특정제작자만이 제작할 수 있는 경우
- 3) 국제시세에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
- 4) 제작자의 설계에 따라서 가격차가 심한 경우
- 5) 공급자가 제시한 규격에 따라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 6) 긴급히 구매할 필요가 있어 예정가격을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9. 예정가격의 변경

시행령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와 제27조(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의 수의계약)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당초의 예정가격으로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3절 적격심사에 따른 입찰의 예정가격 결정

1. 기초금액의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계약담당자는 기술 또는 설계 담당자(원가계산용역기관·업체 등 포함) 등이 거래실례가격·원가계산가격 및 견적가격 등에 따라 조사한 가격이나 설계가격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한 기초금액을 작성해야 한다.

2. 기초금액의 확정

가. 재료비·노무비·경비 등의 물량 또는 가격이 해당 비목의 반영기준에 비하여 과다·과소 반영되어 있는 경우 이를 가감조정 한 후 부가가치세액을 합산한다.

1) 계약심사부서의 계약심사담당자는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의 원가심사를 통하여 가격의 과다과소를 검토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1)”의 검토결과를 고려하여 기초금액을 확정한다.

나. 기초금액이 가감 조정된 경우에는 예정가격조서에 그 조정내용과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3. 기초금액의 공개

작성된 기초금액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전까지 지정정보처리장치나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4. 복수예비가격의 작성

계약담당자는 기초금액에 $\pm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이하 “복수예비가격”이라 한다)을 작성하되,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0\% \sim +3\%$ 범위 안에서 7개, $0\% \sim -3\%$ 범위 안에서 8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해야 한다. 이때 복수예비가격간의 폭은 최대한 확대한다.

5. 복수예비가격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과 공개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을 실시한 후 참가자 중에서 4인(우편입찰 등으로 인하여 개찰장소에 출석한 입찰자가 없는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자

2인)을 선정하여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4개를 추첨토록 한 후 이들의 산술평균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한다.

나. 추첨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해야 하며, 예정가격 작성을 위하여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과 이외의 예비가격은 개찰장소에서 입찰참가자들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입찰 종료후 복수예비가격 15개,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와 예정가격을 입찰참가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2인 이상 전자견적에 따른 수의계약이거나,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라 적격심사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지정 정보처리장치를 관리하는 자가 정한 기준·절차에 따라 복수예비가격을 추첨하여 예정가격을 정한다.

6. 예정가격의 원단위 절상

계약담당자는 복수예비가격 4개를 평균한 금액을 산출한 결과 1원미만이 있을 때에는 단가입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절상해야 한다.

제4절 감정가격 등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1. 감정가격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예상 감정가격이 5백만 원 이하거나 하나의 감정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해도 예정가격 결정이 가능하다고 계약담당자가 판단한 경우에는 1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견적가격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고, 원가계산이나 실적공사비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견적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다.

3. 거래실례가격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가.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가격정보)

2)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전문가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 거래가격, 물가자료, 유통물가, 물가정보 등

-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가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 4) 법령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에서의 거래실례가격

나. 일반관리비와 이윤의 산출방법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때는 거래실례가격에는 이미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따로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공사원가계산방식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거래실례가격으로 작성된 사급자재(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해당공사 시공에 투입하는 자재)는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직접재료비에 반영하여 일반관리비·이윤 등의 요율이 반영되어야 한다.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1관 통 칙

1. 원가계산의 분류

원가계산은 제조 원가계산, 공사 원가계산 및 용역 원가계산으로 구분하되, 용역원가계산에 관하여는 제4관과 제5관에 따른다.

2. 원가계산의 비목

원가계산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분 작성한다.

3. 비목별 가격결정의 원칙

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는 아래 산식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 1) 재료비=재료량 × 단위당가격
- 2) 노무비=노무량 × 단위당가격
- 3) 경 비=소요(소비)량 × 단위당가격

나.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별 단위당 가격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계산한다.

다.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과 그 물량(재료량, 노무량, 소요량) 산출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규격서, 설계서 등에 의하거나 제8절 “2-가”에 따른 원가계산 자료를 근거로 하여 산정해야 한다.

라. “다”의 각 세비목과 그 물량산출을 할 때에는 계약목적물의 내용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완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의 주의사항

가.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그 밖의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가 이 절에 따라 원가계산 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제2절 “6”에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표준품셈을 이용하여 원가계산을 하는 경우 가장 최근의 표준품셈을 이용하여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이하 “면세업체”라 한다)와 과세되는 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되, 면세업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입찰공고 문 및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2관 제조 원가계산

1. 제조원가

제조원가는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2. 작성방법

제조 원가계산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조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제조원가계산서의 일반관리비나 이윤의 다음 비목으로 반영해서는 아니 된다.

3. 재료비

가. 직접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항목을 말한다.

- 1) 주요재료비 : 계약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 2) 부분품비 : 계약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

부품, 수입부품, 외장재료와 “5-다-13)” 외주가공비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 외주품의 가치

나. 간접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제조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항목을 말한다.

- 1) 소모재료비 : 기계오일, 접착제, 용접가스, 장갑, 연마재 등 소모성 물품의 가치
- 2) 소모공구·기구·비품비 : 내용년수 1년 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소득세법에 따른 상당금액 이하인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구·기구·비품의 가치
- 3) 포장재료비 : 제품포장에 소요되는 재료의 가치

다. 재료의 구입과정에서 해당 재료와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 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로 계산한다. 다만, 재료구입 후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계산한다.

라. 계약목적물의 제조 중에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품, 연산품 등은 그 매각액이나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한다.

4. 노무비

가. 직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가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항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본급의 년 400%,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이 인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 1) 기본급 : 「통계법」 제4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 가격이나 기획재정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단위당 가격으로서 그 단가에는 기본급의 성격을 갖는 정근수당·가족수당·위험수당 등이 포함된다.
- 2) 제수당 : 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시간외 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 등 작업에서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 3) 상여금
- 4) 퇴직급여충당금

나. 간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직접 제조 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보조 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이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가”의 내용을 준용하여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

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 직접노무비는 제조공정별로 작업인원, 작업시간, 제조수량을 기준으로 계약 목적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노무량을 산정하고 노무비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 \text{직접노무비} = \text{노무량} \times \text{노무비 단가}$$

라. 간접노무비는 제8절 “2-가”에 따른 원가계산 자료를 활용하여 직접노무비에 대하여 간접노무비율(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을 곱하여 계산한다.

$$* \text{간접노무비} = \text{직접노무비} \times \text{간접노무비율}$$

마. “라”의 간접노무비는 “다”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다만, 제조 작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작업 현장의 기계화, 자동화 등)에는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간접노무비를 직접노무비보다 초과하여 반영할 수 있다.

5. 경비

가. 경비는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소비된 제조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해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나. 경비의 산출

경비는 해당 계약목적물 제조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제8절 “2-가”에 따른 원가계산 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활용하여 산정해야 한다.

다. 경비의 세비목

- 1) 전력비, 수도광열비 :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해당 비용을 말한다.
- 2) 운반비 :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는 운반비로서 원재료나 완제품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 등을 말한다.
- 3) 감가상각비 : 제품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건물, 기계장치 등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법인세법령에서 정한 감가상각방식에 따라 기준내용연수(基準耐用年數)를 준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법인세법에서 정한 내용연수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사용되는 전용기기에 한하여 그 내용연수를 별도로 정하거나 특별상각

할 수 있다.

- 4) **수리수선비** :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선박차량 등 운반하는데 쓰는 기구, 내구성 공구, 기구제품의 수리수선비로서 해당 목적물 제조과정에서 그 원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는 것에 한한다. 다만,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대수리 수선비는 제외한다.
- 5) **특허권사용료** : 계약목적물이 특허품이거나 그 제조과정의 일부가 특허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특허권 사용계약에 따라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사용료를 그 사용비례에 따라 계산한다.
- 6) **기술료** : 해당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하우(Know-how)비용과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영하여 사업년도로부터 이연상각(移延償却)하되 그 적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 계산한다.
- 7) **연구개발비** : 해당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비로서 시험·시범 제작에 소요된 비용이나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용역비와 법령에 따른 기술개발촉진비 및 직업훈련비를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생산수량에 비례하여 배분 계산한다. 다만, 연구개발비 중 장래 계속생산으로의 연결이 불확실하여 미래수익의 증가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특별상각할 수 있다.
- 8) **시험검사비** :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한 직접적인 시험검사비로서 외부에 이를 의뢰하는 경우에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다만,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내부검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자체 시험검사비로 반영할 수 있다.
- 9) **지급임차료** :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술, 기구 등의 사용료로서 해당 계약 물품의 생산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 10) **보험료** :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며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 11) **복리후생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무자, 종업원 등에게 지급되는 의료위생 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중식과 간식제공을 위한 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작업조건유지에 직접 관련되어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 12) **보관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 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만을 반영해야 하며,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 13) **외주가공비** :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부분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와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의거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 15) **소모품비** : 작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문방구, 장부대 등 소모품을 말하며 보조재료로서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 16) **여비·교통비·통신비** : 작업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와 차량유지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 17) **세금과 공과금** : 공장이 해당 계약목적물의 제조와 직접 관련하여 부담할 재산세, 차량세 등의 세금과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 18) **폐기물처리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19) **도서인쇄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를 위한 참고서적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제작비(VTR제작비를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 20) **지급수수료** : 법률로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수수료에 한하며, 다른 비목에 반영되지 않는 수수료를 말한다.
- 21) **그 밖의 법정경비** : 위에서 열거한 항목 외에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비를 말한다.

6. 일반관리비

가. 의의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해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

로서 제조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영업비용 중 판매비 등을 제외한 소요비용(임원과 사무실직원의 급여,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 공과금, 지급임차료, 감가상각비, 운반비, 차량비, 경장시험연구개발비, 보험료 등)을 말하며 기업손익계산서를 기준하여 산정한다.

나. 일반관리비 반영방법

일반관리비는 제조원가(재료비·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 <별표1>에서 정한 일반관리비율(일반관리비가 매출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7. 이윤

가.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제조원가 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 기술료와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에 이윤율 25%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나. 비영리법인의 이윤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제3관 공사 원가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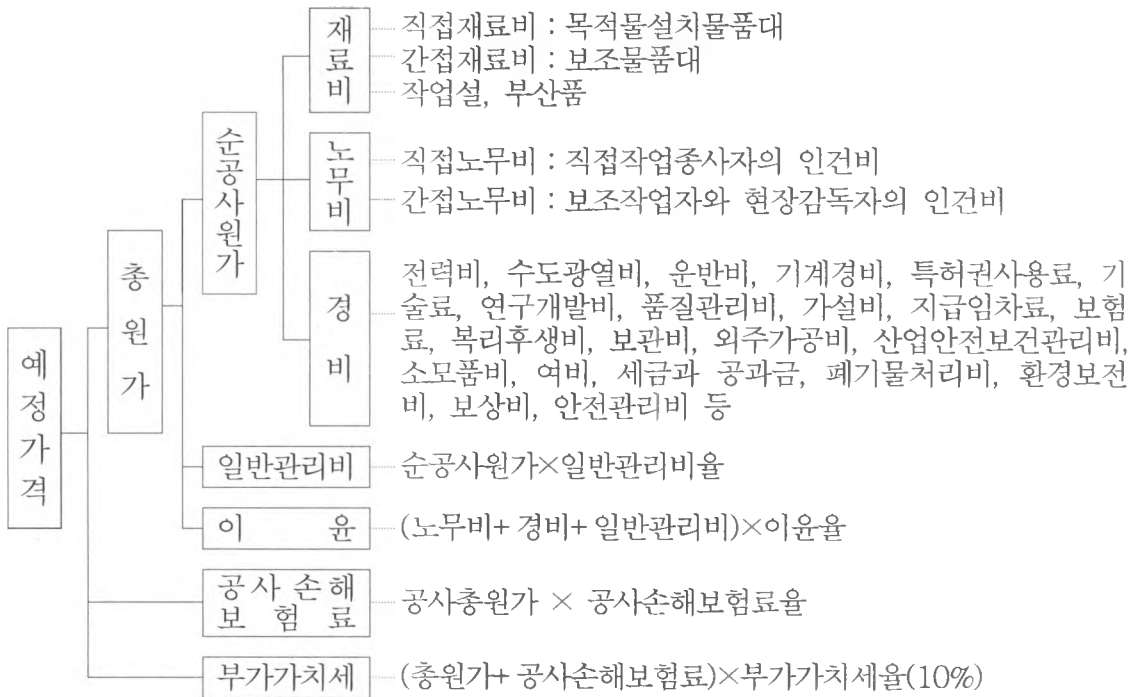
1. 공사원가

공사원가는 공사 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2. 작성방법

공사원가계산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공사원가계산서의 일반관리비나 이윤의 다음 비목으로 반영해서는 아니 된다.

3. 공사원가의 체계



4. 재료비

가. 직접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항목을 말한다.

- 1) 주요재료비 : 공사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 2) 부분품비 : 공사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부품, 수입부품, 외장재료와 “6-다-13)” 외주가공비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 외주품의 가치

나. 간접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항목을 말한다.

- 1) 소모재료비 : 기계오일·접착제·용접가스·장갑 등 소모성물품의 가치
- 2) 소모공구·기구·비품비 : 내용년수 1년 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소득세법에 따른 상당금액 이하인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구·기구·비품의 가치
- 3) 가설재료비 : 비계, 거푸집, 동바리등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그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재의 가치

다. 부대비용의 처리

재료의 구입과정에서 해당 재료와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 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로 계산한다. 다만 재료구입 후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계산한다.

라. 재료비의 공제

계약목적물의 시공 중에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품, 연산품 등은 그 매각액이나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한다.

5. 노무비

가. 노무비의 내용은 제5절의 제1관 “3”과 제2관 “4”를 준용한다.

나. 공사의 경우 간접노무비의 계산방법

1) 직접반영방법

가) 반영기준

발주목적물의 노무량을 산정하고 노무비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 간접노무비 = 노무량 × 노무비단가

나) 반영방법

- (1) 노무비단가는 「통계법」 제4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가격(시중노임단가 등)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일정기간 이상 근로하는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 상여금(기본급의 년 400%)을 반영한다.
- (2) 노무량은 품셈에 따라 반영되는 노무량을 제외하고, 현장관리사무소에서 현장시공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노무량을 반영한다.
- (3) 간접노무비(현장관리인건비)의 대상이 되는 배치인원은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 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 관리원, 공구 담당원, 시험 관리원, 교육·산재 담당원, 복지후생부문 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이다.
- (4) 노무량은 공사의 규모·내용·공종·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인원을 산정하고, 설계서(설계도면, 설계설명서, 현장설명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비율분석방법

가) 반영기준

발주목적물에 대한 직접노무비를 품셈에 따라 반영하고, 간접노무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율

나) 반영방법

- (1) 발주목적물의 특성(규모·내용·공종·기간 등) 등을 고려하여 이와 유사한 실적이 있는 업체의 원가계산 자료인 개별(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 또는 직접·간접 노무비 명세서를 확보한다.
- (2) 노무비 명세서(임금대장)를 이용한 간접노무비율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 (가) 개별(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에 대한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를 확보한다.
 - (나) 확보된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의 직·간접노무비를 구분하되, 구분할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간접노무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기간에 해당하는 자료만 분석한다.
 - (다)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에서 품셈에 따라 반영되는 노무량을 제외하고, 현장관리사무소에서 현장시공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노무비(간접노무비)를 계산한다.
 - (라) 계산된 간접노무비를 직접노무비로 나누어 간접노무비율을 산출한다.
- (3) 직접·간접 노무비가 구분된 「직접·간접 노무비 명세서」를 확보한 경우에는 “(2)”의 임금대장을 이용한 간접노무비율 계산방법에 따라 자료와 내용을 검토하여 간접노무비율을 계산한다.

3) 그 밖의 보완적 반영방법

직접반영방법이나 비율분석방법에 따라 간접노무비를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목적물의 내용·특성 등으로 인하여 원가계산 자료를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확보된 자료가 신빙성이 없어 원가계산 자료로서 활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아래의 원가계산 자료(공사종류 등에 따른 간접노무비율)를 참고로 활용하여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내용·공종·기간 등의 특성을 고려한 간접노무비율을 산출하고, 간접노무

비는 품셈에 따른 직접노무비에 산출한 간접노무비율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구 분	공사종류별	간접노무비율	비고
공사종류별	건축공사	14.5	
	토목공사	15.0	
	특수공사(포장, 준설 등)	15.5	
	그 밖의 공사(전문·전기·통신 등)	15.0	
공사규모별	50억 원 미만	14.0	
	50억 원 이상 ~ 300억 원 미만	15.0	
	300억 원 이상	16.0	
공사기간별	6개월 미만	13.0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15.0	
	12개월 이상	17.0	

※ 공사규모가 100억 원이고 공사기간이 15개월인 건축공사의 경우

[예시] 간접노무비율 = (15% + 17% + 14.5%) / 3 = 15.5%

6. 경비

가. 경비의 개념

경비는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해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나. 경비의 산출

경비는 해당 계약목적물 시공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제8절 “2-가”에 따른 원가계산 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활용하여 산정해야 한다.

다. 경비의 세비목

- 1) 전력비, 수도광열비 :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해당 비용을 말한다.
- 2) 운반비 :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은 운반비로서 원재료·반재료·기계기구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등을 말한다.
- 3) 기계경비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

한 품셈의 건설기계의 경비 산정기준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 4) **특허권사용료** : 타인 소유의 특허권을 사용한 경우에 지급되는 사용료로서 그 사용비례에 따라 계산한다.
- 5) **기술료** : 해당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하우(Know-how)비용과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영하여 사업년도로부터 이연상각(移延償却)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 계산한다.
- 6) **연구개발비** : 해당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비로서 시험·시범제작에 소요된 비용이나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 용역비와 법령에 따른 기술개발촉진비와 직업훈련비를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 계산한다. 다만, 연구개발비 중 장래 계속시공으로서의 연결이 불확실하여 미래수익의 증가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특별상각할 수 있다.
- 7) **품질관리비** : 해당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련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을 말하며, 품질시험과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다른 비목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다.
- 8) **가설비** :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현장사무소, 창고, 식당, 숙소, 화장실 등 그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가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노무비, 재료비 포함)을 말한다.
- 9) **지급임차료** :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계기구(건설기계를 제외한다)의 사용료를 말한다.
- 10) **보험료** :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고, 그 보험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반영하며, 재료비에 반영되는 보험료는 제외한다. 다만 공사손해보험료는 제5절 제3관 "9"에 정한 바에 따라 별도로 반영된다.
- 11) **복리후생비** :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종사하는 노무자·종업원·현장사

무소직원 등에게 지급되는 의료위생 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 등 작업조건 유지에 직접 관련되어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 12) **보관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만을 반영해야 하며,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다.
- 13) **외주가공비** :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외주가공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와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의거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 15) **소모품비** : 작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문방구, 장부대 등 소모용품을 말하며, 보조재료로서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다.
- 16) **여비·교통비·통신비** : 시공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와 차량유지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 17) **세금과 공과금** : 시공현장에서 해당 공사와 직접 관련하여 부담할 재산세, 차량세, 사업소세 등의 세금과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 18) **폐기물처리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19) **도서인쇄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참고서적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제작비(VTR제작비를 포함한다) 및 공사시공기록책자 제작비등을 말한다.
- 20) **지급수수료** : 시행령 제51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3항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 법령으로서 지급이 의무화된 수수료를 말한다. 이 경우 보증서 발급수수료는 보증서 발급기관이 최고 등급업체에 대해 적용하는 보증요율 중 최저요율을 적용하여 반영한다.
- 21) **환경보전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제반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위

한 것으로서, 관련법령에 따라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비용을 말한다.

- 22) **보상비** : 해당 공사로 인해 공사현장에 인접한 도로·하천·그 밖의 재산이 훼손되거나 지장물을 철거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보상·보수비를 말한다. 다만, 해당 공사를 위한 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
- 23) **안전관리비** :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 24)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부금비** : 관계법령에 따라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제5절의 제2관 “4-가-4)”와 제3관 “5-가”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산정하여 반영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다.
- 25) **그 밖의 법정경비** : 위에서 열거한 항목 외에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비를 말한다.

7. 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의 내용은 제5절 제2관 “6”과 같고 <별표 1>에서 정한 일반관리비율을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으며, 아래와 같이 공사규모별로 체감 적용한다.

종합공사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공사원가	일반관리비율(%)	공사원가	일반관리비율(%)
50억 원 미만	6.0	5억 원 미만	6.0
50억 원 이상~300억 원 미만	5.5	5억 원 이상~30억 원 미만	5.5
300억 원 이상	5.0	30억 원 이상	5.0

8. 이윤

- 가.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공사원가 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 기술료와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에 이윤율 15%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 나. 비영리법인의 이윤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9. 공사손해보험료

가. 공사손해보험료의 개념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할 때 지급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보험가입대상 공사부분의 총 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사손해 보험료율을 곱하여 반영한다.

* 공사 손해보험료 = 총공사원가 × 손해보험료율

나. 공사손해보험료의 산출

발주기관이 지급하는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보험가입 대상 공사부분의 총 공사원가와 관급자재를 합한 금액에 공사손해보험료율을 곱하여 반영하며 보험료율은 계약담당자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한다.

제4관 학술용역 원가계산

1. 용어의 정의

가. 학술연구용역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 1)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 아래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 2)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 3)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나. 책임연구원

해당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용역의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연구원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라. 연구보조원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해당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 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마. 보조원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원가계산 비목

원가계산은 노무비(이하 “인건비”라 한다), 경비, 일반관리비등으로 구분 작성한다. 다만, 공동연구형 용역과 자문형 용역의 경우에는 경비항목 중 최소한의 필요항목만 반영하고 일반관리비는 반영하지 아니한다.

3. 원가계산 작성방법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서 정한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해야 한다.

4. 인건비

가. 개념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를 말하며, 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를 기준하여 <별표 2>에서 정한 기준단가와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년 400%,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나. 인건비 산정기준

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년도부터는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만큼 인상한 단가를 기준단가로 한다.

5. 경비

계약목적에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내용의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및 감가상각비를 말한다.

가. 여비

1) 여비의 반영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하여 반영하되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며 관계공무원의 여비는 반영할 수 없다.

2) 국내여비의 반영

시외여비만을 반영하되 연구에 필요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책임연구원은 「공무원 여비규정」 제3조 관련 별표 1(여비 지급 구분표) 제1호 등급,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은 같은 표 제2호 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유인물비 : 계약목적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 복사비(지대 포함)를 말한다.

다. 전산처리비 :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와 그 부대비용을 말한다.

라. 시약·연구용 재료비 : 실험실습에 필요한 해당 비용을 말한다.

마. 회의비 :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의,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며, 참석자의 수당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조례, 규칙 등으로 정한 위원회 위원수당 기준을 준용한다.

바. 임차료 : 연구내용에 따라 특수실험 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혹은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사용을 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반영할 수 있다.

사. 교통통신비 : 해당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아. 감가상각비 : 해당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특수실험 실습기구·기계장치에 대하여 제5절 제2관 “5-다-3)”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단, 임차료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6. 일반관리비 등

가. 일반관리비의 반영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일반관리비율 5%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나. 이윤

- 1) 영업이익을 말하며,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이윤율 10%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 2) 비영리법인의 이윤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7. 계약담당자의 주의의무

- 가. 학술연구용역을 의뢰할 때에는 해당 연구에 대한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를 엄선하여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 나. 계약담당자는 학술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상대자의 최근년도 원가계산 자료(급여명세서, 손익계산서 등)를 활용하여 “4”의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과 “6-가”의 일반관리비가 과다 반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5관 그 밖의 용역의 원가계산

1. 그 밖의 용역의 원가계산

- 가. 엔지니어링사업, 측량용역,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
- 나. 원가계산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그 밖의 용역은 “가”와 제5절 제4관의 학술용역 원가계산 기준에 준하여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순용역(원가계산 기준이 없는 경우에 한함)에 대한 인건비의 기준단가는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제조부문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 중 보통인부 노임으로 하고,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년 400%,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작성 시 주요기준

-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 (한국SW산업협회)
- 측량용역 대가의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건설공사 감리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설계·감리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건설공사 안전점검 대가 산정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공공 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측량대가의 기준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 공무원 여비규정 (대통령령-안전행정부 소관)
- 노임단가 기준
 - 시중노임단가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
 - 제조업 노임단가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직종별 임금조사보고서)
 -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보고서)
 - 측량기술자 임금 공표 (국토교통부, 대한측량협회)
 - 감리원 임금 공표 (국토교통부, 한국건설감리협회)
 - S/W 기술자 노임단가 (한국SW산업협회)

◆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작성 시 경비의 세비목별 요율 산출 참고자료

- 산업재해보험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 사업종류별 산업재해보상 보험료율 (고용노동부 고시)

- 고용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12조)
- 폐기물처리비
 - 폐기물관리법 제3조의2(폐기물관리의 기본원칙), 동법 시행령 제2조(사업장의 범위),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 폐기물관리법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와 동법 시행규칙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등)
- 공사이행보증 수수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계약의 이행보증)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건설하도급 계약이행과 대금지급 보증)
- 환경보전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6 환경관리비 산출기준)
- 품질관리비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 14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
- 감가상각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별표5, 별표6호의 기준내용연수 적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동시행령 제26조의6, 동시행규칙 제32조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 안전관리비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 제8항, 동시행규칙 제51조 안전관리비)
-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와 동법 시행령 제83조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고용노동부 소관)

제6절 실적공사비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1관 통 칙

1. 의 의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공사비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된 가격을 말한다.

2. 적용범위

실적공사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다만, 소규모공사, 전문공사, 보수·유지관리공사,

건물의 증개축공사, 복합건축시설물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책임 하에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3. 실적공사비 자료관리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적공사비 자료의 축적을 위하여 실시설계용역의 성과품 중 설계예산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 및 수량산출서 등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작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공종 및 단가」와 품셈 등의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할 경우에는 실적공사비 단가와 품셈 등에 의해 산출된 단가가 상호 모순되지 않도록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4. 실적공사비 예정가격

실적공사비의 예정가격은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5. 실적공사비 예정가격의 작성

가. 계약담당자는 실적공사비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예정가격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및 부가가치세로 구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총괄 집계표를 작성해야 한다.

나. 실적공사비에 따른 예정가격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정한 기준 등에 따른 산출근거를 첨부해야 한다.

6. 계약담당자 주의사항

계약담당자가 실적공사비를 적용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제2절 “6”에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제2관 실적공사비 원가계산

1. 직접공사비

가. 직접공사비란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계약목적물을 세부 공종(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정한 수량산출기준에 따라 공사를 작업 단계별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별로 구분하여 공종별 단가에 수량(계약목적물의 설계서 등에 의해 그 완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단위와 방법으로 산출된 공사량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정한다.

* 직접공사비 = 수량 × 공종별 단가

나. 직접공사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포함한다.

1) 재료비

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거나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를 말한다.

2) 직접노무비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3) 직접공사경비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기계경비, 운반비, 전력비, 가설비, 지급임차료, 보관비, 외주가공비, 특허권 사용료, 기술료, 보상비,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폐기물처리비 및 안전점검비를 말하며,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제5절 제3관 “6”을 준용한다.

다. “가”의 공종별 단가를 산정할 때 재료비나 직접공사경비 중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외 할 수 있는 금액은 별도로 해당 계약목적물 시공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산정해야 한다.

라. 직접공사비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가 지정하는 기관이 공종별로 직접공사비 범위 안에서 조사집계하여 비치한 금액을 활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2. 간접공사비

가. 간접공사비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법정경비와 그 밖의 부수적인 비용을 말하며, 직접공사비 총액에 비용별로 일정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간접공사비는 다음 항목의 비용을 포함하며,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제5절의 제2관 “4-나”와 제3관 “6”을 준용한다.

1) 간접노무비

2) 산재보험료

- 3) 고용보험료
 - 4)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 5) 안전관리비
 - 6) 환경보전비
 - 7) 국민건강보험료
 - 8) 국민연금보험료
 - 9) 그 밖의 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경비로서 공사 원가 계산에 반영토록 명시된 법정경비
 - 10) 그 밖의 간접공사경비(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도서인쇄비 및 지급수수료를 말한다.)
- 다. “가”의 일정요율이란 관련법에 의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법정요율을 말한다. 다만 법정요율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이 있는 기관의 통계자료 중 다수기업의 평균치 등을 토대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가 정한다.
- 라. “1”에 따라 산정되지 아니한 공중에 대하여도 간접공사비 산정은 “가”부터 “다”까지를 적용한다.

3. 일반관리비

- 가.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해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종류에 대하여는 제5절 제2관 “6-가”를 준용한다.
- 나. 일반관리비는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의 합계액에 일반관리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일반관리비율은 공사규모별로 아래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종합공사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및 그 밖의 공사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율(%)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율(%)
50억 원 미만	6.0	5억 원 미만	6.0
50억 원 이상~300억 원 미만	5.5	5억 원 이상~30억 원 미만	5.5
300억 원 이상	5.0	30억 원 이상	5.0

4. 이윤

가.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이윤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이윤율은 10%를 초과할 수 없다.

나. 비영리법인의 이윤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5. 공사손해보험료

제5절 제3관 “9” 공사손해보험료와 제1장 제5절 공사 손해보험 운용에 따른 공사손해보험가입 비용을 말한다.

제7절 원가계산 관련기관

제1관 원가계산용역기관

1. 원가계산용역기관 요건

가.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이하 “용역기관”이라 한다)이 될 수 있는 기관은 “나”에 해당되는 기관으로서 “다”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나. 용역대상기관

-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 투자기관이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출연한 연구기관
-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연구소
- 3) 「민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4)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

다. 용역기관 요건

- 1) 정관(학칙, 연구소 규정 등) 중 목적 등에 원가계산업무가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 2) 구성인력은 다음 항목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10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가) 원가계산과 원가검토 업무에 종사(연구기간 포함)한 경력(이하 “경

력”이라 함)이 5년 이상인 자 2인 이상, 3년 이상인 자 4인 이상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제도와 계약업무에 근무한 경력 포함)

나) 이공계 대학 학위소지자나 이공계로서 <별표 3>의 이공계 기술자격 기준에 따른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 이상

다) 상경대학 학위소지자나 상경계로서 <별표 3>의 상경계열 자격기준에 따른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 이상

라) 학교 연구소의 경우 상시고용 인원은 대학(교) 직원이나 그 부설연구소 직원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 인원 중 교수(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포함)는 1인으로 한다.

3) 기본재산(최근연도 정기 결산서에 따른 실질자본금 또는 기금)이 1억 원(학교 연구소에 해당되는 기관에 있어서는 5천만 원)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실질자본금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2. 원가계산용역 의뢰 시 주의사항

가.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용역을 의뢰할 때 “1”에 정한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1”의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용역기관들의 단체로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서 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경우 해당 용역기관의 장과 다음 항목의 사항을 명백히 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항목의 사항을 준용하여 각서 등을 징구해야 한다.

- 1) 부실 원가계산 시 그 책임에 관한 사항
- 2)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 3) 원가계산 내용의 보안유지에 관한 사항
- 4) 그밖에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다. 계약담당자는 최종원가계산서에 해당 용역기관의 장 [대학(교)연구소의 경우에는 연구소장] 과 책임연구원이 직접 확인·서명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용역기관에서 제출한 최종 원가계산서의 내용이 지방계약 법령과 이 예규 제2장 및 계약서 등의 용역조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원가계산의 적정을 기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본사 이외에 지사, 지부, 출장소 또는 연락사무소 등과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용역기관이 자격요건 심사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제출한 경우 또는 원가계산용역을 부실하게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원가계산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해당 용역기관의 주무관청 등 감독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2관 원가검토기관

1. 원가검토기관 요건

가.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따른 원가검토기관(이하 “원가검토기관”이라 한다)이 될 수 있는 기관은 “나”에 해당되는 기관으로서 “다”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나. 원가검토대상기관

-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 투자기관이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출연한 연구기관
-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연구소
- 3) 「민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이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4)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

다. 원가검토기관의 요건

- 1) 정관(학칙, 연구소 규정 등) 중 목적 등에 원가검토업무가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 2) 구성인력은 다음 항목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10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가) 원가계산과 원가검토 업무에 종사(연구기간 포함)한 경력이 6년 이상인 자 1인 이상, 5년 이상인 자 2인 이상, 3년 이상인 자 3인 이상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제도와 계약업무에 근무한 경력 포함)

나) 이공계 대학 학위소지자나 이공계로서 <별표 3>의 이공계 기술자격 기준에 따른 중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 이상

다) 상경대학 학위소지자나 상경계로서 <별표 3>의 상경계열 자격기준에 따른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 이상

라) 학교 연구소의 경우 상시고용인원은 대학(교) 직원이나 대학(교) 부설연구소 직원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 인원 중 교수(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포함)는 1인으로 한다.

3) 기본재산(최근연도 정기 결산서에 따른 실질자본금 또는 기금)이 1억원(학교 연구소에 해당되는 기관에 있어서는 5천만 원)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실질자본금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라. 원가검토기관의 사무위탁 범위

1)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원가산정내용의 적정성 여부 검토

2)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설계서, 과업이행요청서, 법 제22조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등과 관련된 원가산정내용의 적정성 검토

3)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가계산과 예정가격 작성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원가검토 위탁 시 주의사항

가. 계약담당자는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1”의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 중에서 해당 사무의 수행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전문기관과 위탁수수료와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원가계산용역을 수행한 기관에 대하여는 해당 용역에 대한 원가검토를 위탁할 수 없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위탁받은 원가검토사무를 수행할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때 다음 항목의 사항을 명백히 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특히 지방계약법령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탁받은 계약사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 협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손해

배상 등 법적 책임이 전문기관에게 있다는 것을 협약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항목의 사항을 준용하여 각서 등을 징구해야 한다.

- 1) 부실 원가검토 시 그 책임에 관한 사항
- 2)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 3) 원가검토 내용의 보안유지에 관한 사항
- 4) 그밖에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다. 계약담당자는 최종 원가 검토서에 해당 원가검토기관의 장 [대학(교) 연구소의 경우에는 연구소장] 과 책임연구원이 직접 확인·서명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라. “가”의 위탁수수료는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 그 사무 관리에 필요한 경비와 일반관리비 등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하며, 사무의 위탁에 따른 이행보증에 관하여는 시행령 제51조를 준용할 수 있다.

마. 계약담당자는 원가검토기관에서 제출한 최종원가검토서의 내용이 지방계약법령, 이 예규 제2장 및 계약서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원가검토의 적정을 기해야 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원가검토용역을 의뢰할 때 “1”에 정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1”의 요건을 갖춘 원가검토기관들의 단체로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서 그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사. 계약담당자는 본사 이외에 지사, 지부, 출장소 또는 연락사무소 등과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원가검토기관이 자격요건 심사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제출한 경우 또는 원가검토용역을 부실하게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원가검토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해당 용역기관의 주무관청 등 감독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8절 보 칙

1. 특례사항

계약담당자는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이 장에 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례를 설정할 수 있다.

2. 자료 비치 등

가. 원가계산 자료의 비치와 활용

- 1)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계약상대자로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2개 업체 이상의 최근년도 원가계산 자료(수의계약 대상업체의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최근년도 원가계산 자료)의 계약목적물에 관계되는 수치 또는 그 업체의 제조(공정)확인 결과를 활용하여 제조(공사)원가의 비목별 가격 결정과 일반관리비 반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적용할 수 있다.
- 2) 계약담당자는 공사원가계산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품셈을 공사원가의 비목별 가격결정의 기초자료로 적용할 수 있으며, 그 품셈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을 준용한다.

나. 외국통화로 표시된 재료비의 환율적용

- 1)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을 산출할 때 외국통화로 표시된 재료비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3. 세부 시행기준

가. 이 장을 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안전행정부장관이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별표 1>

일 반 관 리 비 율

업 종	일반관리비율(%)
◦ 제조업	
음·식료품의 제조·구매	14
섬유·의복·가죽제품의 제조·구매	8
나무·나무제품의 제조·구매	9
종이·종이제품·인쇄출판물의 제조·구매	14
화학·석유·석탄·고무·플라스틱제품의 제조·구매	8
비금속광물제품 제조·구매	12
제1차 금속제품의 제조·구매	6
조립금속제품·기계·장비의 제조·구매	7
그 밖의 물품 제조·구매	11
◦ 시설공사업	6

주1) 업종 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별표 2>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2013년 기준)

등 급	월 임 금
책임연구원	월 2,980,044원
연 구 원	월 2,285,056원
연구보조원	월 1,527,485원
보 조 원	월 1,145,653원

주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주2) 위 단가는 2013년도 기준단가이며, 2014년 이후의 단가산출은 위 단가를 기준으로 “연도별 소비자물가 등락률”(통계청 발표)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별표 3>

원가계산용역과 원가검토기관 관련 기술자 등급과 자격기준

구분 \ 기준	이공계 기술자격 기준	상경계열 자격기준	비고
기 술 사	기술사	-	
특급기술자	기사 10년 이상 산업기사 13년 이상	박사 3년 이상, 석사 9년 이상, 학사 12년 이상, 전문대졸 15년 이상	
고급기술자	기사 7년 이상 산업기사 10년 이상	박사, 석사 6년 이상, 학사 9년 이상, 전 문대졸 12년 이상, 고졸 15년 이상	
중급기술자	기사 4년 이상 산업기사 7년 이상	석사 3년 이상, 학사 6년 이상, 전문대졸 9년 이상, 고졸 12년 이상	
초급기술자	기사, 산업기사	석사, 학사, 전문대졸, 고졸 3년 이상	
고급기능사	기능장 산업기사 4년 이상 기능사 7년 이상 기능사보 10년 이상	기능대졸 4년 이상, 전문대졸 4년 이상, 고졸 7년 이상,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 수 후 7년 이상, 기능실기시험 합격 후 10년 이상	
중급기능사	산업기사 기능사 3년 이상 기능사보 5년 이상	기능대졸, 전문대졸, 고졸 3년 이상, 직 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 후 5년 이상, 기 능실기시험 합격 후 5년 이상, 그밖에 10년 이상	
초급기능사	기능사, 기능사보	고졸,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자, 기능 실기시험 합격자, 그밖에 5년 이상	

주1) 기술자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와 동법 시행령 제2조
에 정한 엔지니어링 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자로 한다.

2) 한국과학기술원 기술용역기술사과정 이수자는 중급기술자로 한다.

3) 교육부장관이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학력경험의 기준에
따른다.

4) 학력경험의 기준은 관련분야에 종사하여 실무경험이 있는 자를 말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 조 원 가 계 산 서

품명 :

생산량 :

규격 :

단위 :

제조기간 :

비 목			구 분	금액	구성비	비고
제 조 원 가	재 료 비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작업설·부산물 등(△)				
		소 계				
	노 무 비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				
		소 계				
	경 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특허권 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시험검사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폐기물 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그밖의 법정경비				
		소 계				
일 반 관 리 비 ()%						
이 윤 ()%						
총 원 가						

<별지 제2호 서식>

공사원가계산서

공사명 :

공사기간 :

비 목		구 분	금액	구성비	비고
순 공 사 원 가	재 료 비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작업설·부산물 등 (△) 소 계			
	노 무 비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			
		소 계			
	경 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기계경비			
		특허권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가설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폐기물 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보상비					
안전관리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그 밖의 법정경비					
소 계					
일 반 관 리 비		[(재료비+노무비+경비)×()%]			
이 윤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종 원 가					
공사손해보험료		보험가입대상공사부분의종원가×()%			

<별지 제3호 서식>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서

구 분 비목	금 액	구성비	비 고
인건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경비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감가상각비			
일반관리비()%			
이 윤()%			
총 원 가			

<별지 제4호 서식>

원가계산과 원가검토용역 수행에 따른 보안각서

본인은 20 년 월 일 ~ 월 일까지 「○○사업」의 원가계산(검토)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사업명」의 원가계산(검토)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 수행의 내용과 결과 등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본인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민·형사상 어떠한 제재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참 여 자 :

성 명 : (인)

성 명 : (인)

○○시·도 경리관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실적공사비 총괄 집계표

공사명 :

공사기간 :

구 분		금 액	구성비	비 고
직 접 공 사 비				
간 접 공 사 비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그 밖의 법정경비			
일 반 관 리 비				
이 윤				
공사손해보험료				
부 가 가 치 세				
합 계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

순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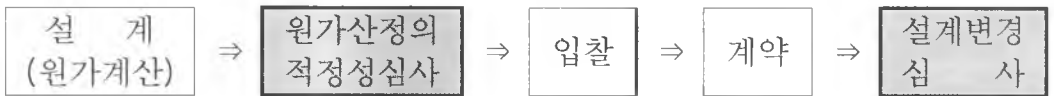
- 제1절 계약심사제도의 의의
- 제2절 계약심사대상 사업
- 제3절 계약심사업무 처리절차
- 제4절 원가심사
- 제5절 설계변경 심사
- 제6절 보칙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

제1절 계약심사제도의 의의

1. 계약심사제도의 개념

가. 계약심사제도는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계약을 하기 위한 기초금액·예정가격,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하는 제도이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0조 제3항과 제74조 제8항에 따라 예정가격(기초금액 포함)과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해야 한다.

2. 계약심사제도의 운영

가. 시·도는 “1-나”의 심사업무를 위하여 계약심사 전담조직을 설치해야 하며, 시·군·구는 계약심사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나. 계약심사담당자는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1-나”의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다. 계약심사담당자는 “1-나”의 심사업무를 할 때 금액의 과다·과소 산정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계약목적물의 품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3. 계약심사의 구분

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금액을 작성할 때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원가산정의 적정성 심사(이하 “원가심사”라 한다)를 해야 한다. 원가심사의 주요 심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설계서간 불일치 사항 여부
- 2) 원가계산 작성방식 및 실적공사비 적용의 적정성
- 3) 표준품셈 등 대가 산정기준 적용의 적정성

4) 각종 법정경비요율의 적정성

5) 가격정보, 전문가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견적가격 등 가격결정의 적정성

6) 산출된 물량의 적정 산출 여부

7) 그밖에 심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 검토 등

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사계약 체결 후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하기 전에 증감금액의 적정성 심사(이하 “설계변경심사”라 한다)를 해야 한다.

4. 유사·중복 업무의 연계 추진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심사 기능과 통합 또는 연계하여 예산절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아래와 같은 기능을 통합 또는 연계할 수 있다.

1) 설계 경제성검토(VE) 기능

2) 설계 및 공법의 적정성 검토

3) 신기술·신공법의 적용 가능성 검토

4) 그밖에 계약심사로 갈음할 수 있는 업무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심사업무가 다른 법령에 따른 업무와 유사한 경우에는 법령 범위 안에서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할 수 있다.

제2절 계약심사대상 사업

1.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가. 시·도는 다음 대상기관의 사업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계약심사를 해야 한다.

1) 시·도 계약심사 대상기관

가) 시·도 본청 및 사업소 사업

나) 시·도 설립 지방공기업 사업

다) 시·도 출연기관(단, 50%미만 출연기관은 제외) 사업

라) 시·군·구 사업 중 시·도비 또는 국비보조사업

2) 시·도 계약심사 대상사업

심사내용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원가심사	□ 공사 : 추정금액 5억 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3억 원) 이상 □ 용역 : 추정금액 2억 원 이상 □ 물품 : 추정금액 2천만 원 이상
설계변경 심 사	□ 계약금액 20억 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

나. 시·군·구는 다음 대상기관의 사업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계약심사를 해야 한다.

1) 시·군·구 계약심사 대상기관

가) 시·군·구 본청 및 사업소, 읍·면·동 사업

나) 시·군·구 설립 지방공기업 사업

다) 시·군·구 출연기관(단, 50%미만 출연기관은 제외) 사업

2) 시·군·구 계약심사 대상사업

심사내용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원가심사	□ 공사 : 추정금액 3억 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2억 원) 이상 □ 용역 : 추정금액 7천만 원 이상 □ 물품 : 추정금액 2천만 원 이상
설계변경 심 사	□ 계약금액 5억 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

다.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3절 “2-다-2)-나)”에 따라 신기술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내지 지명경쟁 입찰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심사를 통해 신기술 등의 반영 필요성과 효율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임의적 심사대상 사업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외에 심사대상 금액이나 심사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규칙 등으로 그 내용을 정해야 한다.

나. 설계변경 심사 중 설계변경 여부에 대한 타당성 심사는 사업부서가 요청하는 경우 계약심사부서에서 그 요청 건에 대한 심사 가능 여부를 고려하여 심사할 수 있다.

3. 심사제외 대상 사업

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편성되어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거나, 행정절차가 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에서 추진하거나 시급한 국가사업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심사를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1)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 2) 천재지변,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 3)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 구매는 제외 가능
예시) 상품권, 유류, 종량제 봉투, 예술품 등
-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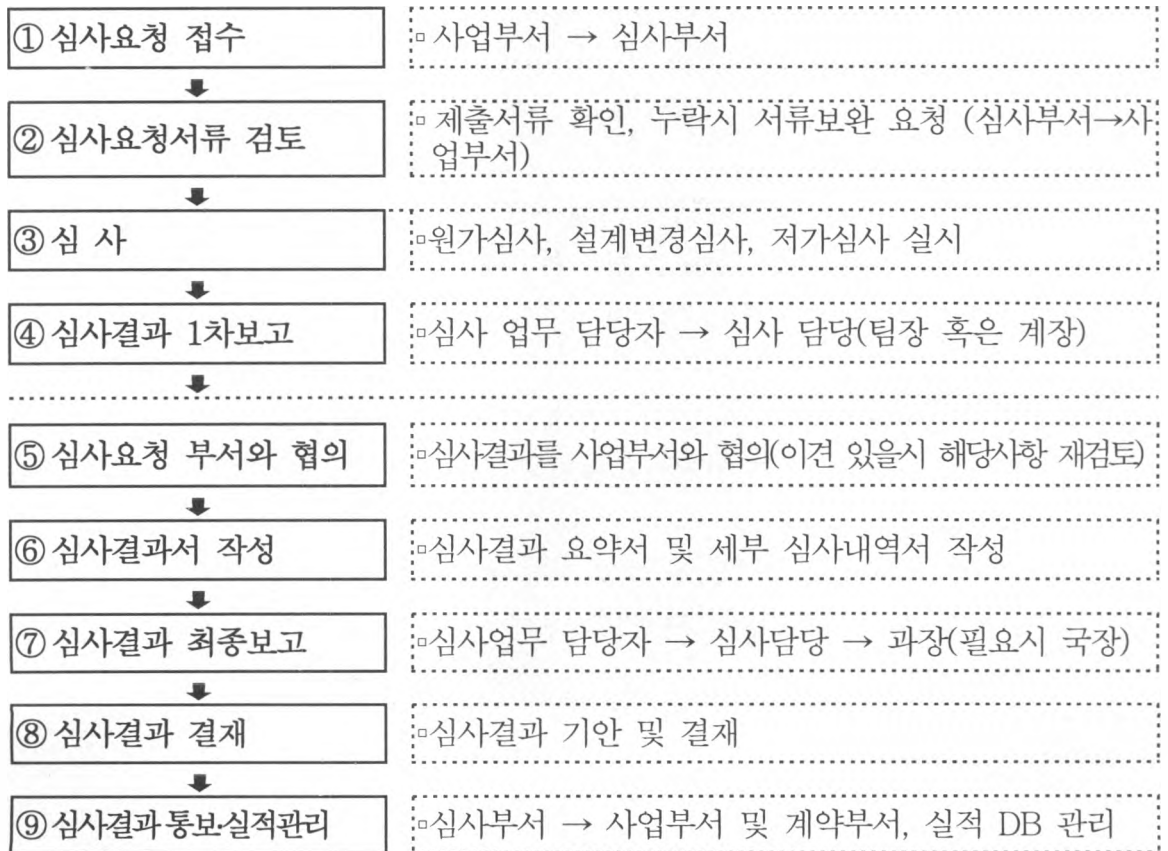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나”의 “1)·4)”에 해당하는 경우를 판단할 때 계약심사부서(시군구의 경우 시도의 계약심사부서)의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심사업무를 법 제7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한 경우는 “나”의 “4)”에 해당하는 경우로 본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지방자치단체 공사원가 사전검토)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요청한 경우
-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청 제3자단가 계약품목물품이나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 등 조달청에서 자체 원가심사에 준하는 업무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제3절 계약심사업무 처리 절차

1.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부서, 계약심사부서(시군구의 계약심사 업무담당자 포함), 계약부서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상호 협력해야 한다.
 - 가. 사업부서는 계약심사 요청 전에 제출서류를 확인하면서 설계서간 불일치 사항 또는 산출된 물량의 적정 여부 등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
 - 나. 계약부서는 계약심사부서의 심사결과와 달리 사업부서에서 계약을 의뢰한 경우 예정가격조서 상에 조정내용 및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2. 사업부서에서 심사 요청한 서류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어 계약심사부서에서 보완 요청을 한 경우 그 소요기간은 심사기간에서 제외한다.
3. 심사결과에 대하여 사업부서가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견내용을 계약부서에 통보할 수 있다. 계약부서는 그 이견내용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제4절 원가심사

제1관 공사분야 원가심사

1. 심사대상 공사의 분류

가. 공사분야 계약심사담당자는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설계서간 불일치 사항, 품셈 등 대가 산정기준과 단가 적용의 적정성, 불필요한 공종 포함 여부 등을 조사분석하여 사업비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하고, 과다과소 산정되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조정해야 한다.

나. 심사대상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 그 밖의 공사로 분류한다.

- 1) 건설공사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 및 환경시설 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 조성공사를 포함), 기계설비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 2)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제2조에 따라 전기설비 (전기사업법 제2조 제16호), 전력 사용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에 해당하는 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말한다.
- 3) 정보통신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말하고, 정보통신설비는 유선, 무선, 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자·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제어·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 4) 소방시설공사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말한다.
- 5) 문화재수리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지정문화재(무형문화재는 제외), 가지정문화재,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의 보수·복원·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말한다.
- 6) 그 밖의 공사는 위 “1)”부터 “5)”까지 정한 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공

사로 지하수 개발, 소음진동 방지시설 설치공사, 오수처리 시설 설치 공사 등을 말한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외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는 “나-6)”의 그 밖의 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2. 심사 절차

가. 사업부서는 심사요청을 할 때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계약심사담당자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누락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해야 하며, 사업부서는 그 보완요구에 응해야 한다.

1) 계약심사 요청서

2) 설계도면, 공사설계설명서(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과업내용서

3) 설계내역서(비목별 기초계산서, 수량산출서, 노무비산출근거, 기계경비산출서,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 견적서 등)

4) 그밖에 필요한 서류

▫ 소프트웨어 참고자료(엑셀 내역화일, Auto Cad 도면)

▫ 품셈과 실적공사비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품셈을 적용한 내역서와 실적공사비를 적용한 내역서

▫ 신기술·신공법을 적용한 경우 관련자료

▫ 방침서, 계획서, 기술심사조건 등 그 밖의 보조자료

나. 계약심사담당자는 관련 법령 및 대가기준, 그 밖의 심사 참고자료에 따라 산정내용의 적정성, 가격의 과다과소 등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확정한다. 이때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그 밖의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1)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2) 관련 법령에서 정한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 등)

3) 표준품셈, 실적공사비

4) 그 밖의 법정요율

5) 거래실례가격(가격정보 등)

6) 그 밖의 심사 참고자료

다. 계약심사담당자는 “나”에 따라 기초금액을 확정할 때 불가피하게 원가계산방법으로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작성할 때에는 그 조정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 라. 계약심사담당자는 심사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심사내용에 대하여 사업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 확정해야 한다.
- 마. 계약심사담당자는 “라”에 따라 확정된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동시에 통보해야 한다.
- 바. 사업부서는 “마”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사업 건에 대하여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효율성을 위하여 그 변경된 내용만을 발췌하고 그에 대한 추가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 사. “바”에도 불구하고 재심사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부서는 계약부서에 그 이견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계약부서는 그 이견내용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3. 실적 관리

- 가. 계약심사담당자는 심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해당 심사 건에 대한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하며, 사업부서에 심사결과 통보 시 그 서류 일체를 반환해야 한다. 다만, 사업부서의 결정에 따라 불필요한 서류를 반환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다.
- 나. 사업부서는 해당 사업 건에 대한 계약심사 전·후의 서류를 사업 종료 후 감사 등 사후처리 예상 종료시점까지 보관해야 한다. 사후처리 예상 종료시점은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라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3년으로 한다.
- 다. 계약심사담당자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심사 통보일을 기준으로 중앙행정기관의 통계 기준에 따라 심사한 실적을 취합하고 관리해야 한다. 동일 사업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한 경우 실적은 최종 심사통보일 및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단일 건으로 취합한다.
- 라. 중앙행정기관에서 “다”의 실적 제출을 요구한 때에는 그 취합자료를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하며, 보완사항에 대한 추가조치가 있을 때에는 정한 기한 안에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2관 용역분야 원가심사

1. 심사대상 용역의 분류

- 가. 용역분야 계약심사담당자는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과업 내용서와 설계내역서 등을 근거로 대가 산정기준과 단가 적용의 적정성, 불필요한 비목 포함 여부 등을 조사분석하여 사업비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하고, 과다과소 산정되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조정해야 한다.
- 나. 심사대상 용역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절 “3”에 따라 기술용역, 학술용역, 일반용역으로 분류한다.
- 1) 기술용역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건축사법」 제2조 제3호 및 제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 및 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다목, 「주택법」 제24조 제1항,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 2) 학술연구용역이라 함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 3) 일반용역이라 함은 기술용역과 학술연구용역을 제외한 모든 용역을 말한다.

2. 심사 절차

- 가. 사업부서는 심사요청을 할 때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계약심사담당자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누락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해야 하며, 사업부서는 그 보완요구에 응해야 한다.
- 1) 계약심사 요청서
 - 2) 과업내용서
 - 3) 설계내역서(비목별 기초계산서, 수량산출서, 노무비산출근거,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 견적서 등)
 - 4) 그밖에 필요한 서류
 - 소프트웨어 참고자료(엑셀 내역화일 등)
 - 방침서, 계획서 등 그 밖의 보조자료

나. 계약심사담당자는 관련 법령 및 대가기준, 그 밖의 심사 참고자료에 따라 산정내용의 적정성, 가격의 과다과소 등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확정한다. 이때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그 밖의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 1)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 2) 관련 법령에서 정한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 등)
- 3) 표준품셈
- 4) 그 밖의 법정요율
- 5) 거래실례가격(가격정보 등)
- 6) 그 밖의 심사 참고자료

다. 계약심사담당자는 “나”에 따라 기초금액을 확정할 때 불가피하게 원가계산방법으로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작성할 때에는 그 조정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라. 계약심사담당자는 심사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심사내용에 대하여 사업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용역수행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협의하여 확정해야 한다.

마. 계약심사담당자는 “라”에 따라 확정된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동시에 통보해야 한다.

바. 사업부서는 “마”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사업 건에 대하여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효율성을 위하여 그 변경된 내용만을 발췌하고 그에 대한 추가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사. “바”에도 불구하고 재심사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부서는 계약부서에 그 이견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계약부서는 그 이견내용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3. 실적 관리

가. 용역분야 원가심사의 실적관리는 제1관 “3”을 준용한다.

제3관 물품분야 원가심사

1. 심사대상 물품의 분류

가. 물품분야 계약심사담당자는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규격서와 설계내역서 등을 근거로 대가 산정기준과 단가 적용의 적정성, 불필요한 비목 포함 여부 등을 조사분석하여 사업비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하고, 과다과소 산정되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조정해야 한다.

나. 심사대상 물품은 물품의 제조·구매와 완제품의 구매로 분류한다.

- 1) 물품의 제조·구매는 별도의 주문에 따라 제작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해당 제조업자만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2) 완제품의 구매는 이미 제조되어진 완성품을 그대로 구입하는 것으로 제조업자는 물론 도·소매업자도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심사 절차

가. 사업부서는 심사요청을 할 때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계약심사담당자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누락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해야 하며, 사업부서는 그 보완요구에 응해야 한다.

- 1) 계약심사 요청서
- 2) 산출기초조사서
- 3) 규격서, 설명서(사양서) 등
- 4) 설계내역서(제조원가계산서, 일위대가표 등)
- 5) 그밖에 필요한 서류
 - 과업내용서, 설계설명서(시방서) 등
 - 수입물품의 경우 수입원, 수입물품원가계산서 등
 - 수리의 경우 수리명세서, 수리단위별 내역서 등
 - 임차의 경우 임차대상·기간·장소 및 임차조건 등
 - 시장재고, 유통여부 등 그 밖의 참고자료

나. 계약심사담당자는 관련 법령 및 대가기준, 그 밖의 심사 참고자료에 따라 산정내용의 적정성, 가격의 과다과소 등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확

정한다. 이때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그 밖의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 1)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 2) 관련 법령에서 정한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 등)
- 3) 표준품셈
- 4) 그 밖의 법정요율
- 5) 거래실례가격(가격정보 등)
- 6) 그 밖의 심사 참고자료

다. 계약심사담당자는 “나”에 따라 기초금액을 확정할 때 불가피하게 원가계산방법으로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작성할 때에는 그 조정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라. 계약심사담당자는 심사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심사내용에 대하여 사업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를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협의하여 확정해야 한다.

마. 계약심사담당자는 “라”에 따라 확정된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동시에 통보해야 한다.

바. 사업부서는 “마”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사업 건에 대하여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효율성을 위하여 그 변경된 내용만을 발췌하고 그에 대한 추가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사. “바”에도 불구하고 재심사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부서는 계약부서에 그 이견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계약부서는 그 이견내용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3. 실적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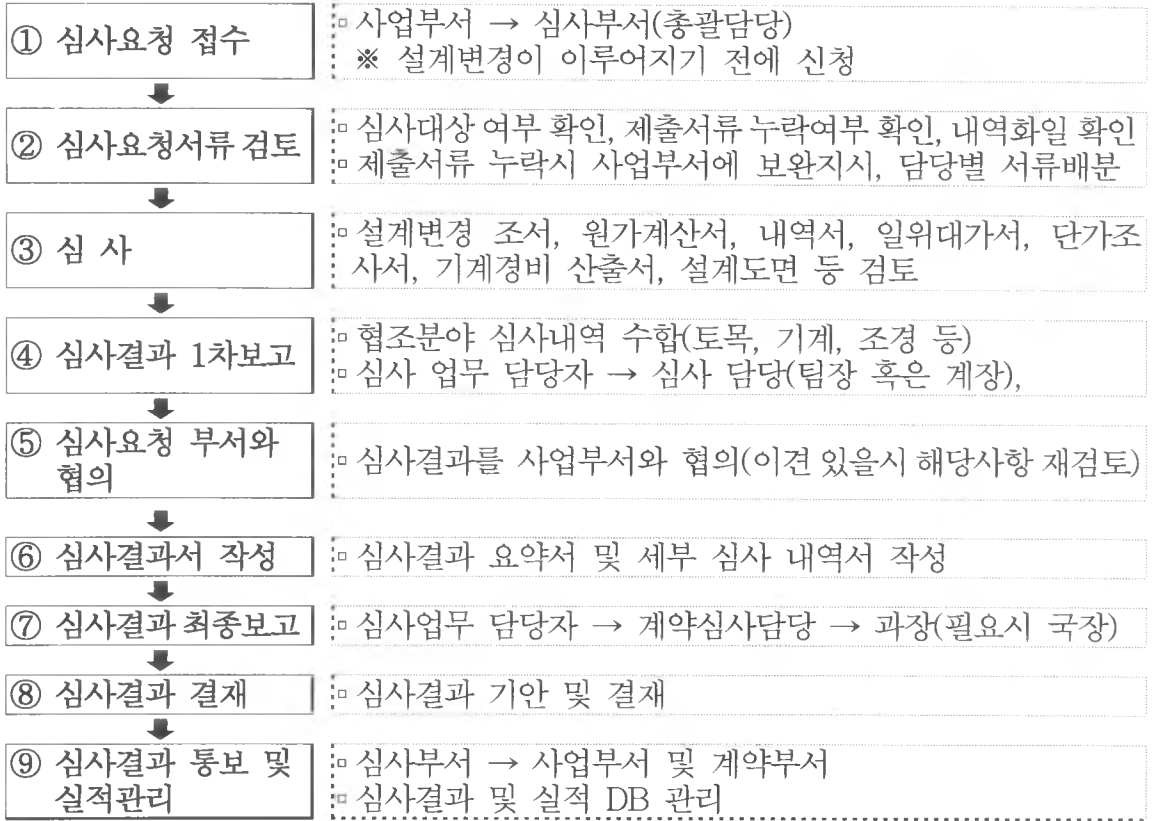
가. 물품분야 원가심사의 실적관리는 제1관 “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절 설계변경 심사

1. 설계변경 심사의 대상

- 가. 설계변경심사는 사업부서에서 공사의 시공 중에 예측하지 못했던 사태의 발생이나 계획의 변경 등으로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하기 전에 계약심사부서에서 설계변경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 나. “가”의 적정성 검토에는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시행령 제75조에 따른 운반거리 변경 등 설계변경 심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다. 설계변경 심사 대상은 계약금액(설계변경 전의 계약금액)이 시·도는 20억 원(시·군·구는 5억 원) 이상인 공사 중에서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다.
-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의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외에 심사대상 금액이나 심사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마. 사업부서에서 설계변경심사를 요청하는 1회 설계변경의 기준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1-가-2)”의 ‘설계변경 당시’ 정의에 따라 판단한다.
- 바. 설계변경심사 제외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 1) 재해 및 재난복구사업으로서 사업을 시급하게 추진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항구복구사업으로서 심사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 실시)
 - 2) 계약부서(또는 사업부서)에서 이미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우선 시공을 한 설계변경으로 설계변경심사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 3) 그밖에 사업부서에서 계약 특성상 설계변경 심사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자치단체 계약심사부서와 사전 협의하는 경우

2. 설계변경심사의 절차



3. 심사의 요청

가. 사업부서는 심사요청을 할 때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계약심사담당자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누락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해야 하며, 사업부서는 그 보완요구에 응해야 한다.

1) 계약심사 요청서

2) 설계도면, 공사설계설명서(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과업내용서

3) 설계내역서(비목별 기초계산서, 수량산출서, 노무비산출근거, 기계경비 산출서,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 견적서 등)

4) 그밖에 필요한 서류

- ▣ 소프트웨어 참고자료(엑셀 내역화일, Auto Cad 도면)
- ▣ 품셈과 실적공사비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품셈을 적용한 내역서와 실적공사비를 적용한 내역서
- ▣ 신기술·신공법을 적용한 경우 관련자료
- ▣ 설계변경 이유조서 등 그 밖의 보조자료

4. 주요 검토사항

구 분	검토 사항
가. 설계변경의 타당성	◦ 별도로 발주해야 할 사항이 아닌지 여부 ◦ 설계변경이 불가피한지 여부 ◦ 향후 동일 내용으로 설계변경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지 여부 등
나. 설계변경 물량(수량) 산출의 적정성	◦ 거리, 기간, 위치 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물량(수량) 산출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다. 설계변경 공법의 적정성	◦ 설계변경에 따른 신기술, 신공법 등을 적용하는 경우 신기술, 신공법의 적정성 여부
라. 설계변경 단가산출의 적정성 및 설계서간 모순이 없는지 여부	◦ 설계변경 물량에 대한 일위대가서, 단가산출의 적정성 ◦ 설계변경물량의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설계설명서(시방서) 등과의 일치여부
마. 설계변경에 따른 자재 등의 적합 여부	◦ 설계변경되어 증가되는 부분, 주요자재의 규격·품질·수량의 적정성 여부
바. 설계변경을 위한 관련 법령 검토 여부	◦ 설계변경에 따른 환경 관련 법령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 검토

5. 심사결과 통보

- 가. 계약심사담당자는 확인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동시에 통보해야 한다.
- 나. “가”의 심사결과서는 심사결과요약서, 분야별 심사내역서, 그 밖의 심사조건을 말한다.
- 다. 심사결과는 아래와 같은 유형으로 통보해야 한다.

원안 통과	수 정	재검토
◦ 심사요청 내용대로 설계변경(원안 통과)	◦ 심사요청 내용을 수정하여 설계변경	◦ 설계변경에 대해 재검토 지시 ※ 재검토 사유명기

- 라. 심사결과가 재검토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부서에서는 자료를 정리하여 횡수에 제한 없이 다시 심사요청을 할 수 있다.
- 마. 심사결과가 수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부서에서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그 사유를 첨부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6. 실적 관리

- 가. 계약심사담당자는 심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해당 심사 건에 대한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하며, 사업부서에 심사결과 통보 시 그 서류 일체를 반환해야 한다. 다만, 사업부서의 결정에 따라 불필요한 서류를 반환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다.
- 나. 사업부서는 해당 사업 건에 대한 계약심사 전·후의 서류를 사업 종료 후 감사 등 사후처리 예상 종료시점까지 보관해야 한다. 사후처리 예상 종료시점은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라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3년으로 한다.
- 다. 계약심사담당자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심사통보일을 기준으로 중앙부처의 통계 기준에 따라 심사한 실적을 취합하고 관리해야 한다. 동일 사업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한 경우 실적은 최종 심사통보일 및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단일 건으로 취합한다.
- 라. 중앙부처에서 “다”의 실적 제출을 요구한 때에는 그 취합자료를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하며, 보완사항에 대한 추가조치가 있을 때에는 정한 기한 안에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6절 보 칙

제1관 계약심사 시 주의할 사항

1. 계약심사 심사금액 산정

- 가.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 그 대가기준의 적용기준일 판단일은 계약심사 요청서류 접수일부터 시행토록 한 경우로 한다.
- 나. 사업부서에서 위 대가기준에 따른 적정한 가격을 확보하지 않고 심사를 요청한 경우 계약심사부서에서 부족하게 산정된 부분을 증액할 수 있다.
- 다. 원가계산방법으로 심사할 때에는 사업부서에서 제시한 계약수량·이행의 전망·이행기간·수급상황·계약조건·그 밖의 제반여건을 참작하여 부당 감액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원가계산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심사금액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조정사유(원

가산정기준의 차이 등)를 심사 결과서에 명시해야 한다. 단, 관련 법령이나 원가산정개념에 위배되는 임의적인 해석은 불가하다.

2. 계약심사 절감금액의 사용

가. 계약심사 절감금액(사업부서의 요청금액에서 심사부서의 심사금액을 뺀 차액을 말한다)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3. 세부기준 마련

가. 안전행정부 장관이 정한 계약심사 운영요령의 내용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심사 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업무처리규칙으로 결정할 수 있다.

나. 계약심사 처리기간은 심사부서 및 업무담당자의 여건에 따라 업무처리규칙으로 결정한다. 결정한 내용이 없는 경우 처리기간의 산정은 민원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다. 이 요령의 서식은 참고자료로 사도의 계약심사부서에서 별도의 서식을 정할 수 있다.

제2관 계약심사의 활성화

1. 전문성 확보 노력

가. 계약심사부서에서는 심사 우수사례 및 부진사례를 발굴 및 선정하여 사례집을 발간하거나 사업부서 및 계약부서, 계약심사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

나. 계약심사부서에서는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적정성, 공법 및 규격 변경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계약심사 원가분석 자문단」을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제3관 계약심사제도 시행의 예외

1. 교육행정기관의 시행여부 결정

가. 법 제3조에 따라 지방계약법을 적용하는 교육행정기관(교육청, 공립학교 등)의 경우에는 계약심사제도의 시행여부와 적용대상을 시·도 교육감이 정할 수 있다.

나. “가”에 따라 자체적으로 정한 내용은 관련 법령이나 계약심사 운영요령, 예정가격 작성요령 등을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공사계약 심사요청서

시행	0000과-	담당자				결재
시행일자						
수신자		협조				
접수번호						
접수일자						

공사명			요청기관		
공사위치					
공사기간			계약방법		
공사금액	·총공사비 : 천원 - 도급비 : - 관급비 : - 이설비 :		·금회공사비 : 천원 - 도급비 : - 관급비 : - 이설비 :		
설계자	·상 호 : ·책임기술자 :		·대 표 자 : (전화번호 :)		
발주처	·담 당 자 :		(전화번호 :)		
◦ 공사개요 :					
◦ 첨부 서류 1. 설계도서 각1부(설계도면, 공사설계설명서, 현장설명서, 과업내용서, 설계내역서 등) 2. 그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발신명의	
------	--

<서식 공사 원가심사-2>

심사결과 요약서

공 사 명 :

(단위 : 원)

구 분			요청내용	심사내용	증 감	비 고
순 공 사 원 가	재 료 비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작업부산물				
		소 계				
	노 무 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소 계				
	제 경 비	운 반 비				
		기계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기타경비				
		환경보전비				
		공사이행보증수수료				
		하도급발급수수료				
	소 계					
계						
일반관리비						
이 윤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도 급 액]						
관급자재비						
이 설 비						
[총공사비]						

※ 참고자료인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의 기타경비 항목 :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주요 심사내용

☐ 공 사 명 :

☐ 사업개요

위 치	
공사개요	
공사기간	

☐ 심사평가 결과

- 설계금액 : 천원
- 심사금액 : 천원
- 절 감 액 : 천원
- 절 감 률 : - %

☐ 주요 심사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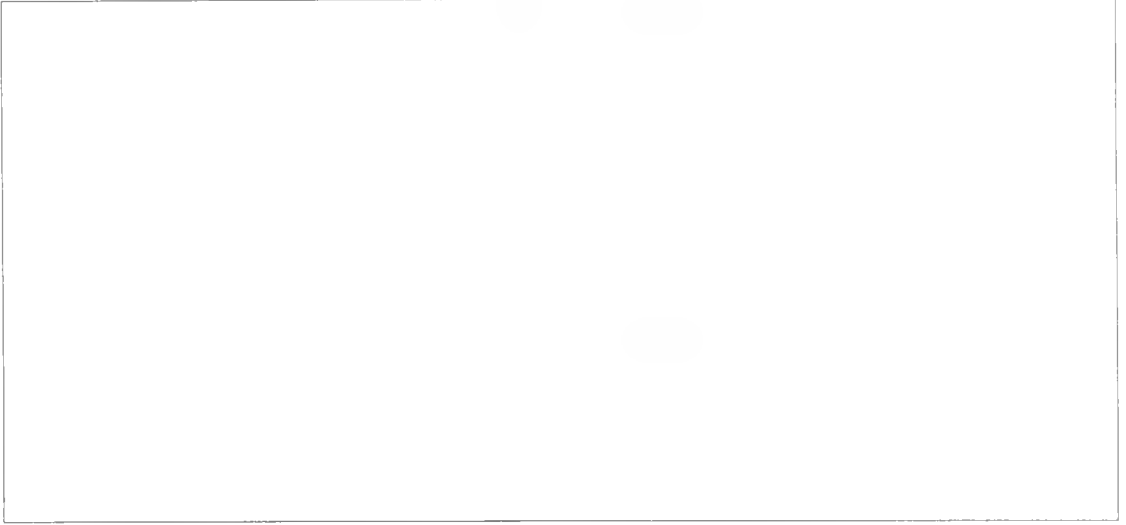
- 자재단가 조정 : 외 중
-
-
- 일위대가 조정 (외 개공중)
-
-

☐ 그 밖의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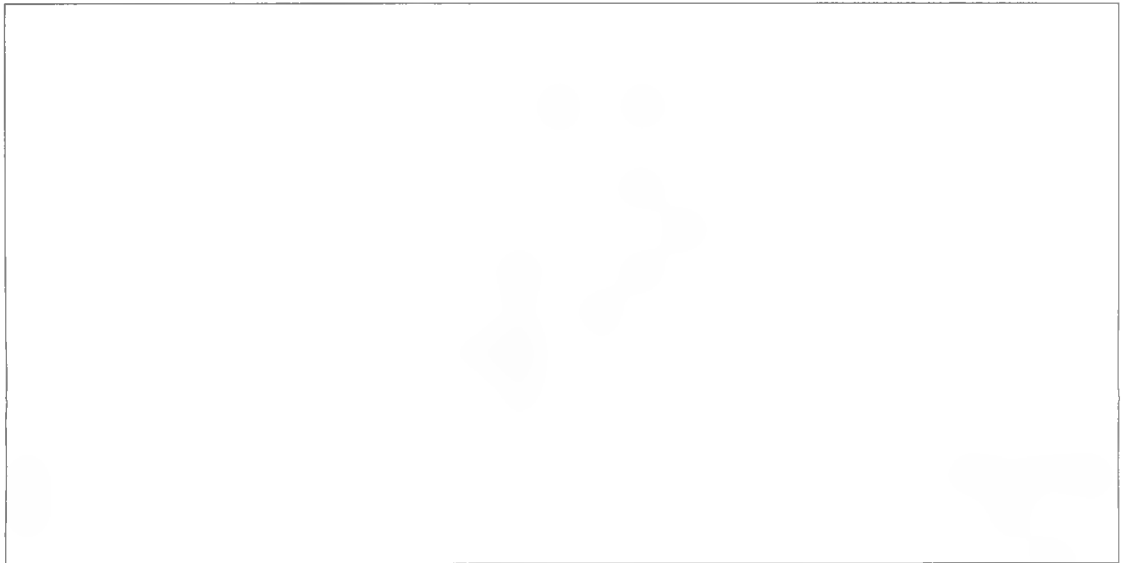
- (계약심사조건 등 심사와 관련 특별히 보고할 사항)

○○○○ 건설공사 (필요시)

■ 위 치 도



■ 투 시 도



<서식 용역 원가심사-1>

용역계약 심사요청서

시행	0000과-	담당자				결재
시행일자						
수신자		협조				
접수						
접수일자						

용역명			요청기관		
용역위치					
용역기간			계약방법		
용역금액	·총용역비 : 천원		·금회용역비 : 천원		
예정원가	·담당부서 :				
작성자	·작 성 자 : (전화번호)				
◦ 용역개요 :					
◦ 첨부 서류 1. 과업내용서 1부 2. 설계내역서 1부 3. 그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학술연구용역의 경우 과업참여자의 이력서 등)					

발신명의	
------	--

< 서식 용역 원가심사-2 >

심사결과 요약서

용역명 :

(단위 : 원)

구분			요청내용	심사내용	증감	비고 요청(심사)
순 공 사 원 가	재료비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노무비	소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제 경 비	소계				
		경비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감가상각비				
		연금 및 보험료				
		기타 경비				
		소계				
	계					
	일반관리비					
	이윤					
	[총원가]					
	부가가치세					
	[총용역비]					

※ 학술연구용역의 사례이며, 일반용역의 경우는 경비 항목이 달라질 수 있음.

주요 심사내용

- ☐ 용역명 :
- ☐ 사업개요

위 치	
용역개요	◦ 요청기관 : ◦ 용역비 : ◦ 용역내용 : ◦ 계약방법
용역기간	

- ☐ 심사평가 결과
 - 설계금액 : 천원
 - 심사금액 : 천원
 - 절감액 : 천원
 - 절감률 : - %

- ☐ 주요 심사내용
 - 단가 조정 : 외 중
 -
 -
 - 일위대가 조정 (외 개공종)
 -
 -

- ☐ 그 밖의 사항
 - (계약심사조건 등 심사와 관련 특별히 보고할 사항)

<서식 물품 원가심사-1>

물품구매계약 심사요청서

시행	0000과-
시행일자	. . .
수신자	
접수	
접수일자	. . .

담당자	팀 장	과 장		결 재
협 조				

건 명		요청기관	
산출금액			
구 매 예정일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 상 호 : 대표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기 타			
◦ 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규격서 및 설명서(사양서) 1부 3. 설계내역서 1부 4. 그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발신명의	
------	--

물품구매 산출기초조사서

◦ 건 명 :

품 명	규 격	단위	수 량	산 출 조 사 근 거				산출가격(원)	
								단 가	금액
공급가액									
부 가 세									
합 계									

작성자 성명 (인)

확인자 성명 (인)

<서식 물품 원가심사-2>

물품제조(수리)계약 심사요청서

시행	0000과-	담당자				결재
시행일자						
수신자		협조				
접수						
접수일자						

건 명		요청기관	
산출금액	원		
제 조 (수 리) 예정일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 상 호 : 대표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기 타			
◦ 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제조(수리) 규격서 및 설명서(사양서) 1부 3. 설계내역서 1부 4. 그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발신명의

제조원가계산서

◦ 품 명 :
◦ 규 격 :

◦ 수 량 :
◦ 제조기간 :

구 분			금 액	구 성 비	비 고
비 목					
제 조 원 가	재 료 비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작업설·부산물등(△)			
		소 계			
	노 무 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소 계			
	경 비	전 력 비			
		수도광열비			
		운 반 비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특허권사용료			
		기 술 료			
		연구개발비			
		시험검사료			
		지급임차료			
		보 험 료			
		복리후생비			
		보 관 비			
		외주가공비			
		안전관리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금			
		폐기물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그 밖의 법정경비			
		소 계			
	일반관리비 ()%				
	이 윤 ()%				
	총 원 가				
	부 가 가 치 세				
	총 계				

<서식 물품 원가심사-3>

인쇄물계약 심사요청서

시 행	0000과-
시행일자	
수 신 자	
접 수	
접수일자	

담당자				결 재
협 조				

요청기관		담당자		전화번호	
건 명					
산출금액		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상 호 : (대 표 자 :)				
계약대상	주 소 :				
업 체	전화번호 :				
◦ 인쇄물내역 1. 규 격 : 절(mm × mm)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g), 내지 (g) 5. 인쇄색도 : 표지 도(단양면), 내지 도(단양면)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					
◦ 첨부 서류 1. 인쇄물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설명서(사양서) 또는 과업내용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5. 그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발신명의	
------	--

인쇄물 산출기초조사서

◦ 품 명 :

◦ 산출근거 (단위 : 원)

구 분	산출금액	산 출 근 거	비고
용 지 대			
전자조판 및 편집료			
필름출력비			
인쇄판비			
인쇄비			
제본비			
기 타			
계			
일반관리비			
소 계			
이 윤			
합 계			
공 급 가 액			
부가가치세			
총 계			

※ 경인쇄의 경우 “인쇄비란”에 산출근거와 산출금액을 표기하고, 산출금액에 부가세만 가산적용.

산출자 (인)

확인자 과장 (인)

<서식 물품 원가심사-4>

인쇄물기획·편집 계약 심사요청서

시행	0000과-	담당자				결재
시행일자						
수신자		협조				
접수						
접수일자						

요청기관		담당자		전화번호	
건명					
산출금액	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체	·상 호 : (대표자 :) ·주 소 : ·전화번호 :				
◦ 기획편집내역 1. 규 격 : 2. 색 도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기타 (특수작업비용 : 도표, 일러스트 등)					
◦ 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설명서(사양서) 또는 과업내용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그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발신명의	
------	--

인쇄물기획·편집 산출기초조사서

◦ 품 명 :

◦ 산출근거

(단위 : 원)

구 분	산출금액	산 출 근 거	비 고
기획료 또는 디자인비			
전자조판 및 편집료			기획편집 심사에 '전자조판 및 편 집료'를 산정한 경우, 인쇄물 심 사요청서에는 반드시 제외
필름출력비			기획편집 심사에 '필름출력비'를 산정한 경우, 인 쇄물 심사요청 서에는 반드시 제외
그 밖의 비용			
계			
일반관리(5%이내)			
소 계			
이 윤(10%이내)			
합 계			
공급가액			
부가가치세(10%)			
총 계			

산출자 (인)

확인자 과장 (인)

주요 심사내용

☐ 건 명 :

☐ 개 요

품 명	
구매내역 및 금 액	
계약방법	

☐ 심사평가 결과

- 구매금액 : 천원
- 심사금액 : 천원
- 절 감 액 : 천원
- 절 감 률 : - %

☐ 주요 심사내용

- 단가 조정 : 외 종

-

-

☐ 그 밖의 사항

- (계약심사조건 등 심사와 관련 특별히 보고할 사항)

<서식 설계변경 심사-1>

설계변경 심사요청서

시 행	0000과-
시행일자	. . .
수 신 자	
접 수	
접수일자	. . .

담당자	팀 장	과 장		결 재
협 조				

공 사 명			요청기관	
공사위치				
공사기간				
계약금액 (최초)				
공사개요				
설계자	상호 :	대표자 :		
	책임기술자 :	(전화 :)		
발주자	담당자 :	(전화 :)		
◦ 설계변경 사유(구체적으로 서술) -				
◦ 첨부 서류-				

발신명의	
------	--

